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409-0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성인지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11.

보건복지부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3409-01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성인지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22. 11.

연 구 기 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동 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정 연 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선 보 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서 해 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이 연 희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보건복지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최근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2021)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94.3%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었고, 학대 유형은 경제적 학대 25.5%, 신체적 학대 22.5%, 정서적 학대 14.9%, 성적 학대 10.9% 등의 순이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장애인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함.

○ 양성/보수교육은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종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인데, 여기서 기존의 남성 중심의 교육 문제를 비판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의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적용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성인지 교육은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에서의 성인지적 검토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 고려 및 성평등한 인식 수용 등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장애여성이 더 이상 주변화되지 않고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이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성인지 검토를 통해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연구 내용

○ 성인지 관점과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 등의 이론을 살펴보고,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과 효과,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성인권 침해 사례 등을 근거로 선행연구를 검토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표준교재가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함.

○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수요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분석함.

○ 이상의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적 교육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함.

□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2차 자료 분석

○ 초점집단면접(FGI)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 성인지 관점은 성별에 따라 이해나 욕구가 다르다고 보고, 특정 성에 대한 특정 개념의 유불리 여부나 성 역할 고정관념의 개입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함.

○ 성인지(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젠더 체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젠더와 다른 사회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여러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재해석하므로,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는 고정관념을 강화하여 남녀 모두에게 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 영역에서 필수적임.

□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향점

○ 장애감수성(disability sensitivity)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일상의 경험을 바라보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동참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공감임. 기존의 남성중심 가치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성별화된 구조와 장애 요소에 의하여 복합적인 차별을 받게 되므로,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매우 중요함.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사례 분석

○ 장애유형별 세분화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현재의 서비스는 장애감수성에 기반을 두지 않아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함.

○ 대다수의 종사자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을 접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전무하였으나, 성인지 감수성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였음.

○ 활동지원사가 현장 서비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종사자의 성비 불균형, 이용자의 성적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더불어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이 있었음. 장애인의 성적 행동은 종사자가 이들이 성적 욕구를 통제하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고 통제하는 태도를 갖게 할 수 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장애감수성의 영향

○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 정도는 인권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권감수성 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 종사자에게 장애인의 성행동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이들을 성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하게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종사자의 중재와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시설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지원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 특징과 교육·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 활동지원사의 경우, 여성 친화적인 업무로 인식되면서 성과를 드러내기 어렵고, 장기적인 교육·훈련이 불필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업무의 불분명성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겪을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종사자와 이용자 간 상호연대 관계가 형성되면 공동체성을 갖게 되어 이용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으로써 성인지성이 확장됨.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및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므로, 이를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유형별로 교육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지위 향상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Ⅲ. 종사자 교육 현황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1. 개요

□ 본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표준교재가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 교육현황은 2022년 지침(사업안내)에 명시된 주요 종사자의 교육과정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음.

○ 분석 교육대상 선정 기준은 지침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표준교재안에 대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였음. 첫째, 장애인 정책 중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양성교육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임. 둘째, 기관소속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이고 셋째, 주양육자 부모교육 및 주양육자 성인권 교육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

2. 교육 현황

□ 우선 2022년 지침(사업안내)에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현황을 살펴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40~50시간 정도의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을 받고, 추가로 실습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주간활동 인력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이론교육 30시간과 실습 24시간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함.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을 매년 2회(8시간이상) 받아야 함.

□ 다음은 주요사업에 따른 종사자 교육과정에서의 성인지 교육 현황을 살펴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의 인력은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권 및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 의무교육 등을 교육에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조치가 명시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성인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편임.

○ 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서는 지원센터 및 주간활동 제공인력에 대한 내용 중 성인지 관련 내용은 미흡하나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중 성인권교육지원이 포함되었음.

3. 성인지관점에서의 내용 분석

□ 장애인 자립생활 및 돌봄제공인력 교육

○ 활동지원사 교육

-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 자료는 2021년 개편되면서 장애인인권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내용을 추가함.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교차성을 다루기에 교육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세부항목은 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로만 이루어져 있음.
  - 기혼 여성 장애인이 명절에 겪는 교차적 차별에 대한 예시 또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체크리스트'의 경우, 실제 행동 너머의 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문항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다른 파트들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 제시를 통해 교육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장애아돌보미교육

- 장애아돌보미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및 외출 지원뿐만 아니라 놀이와 학습도 함께 지도하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각별한 교육이 요구됨.
- 현재의 교육 자료는 관련 용어에 대한 단순 설명이나 지도 방법, 대처 방법과 같이 다소 개략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론적인 교육 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또한 구체적이지 않은 교육 내용은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아동에게 편향된 성 가치관이 심어지지 않도록 돌봄 현장에서의 성 중립적 언어 표현에 대한 교육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은 최근 3년간 교육 내용이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20년 성인지 관련 내용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있음.
  • 2021년 장애감수성 및 차별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 2022년 장애아동과 장애아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되었으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교육 시간과 범위가 적은 만큼 추후 개정시, 성인지 관점 교육 내용을 따로 싣기보다는 성인지 관점을 교육 내용 전반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

□ 기관 소속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학위, 1년 이상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등을 필요로 함.
- 양성교육과정에서 발달장애감수성에는 성인지 감수성도 포함되며, 현재의 교육 과정에는 성인지 관련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 제공인력에게 성인지 관련 교육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성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 주양육자 교육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은 발달장애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 교육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성인지 관점의 교육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부모의 인식 수준과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부모 교육은 큰 중요성을 지님. 이들의 성적 권리 보장과 사회 인식 개선 측면에서 중요하며, 부모의 성 교육 과정에서의 성 편향적 인식과 언어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도 매우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

-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은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 매뉴얼임. 교육내용은 크게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사회의 성문화', '생활 속 성교육'이라는 네 가지로 영역으로 나뉨.
- 본 교육 매뉴얼은 성인권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된 매뉴얼로, 학술적·이론 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신체 발달, 성적 자기결정, 성폭력과 성범죄, 성 분별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sex, gender, sexuality의 의미와 차이,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 및 사춘기 특성, 성 교육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 방법 등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성인권 교육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관점의 교육 내용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성인지 관점에서의 남성·여성 발달장애인의 성 평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성인권 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소결

○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주요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지주요 사업을 토대로 주요 종사자의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시설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교재를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활동지원사 교육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교육은 30~50시간의 양성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지고 있고, 시설 소속 종사자들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장애인 인권과 학대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임.
- 발달장애인 관련 교육교재로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을 살펴봄.
- 각 교육에 따른 성인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안하였음.

Ⅳ.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수요 분석

1. 연구 개요

□ 대상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장애인 복지종사자 교육 강사, 장애인 복지종사자 교육운영 관리기관,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하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고, 총 30명이 참석함.

□ 방법

○ 초점집단면접(FGI)을 2~3명씩 14차례 진행함.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 장애인에 대한 인식

○ 무능·무성의 대상

- 장애인은 무능과 무성의 존재로 여겨지며, 장애부모와 종사자 또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인식개선이 필요함.

○ 무관심과 배제의 대상

- 장애인 당사자가 여성이거나 중증장애인일 경우, 일상생활에서 주변인의 언행은 이들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의사권·선택권이 비존중되는 대상

- 장애인 본인의 의사가 관련 기관이나 종사자로부터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채 주변화되는 상황을 경험함.

○ 보호와 의존의 대상

- 장애인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아이 취급을 받는 경향이 커 조력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위축시킴.

□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성차별과 인권침해 실태

○ 성차별, 성적 불쾌감 및 성폭력

- 장애인은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장애'와 '여성'의

이유로 성차별을 경험하고, 신변처리 과정에서는 요청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성폭력 등의 위험을 겪기도 함.

○ 비존중 및 통제의 일상화

-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선택, 결정은 무시되고, '보호'라는 명목하에 행해지는 서비스는 통제와 관리에 기반하고 있음.

3. 현행 교육의 실태와 문제

□ 종사자·이용자 맞춤형 교육 부족

○ 짜맞추기식·형식적 및 편견적 교육 현장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현행 의무교육, 보수교육이 짜맞추기식의 형식적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종사자가 장애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편견적·부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데 영향을 줌.

○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와 특성 미반영

- 종사자의 업무 영역과 근무환경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행 교육은 종사자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아서 교육 참여율 및 효과성이 낮음.

○ 양성교육 표준안의 낮은 활용도, 현장 수요에 따라 변화되는 보수교육

- 복지부의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교재는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거나, 변형하여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임.

□ 종사자 교육 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지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장애인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지원하고, 종사자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의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함.

○ 이용자 수요 및 종사자 역할을 고려한 교육 필요성 인지

- 종사자의 업무는 이용자와의 관계와 수요 안에서 복합성과 모호성을 갖고 있어, 종사자의 역할과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필요성도 인지함.

○ 종사자의 장애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 종사자의 장애인에 관한 관점이 여전히 수동적인 서비스 대상으로 인지하면서,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종사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이를 인식할 기회가 부족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장애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보수적 태도와 통제적 서비스 방식과 지원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성인지 교육 강사 인력풀 및 필요성 인식 부족

○ 장애·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 강사 인력 및 관리 부족
- 현장에서는 장애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모두 갖고 있는 강사를 찾기 어렵기에, 강사진을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축해야 함.

○ 장애인시설 및 교육운영관리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성 인지 부족
- 종사자는 서비스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 필요성을 인지하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교육운영관리기관에서 이에 대한 인지가 낮아,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4. 성인지 교육정책 수요

□ 성인지 교육 독립 운영 및 커리큘럼 구성시 고려사항

○ 성인지 감수성 교육 독립 커리큘럼으로 운영
-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함량을 위해서는 현재처럼 인권교육에 포섭된 방식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성인지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감수성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방향 및 운영 시간
-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종사자의 서비스 특성과 연관성 등 현장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성인지 교육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보수교육 표준교재 개발
-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표준교육안이 필요하며, 이는 양성교육, 보수교육 모두 해당됨.

○ 표준교재 내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
-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성 이슈 및 문제행동 등에 종사자의 지원 방식과 내용이 달라져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표준교재에 반영되어야 함.

○ 종사자·이용자·보호자 모두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는 표준교재 구성
- 현재 양성교육 표준교재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용어와 표현 및 구성으로 개발되어져 있어, 종사자 교육자료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만큼, 또한 표준교재에 대한 이용자와 장애부모 등의 수요도 있어 모든 이해 당사자가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교재를 구성해야 함.

○ 양성·보수교육 목적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양화
-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목적이 다르고, 장애복지 서비스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서도 달라지므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역시 이를 고려하여 다양성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대체로 40~50대 여성이 많은 만큼,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 표준교재 개발이 필요함.

○ 현장 중심의 성인지 교육 콘텐츠 지속적 개선
- 성인지 교육은 이론에 대한 이해도 제고 이외에도, 이를 현장에서 바로 실천하도록 종사자가 배운 내용을 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장 중심의 성인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해야 함.

○ 시설장·코디네이터 교육 강화
- 종사자가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시설의 장과 코디네이터 등 관계자들의 교육 필요성을 인지해야 하므로,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함.

○ 성인지 실천 위한 업무환경 개선
- 성인지 관점이 교육에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넘어 종사자가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평등과 인권증진을 서비스 현장에서 실제 실천하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해야 함.

□ 성인지 전문 교육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성인지 전문교육 강사 양성 및 질 관리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장애감수성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런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축해야 함.

○ 종사자 인력 성비 균형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비는 불균형함에 따라, 이용자는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종사자 역시 서비스 과정에서 업무의 혼돈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종사자 인력 성비 균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

○ 교육 예산 확보

-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표준교재 개발 및 보급, 전문 강사 양성과 인력풀 구축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Ⅴ. 정책과제

가. 성인지 교육 측면

□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독립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

□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시간 확보 및 프로그램 구성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에 대한 성인지 교육 필요

나. 양성·보수 교육 측면

□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확보 및 역량 강화

□ 이용자의 성별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실효성 강화

□ 종사자의 성인지 관점 및 감수성 부족·부재로 인한 서비스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보수교육 필요

□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 의무화와 심화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내용 포함

□ 현장 중심의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표준교재 마련

□ 현행 표준교재에 성인지 관점 교육내용 수정 및 보완

□ 교육교재와 매뉴얼은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한 내용과 문체로 구성

□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의 교육교재 집필·검수에 참여 기회 제공

다. 교육 운영 측면

□ 코디네이터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시설장의 책임 및 역량 강화

□ 현장 종사자의 성비·연령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주제어: 장애인, 교육, 성인지 관점, 성인지 감수성,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4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 7

1.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 9
2.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향점 ····· 10
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사례 분석 ····· 12
4.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장애감수성의 영향 ·· 17
5.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 특징과 교육·훈련 시 고려사항 ····· 20

Ⅲ. **종사자 교육 현황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 25

1. 개요 ····· 27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현황 ····· 27
   가. 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종사자 교육 현황 ····· 27
   나. 주요사업에 따른 종사자 교육과정에서의 성인지 교육 관련 내용 검토 현황 ····· 29
3. 성인지 관점에서의 교육내용 분석 ····· 33
   가. 장애인 자립생활 및 돌봄 제공 인력 교육 ····· 33
   나. 기관 소속 발달장애인 제공인력 교육 ····· 37
   다. 발달장애인 주양육자 교육 ····· 38
4. 소결 ····· 41

Ⅳ.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수요 분석** ····· 43
1. 연구 개요 ····· 45
가. 연구 목적 및 대상 ····· 45
나. 연구 내용 ····· 47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 48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 48
나.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성차별과 인권침해 실태 ····· 51
3. 현행 교육의 실태와 문제 ····· 55
가. 종사자·이용자 맞춤형 교육 부족 ····· 55
나. 종사자 교육 인지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 60
다. 성인지 교육 강사 인력풀 및 필요성 인식 부족 ····· 69
4. 성인지 교육정책 수요 ····· 70
가. 성인지 교육 독립 운영 및 커리큘럼 구성시 고려사항 ····· 70
나. 성인지 교육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74
다. 성인지 전문 교육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 86
5. 소결 ····· 89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93
1. 결론 ····· 95
2. 정책과제 ····· 96
가. 성인지 교육 측면 ····· 96
나. 양성·보수 교육 측면 ····· 98
다. 교육 운영 측면 ····· 106

■ **참고문헌** ····· 109

■ **부 록** ····· 113

[부록 1] 언론기사와 국가통계 및 판결문을 통해 본 장애인 대상 성차별 및 성인권 실태 ····· 115

[부록 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교재 수정·보완 내용 ····· 160

표 목 차

〈표 Ⅱ-1〉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사례 관련 선행연구 ····· 14
〈표 Ⅱ-2〉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장애감수성 영향 관련 선행연구 ····· 19
〈표 Ⅱ-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 특징과 교육·훈련시 고려사항 관련 선행연구 ····· 22
〈표 Ⅲ-1〉 지침에 따른 교육명과 교육내용 ····· 28
〈표 Ⅲ-2〉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중 성인지 교육 관련 검토 내용 ·· 30
〈표 Ⅲ-3〉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중 성인지 교육 관련 검토 내용 ····· 31
〈표 Ⅲ-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중 성인지 교육 관련 검토 내용 ····· 32
〈표 Ⅲ-5〉 활동지원사 교육의 종류 ····· 34
〈표 Ⅲ-6〉 최근 3년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비교 ····· 37
〈표 Ⅲ-7〉 성인권 교육의 영역과 주제 ····· 40
〈표 Ⅲ-8〉 교육과정별 성인지 관련 내용 분석결과 요약 ····· 41
〈표 Ⅳ-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현황 ····· 46
〈표 Ⅳ-2〉 초점집단면접 주요 내용 ····· 47
〈표 Ⅴ-1〉 성인지 관점에서 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 수정 방향 ····· 100
〈표 Ⅴ-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 체크리스트에 대한 추가 설명 제안 ····· 104

부 표 목 차

〈부표 1〉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성적 권리 침해 사례 ····· 116
〈부표 2〉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재생산 권리 침해 사례 ····· 117
〈부표 3〉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 사례 ····· 118
〈부표 4〉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학습권 및 노동권 침해 사례 ····· 119
〈부표 5〉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사례 ····· 120
〈부표 6〉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 121
〈부표 7〉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에 의한 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 ····· 125
〈부표 8〉 장애인의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 126
〈부표 9〉 장애인의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 127
〈부표 10〉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 당한 경험 ····· 127
〈부표 1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학대 경험 ····· 128
〈부표 12〉 장애인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주행위자 ····· 129
〈부표 13〉 장애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대처 방법 ····· 130
〈부표 14〉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 131
〈부표 15〉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132
〈부표 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언·폭행 유형별 행위자 ····· 142
〈부표 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성희롱 경험 ····· 143
〈부표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의한 폭언·폭력·성희롱 경험률 ····· 143
〈부표 1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과 행위자 ····· 144
〈부표 2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경험 유형 ····· 145
〈부표 2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경험 정도 ····· 145
〈부표 2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감수성 ····· 146
〈부표 2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장애 유형 ····· 147
〈부표 2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성폭력 경험 ····· 148
〈부표 2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장애 유형 ····· 149
〈부표 2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피해에 띠른 경험(다중응답) ····· 150
〈부표 2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피해에 띠른 신체 변화 경험(다중응답) ·· 151

〈부표 2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피해에 따른 이직 고려 경험 ····· 152
〈부표 2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시 대처방안 (다중응답) ····· 153
〈부표 3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긴 이유(다중응답) ····· 154
〈부표 3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1장 활동지원 개론 – Ⅰ. 장애의 이해〉 개선(안) ····· 160
〈부표 3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1장 활동지원 개론 – Ⅲ. 장애와 인권〉 개선(안) ····· 163
〈부표 33〉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Ⅰ.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개선(안) ····· 167
〈부표 34〉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Ⅱ.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 지원〉 개선(안) ····· 168
〈부표 35〉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Ⅲ. 보조기기의 이해, Ⅴ.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및 제3장 활동지원의 실제 – Ⅰ. 활동지원의 실제: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 실제 사례〉 개선(안) ····· 172

부 그 림 목 차

[부그림 1] 장애인 성폭력 상담과 피해 건수 ····· 128
[부그림 2]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건수(2018~2020년) ····· 133
[부그림 3] 장애인 학대 피해자 성별 및 장애 유형 ····· 134
[부그림 4] 장애인 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 및 학대 유형 ····· 134
[부그림 5] 장애인 학대 지속 기간 및 발생빈도 ····· 135
[부그림 6]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 136
[부그림 7]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 136
[부그림 8] 장애인 학대 행위자(대분류 기준) ····· 137
[부그림 9] 장애인 학대 행위자(중분류 기준) ····· 138
[부그림 10] 발달장애인의 학대 행위자 ····· 139
[부그림 11] 장애아동 학대 행위자 ····· 140
[부그림 12] 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 140
[부그림 13] 노동력 착취 발생 장소 ····· 141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23)이 최근에 발간한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피해자의 94.3%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었고, 학대 유형은 경제적 학대가 25.5%, 신체적 학대 22.5%, 정서적 학대 14.9%, 성적 학대 10.9%로 보고하고 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9.1%로 가장 높은데, 이 다음이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4.9%였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18). 학대 행위자를 보면, '타인'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가족 및 친인척' 32.8%,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 23.5%이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이다.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이 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15). 실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중분류를 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20.1%로 가장 많지만, 이와 크게 차이가 없는 19.3%가 바로 사회복지 종사자이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47)[1].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2]는 장애인 분야의 전문가로서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는 측면에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기획과 제공 및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제57조 제4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제5항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제공 시에는 장애인의 성별·연령 및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조직의 인적자원 개발의 일환으로 해당 직종의 종사자에게 그 직업 및 업무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의 정의와 지식, 기술을 터득하도록 하여 종사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이다(권오형 외, 2009). 그런데 이 교육에서 기존의 남성 중심의 교육 문제를 비판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별 특성을 존중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적용하여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성인지 교육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홍경선 외, 2011).

---

1) 장애인 대상의 성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최근의 언론기사와 국가통계 및 판결문 내용은 〈부록1〉을 참고하기 바람.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아 돌보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제공인력 등이 있음.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에서의 성인지적 검토는 이들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전 과정에서 성별 특성 고려 및 성평등한 인식 수용 등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여성이 더 이상 주변화되지 않고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장애여성의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들은 '장애'와 '여성'에 대한 사회규범과 편견으로 인해 억압받고 교차·중복차별로 인해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주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성정연·양숙미, 2005).

이에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교육에 대한 성인지 검토를 통해, 이들과 관련된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지 관점과 감수성에 대한 정의와 개념 등의 이론을 살펴보고,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과 효과, 특히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성인권 침해 사례 등을 근거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둘째,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표준교재가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한다. 셋째,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수요를 현장 사례(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종사자, 교육 강사 및 교육운영기관 관계자)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연구내용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적 교육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나. 연구방법

위의 연구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와 2차 자료 분석 및 초점집단면접(FGI)이 활용되었다. 먼저 문헌 연구는 첫째 성인지 관점과 감수성의 개념과 이것이 장애 영역에서의 중요성 및 영향력 등에 대해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어서 둘째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정책과 교육자료(관련 법제 등에 의한 표준교재가 있는 교육 중심)를 수집·검토하였다. 특히, 장애인 복지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가족지원 돌보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력 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주요 지원인력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들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내용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2차 자료

분석은 장애인 복지종사자의 장애인(이용자) 대상의 성차별과 성인권 관련 최근의 언론기사, 통계 및 판결 자료를 수집·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3].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강사,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자녀를 둔 부모(이하 '장애부모') 등 30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를 실시하였다. 8월부터 11월 초까지 면접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룹핑하여 총 14차례 진행하였다. 이때 활용된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는 Ⅳ장의 연구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3) 해당 사례별 특징은 〈부록 1〉에 제시함.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

1.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9
2.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향점 10
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사례 분석 12
4.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장애감수성의 영향 17
5.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 특징과 교육·훈련 시 고려사항 20

1.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

공공정책에서 성인지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에서 제기된 것은 지난 제4차 세계여성회의였다(서명선.___). 이 회의에서 여성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하였고, 그 이후 유엔은 각국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책무를 부여해 오고 있다.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것은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독특한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고르게 반영하여 특정 성에 편중되지 않고 공정하게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Corner, 1999).

'젠더(gender)'는 사회가 성 역할에서부터 신체적 외형에 이르기까지 '남성적' 또는 '여성적'이라는 개념에 부여하는 특성들과 관계된다(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1). 성인지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은 성별에 따라 다른 이해나 욕구가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 특정 성(sex)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 여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를 말한다. 즉, 젠더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요구의 차이를 인식하며, 성별 불평등에 대한 민감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성인지(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젠더 체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더불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고 다름에 기꺼이 귀 기울이도록 해야 하는데, 이처럼 젠더와 다른 사회요소가 얽혀서 만들어낸 다양한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감수성, 한 사회의 성별화된 구조와 담론을 감지하는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판례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적극적인 정의를 내린 바는 없지만,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법률신문 보도자료, 2021.8.17).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참고).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남녀 모두에게 차별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사회 전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____:1). 물론 다양한 영역/분야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근거들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우정희와 유승연(2018:51-52)은 간호대학생에게 성인지 감수성은 이들의 간호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김순구

(2021:274-276)는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성적 자율성과 성 태도와 양의 연관성이 있고, 인터넷 음란물 접촉과는 음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대학생의 건전한 성행동 유도를 위해서는 성인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지향점

장애감수성(disability sensitivity)은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해석하고 그 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공감을 의미한다(extra-mile 게시글 참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남성중심 가치에 의하여 성차별과 성별화된 구조의 영향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요소로 인하여 성차별과 장애차별이 교차하면서 복합적이면서도 새로운 차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21:60). 예를 들어, 명절에 기혼 비장애여성은 음식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평등함을 호소하지만, 기혼 장애여성은 음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죄책감과 소외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엔은 장애여성이 공공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적절한 주택, 건강, 교육, 직업훈련 및 고용 등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용, 승진, 동등한 노동에 대한 임금, 교육/재교육, 기타 생산 자원에 대한 불평등을 경험하고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 거의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장애에 대한 성인지 관점, 특히 장애 여성과 소녀의 상황에 대한 관점(gender perspective on disability and disability perespective on the situation of women and girls with disabilities)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United Nations 게시물 참고). 유엔여성(UNWomen)은 오랫동안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가 이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폭력과 학대, 소외를 포함한 교차차별을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장애여성과 소녀는 장애남성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추가적인 불이익과 불평등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장애에만 초점을 맞춘 전략이 반드시 장애인의 성평등을 높이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면서, 사회와 발전에서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인지 관점과 장애 관점이 모두 필요함을 강조하였다(United Nations 홈페이지 게시물 참고). 즉, 장애의 맥락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isability)은 중요한 의제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호(2016) 47조는 장애여성에게 미치는 젠더·장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젠더·장애 고정관념은 “이들이 타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생각(즉, 돌봄을 받아야 하거나 곤란함·고통·책임을 발생시키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생각), 취약하다는 생각(즉, 무방비하고 의존적이며 종속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 피해자라는 생각(즉,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동적이거나 무력한 사람이라는 생각) 또는 열등하다는 생각(즉, 능력이 없고 부적합하며 약하거나 가치가 없다는 생각), 성적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즉, 무성이거나 성적 활동이 없거나 성적 활동이 과하거나 성적 능력이 없거나 성적 변태성을 가지고 있다는 고정관념) 또는 신비롭거나 사악한 존재라는 생각(즉, 저주를 받았거나 악령에게 홀렸거나 마술을 부린다거나 유해하다거나 행운 또는 악운을 불러온다는 생각)"이 그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0:54-55). 장애 여성·여아를 대상으로 한 차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테면,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연계차별, 적절한 편의의 거부, 구조적 또는 체계적 차별이 그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20:45). 특히 "유해한 젠더·장애 고정관념은 장애 여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정책·규제·서비스의 부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어, 폭력 사건을 신고하려는 장애 여성은 젠더와 장애의 교차를 바탕으로 한 고정관념에 의해 경찰·검사·법원의 불신과 기각과 같은 장벽을 마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해한 관행은 장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신념을 반영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젠더 역할 및 권력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도 한다. 장애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적 신념의 예로는 장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HIV/AIDS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 등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중, 연계차별과 관련해서는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여성의 경우 연계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구직 과정에서 장애 아동 때문에 업무 참여와 근무의 가능성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45)고 하였다.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3호(2016) 17조에서는 "교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경찰, 검사, 판사와 같은 공무원이나 일반 대중이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유해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인식 제고, 교육 제공,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경우 장애 여성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같은 일반논평 21조에서는 "모든 조치는 장애 여성의 완전한 발전·진보·역량강화를 보장하여야 한다. 발전이란 경제적 성장과 빈곤 퇴치와 관련되나, 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특히 교육, 고용, 소득 창출 및 폭력 방지의 영역에 있어서는 젠더·장애 감수성을 가진 발전 조치가 장애 여성의 완전한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적절할 수 있지만, 보건 및 정치·문화·스포츠 참여와 관련해서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47). 이처럼 유엔은 젠더와 장애 관점과 감수성은 장애여성의 인권증진에 있어서 가장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17:98-99)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중 특별히 활동보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활동보조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기 통제적 또는 이용자 주도적 인적 지원서비스를 의미하고, 자립적 생활을 위한 수단이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 본인이 통제한다. 즉, 장애인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를 계약할 수도 있고, 고용주가 될 수도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디자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설계하고, 누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침과 지시를 내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활동보조 과정에서 장애인이 주변화되지 않고 주도적 위치에서 장애인 개인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활동보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51). 이에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1호(2014:16) 39조에서는 "경찰관, 사회복지사, 응급요원 등은 반드시 장애인을 법 앞에 완전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항의와 진술을 동등하게 중요시하도록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여기에는 중요 직업군에 대한 훈련 및 인식개선 교육이 수반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5호(2017:108) 52조에서는 "지원은 항상 서비스 제공자의 이익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체계를 수립하고, 장애인이 숨겨지거나 기관에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 사례 분석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인 장애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및 장애감수성을 다룬 선행연구 중에서 사례 중심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최종 여섯 편의 선행연구(2013~2022년)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제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아래 〈표 Ⅱ-1〉과 같다.

먼저 이준우 등(2022:163-164)은 장애감수성 측면에서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은 확연히 구분되는 특화된 전문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대상자임에도 이를 간과하는 현장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장애유형별 세부화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의 활동지원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었지만 장애인 서비스가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이러한 장애감수성에 기반을 두지 않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지영(2021:220-221)은 장애를 4가지 유형(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 시각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이들 이용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시시콜콜 질문하면서 이용자를 어린아이로 대할 때가 현장에서는 종종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는 옆 동료(종사자)가 이용자를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경우,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 친밀한 통제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지영, 2021:225). 김지영(2021:232)은 근육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비장애인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가 가진 취약성에 공감하여 연대 의식을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취약성이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무화되거나 삭제되는 문제도 있으므로, 현장에서는 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한용현과 정연수(2021:121)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들어 보았는지, 관련 교육을 들었거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대다수 종사자는 '성인지 감수성'을 전혀 들은 바가 없었고, 관련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 중,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경우, 성인지 감수성은 주로 장애인의 성적 이슈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충돌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에 대한 예로, 시설 이용자(발달장애인)의 자위행위가 종사자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거나 욕구 해소를 위한 장소와 시간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한용현·정연수, 2021:122). 이는 시설 종사자가 이용자를 성적 존재로 인지하지 못하고 혼재된 감정과 시선으로 이들의 성행동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한용현·정연수, 2021:127). 또한,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의 성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간주하고, 이용자에게 성교육을 하면서도 '성'을 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성교육이 성폭력 사건 중심의 후속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도 지적하였다(한용현·정연수, 2021:125-126). 이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의 성에 대한 성인지적 지원 형태와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므로(한용현·정연수, 2021:125, 128), 이용자의 성적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매뉴얼과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종사자의 관점과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한용현과 정연수(2021:120)는 장애인 이용자의 신변처리 과정과 같이 종사자가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종사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에도, 종사자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한용현·정연수, 2021:120). 이는 종사자가 이용자를 신체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성적인 위험에 노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어서 어느 수준까지 개입·지원되어야 하는지 매 순간 고민이 되는 종사자의 상황을 이 연구의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김묘경 등(2019:515)은 활동지원사 사례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서도 이용자의 성적 행위로 인해 당혹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활동지원사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 중, 남성 이용자의 신변처리를 여성 활동지원사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김묘경 등(2019:516)은 활동지원사가 현장 서비스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로 다양한 장애

유형에 대한 대처 능력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동지원 경험이 많고, 다양한 장애 유형의 이용자를 겪어 보았던 종사자가 강사가 되어 다른 종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단계별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해영 등(2019)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들 역시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발달장애인의 성적 행동이었다. 종사자는 이용자가 행한 일들(낯선 사람과의 연락과 성적 교제, 폭력과 임신 등)을 수습하면서 장애인은 성적 욕구는 표출할 수 있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책임지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성적 권리를 부정하고 임신과 결혼을 반대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임해영 등, 2019:581).

마지막으로 박경수 등(2013:264)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를 심층면접하면서 종사자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를테면 한 종사자는 직원 간의 성비가 맞지 않아 여자 종사자가 남자 이용자의 목욕을 보조해 주어야 하거나 신변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였다(p.264). 또한 종사자가 시설 이용자를 눕혀 옷을 벗기거나 이용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문제 행동으로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있음도 지적하였다(박경수 등, 2013:259-260).

〈표 Ⅱ-1〉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및 장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사례 관련 선행연구

저자	종사자 및 장애유형	주요 내용
이준우 외. (2022)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신체장애인	#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해요. 저는 발달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하고는 너무 다른데 서비스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장애 유형별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지원해야 해요(p.163)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11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도에 대한 이용당사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중증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지만 생존권을 보호받지 못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현재도 발생하고 있어요. 또한 얼마 전 중증의 남성 장애인이 남성 활동지원사에게 성폭행을 당해 형사 입건되는 일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사건사고를 무마하는데 열중하지 말고 이러한 사고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주었으면 좋겠어요(p.164)
김지영. (2021)	종사자 유형 :활동지원사 장애유형 :근육장애인,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전 자주 해요, 진짜로. '나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리고 행동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서, 그때마다 물어봤었어요. "언니, 지금 제가 이렇게 먹여 줘도 돼요?"라든지, "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아프세요?" 이 말을 정말 자주 하는데, 또 그것도 기분 나빠하세요. 마치 자기가 보살펴야 하는 아기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게 되게 기분 나쁘대요. (…) [보수] 교육을 받을 때, 다른 센터에 소장님이라든지 오셔서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때 가장 강조하셨던 게 "이용인을 장애인을 아기 취급하지 마세요." 하는 거였어요. 그거 기분 나빠한다고, 굉장히 강조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순간 그렇게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아기 대하듯이.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쁜 줄은 몰랐는데,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거 같아요(p.220-221)

저자	종사자 및 장애유형	주요 내용
		# 정말 수영을 데리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 KBS에다 제보를 해 버릴까 생각도 했었어요. (…) 수영을 다녔는데 [다른] 활동보조 선생님이 두 남자애를 [지원] 하더라구요. 하는데 [이용자가]늦게 나왔다고 뺨을 막 때리더라구요, 구석에 데리고 가서. 정말 제가 카메라로 찍어 버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p.225) # 이 친구가 뭐…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있는 거고, 그 부분만 제가 채워 주면 되고. 그러니까 크게 막 뭐… 진짜 중증이라는 생각이 저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왜 최중증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너는 좀낯설지 않냐?" 그랬어요. 처음엔 낯설었대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몸이 아픈 것뿐인데 최중증이라고 명명이 되니까. "너를 최중증이라고 부르는 게 나는 싫어." 내가 그랬거든요. 그냥 좀 몸이 불편한 것뿐인데 '최중증'이라고 하면 낼 모레 막 갈 거 같고(웃음). 그 단어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랑 오래 있다보면 '맞아, 그냥 몸이 불편할 뿐이야'[라는 생각이 들어요](p.232)
한용현, 정연수. (2021)	종사자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 이용자 분들 화장실 갈 때 혼자 처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대변보고 닦아주려면 휴지로 거기만 (항문) 딱 못 닦잖아요. 엉덩이든, 등이든 만지게 되는데...이게 참 그래요. 벽에 손 짚고 엉거주춤 서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도 매번 속옷 입는 부분(성기, 항문) 보는 것도 힘들 때도 있어요. 저는 결정권이 없는 거죠?(p.120) # 성인지 감수성 듣기는 했는데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생각해보질 못했네요(p.121) # 이런 성인지 교육을 솔직히 저도 처음 듣거든요. 개념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고 저도 이런 점에 대해 알고 있어야 장애인들에게 설명이든 지도든 잘 이뤄질 것 같아요(p.121) #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하면 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다.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이 분들도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남들과 똑같이 자신의 몸에 대해 느끼고 표현하는구나. 이런 것 많이 느껴요(p.121) # 아침이나 하루 생활 시작할 때 마치 첫 인사 나누는 것처럼 막 뛰어오며 팔을 탁 벌리고 안으려 하죠. 너무 해맑게 웃으며 아는 척 해주는 건데 늘 껴안으려고만 하니, 스킨십을 바꿔야겠죠?(연구참여자 2)(p.121) # 생활시설 선생님들이 자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장소나 시간을 배려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생활시설 선생님은 거부를 하고 불편하다고 하더라구요. 필요하면 얘기해라 영상이나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데도 생활시설 선생님들의 인식에 따라 자위가 일관성 있게 지도되지 않아요(p.122) # 예전에 성교육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문제 성행동이 나타났어요. 다시 하는데, 성 단어를 직접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해하기 쉽고 재미도 있으면서 장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직접 언급해야 하는데 시설은 그런 자세한 알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교육에 한계가 있어요(연구참여자 6)(p.123) # 기존에 나온 종사자 매뉴얼이 있긴 한데, 구체적인 사례보다 뭐랄까 처리하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 위주로 나와 있어요. 나중에 처리하는 것보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심리나 원인,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이해를 더 확장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한 행동 패턴은 보이는데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p.125-126)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성적 권리를 나와 빗대어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거든요.

저자	종사자 및 장애유형	주요 내용
		(중략)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자 분께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연구참여자 6) (p.125)
김묘경 외. (2019)	종사자 유형 :활동지원사 장애유형 : 발달장애인	# 여성 활동지원사가 이차 성징이 발현된 사춘기 남아를 돌보는 과정에서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60대 후반의 참여자는 눈앞에서 남아의 자위행위를 목격하고는 '너무 놀라' 한동안 힘들었다고 한다. 또한, 활동지원사 경험이 많은 60대 초반의 참여자는 덩치 큰 사춘기 남아에 의해 침대로 밀쳐지는 일을 당한 이후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일을 중단하게 된다 (p.515) # 자폐아이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많이 사랑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를 여자로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입술을 여기다 대는 거예요. 내 자녀라 생각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저를 침대에다가 미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제가 하면 안 되겠다 싶어 끝낸 적도 있습니다(p.515) # 처음에는 여자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민망한 거예요. 또 남자화장실 가면 (사람) 있나 없나 보고... 그 때 제가 몇 개월 하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었어요. 그 부분이.. (p.515) # 우리가 전문적인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자신이 없거든요 (p.516) # 단계별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실질적 교육도 필요하다 생각해요. 경험 있는 분들이 교육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이 높다 낮다를 떠나서 자폐아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 뇌병변장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p.516)
임해영 외. (2019)	종사자 유형 :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 그 직원 선생님이 젊은 20-30대였는데 선생님을 와락 껴안은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나니까 이 선생님이 함께 생활하기가 무서운 거죠. 결국 그만두었어요. 애들이 덩치도 있고, 생각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몸은 똑같잖아요. 또 이미 경험해 본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무서울 때도 있죠 (p.580) # 성교육만으로 안돼요. 아무리 저희가 성교육을 해서 피임하는것도 가르치고 다 해요. 근데 상황이 닥치면 그 친구는 바로 판단 능력이 낮고,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을 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저희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너무 낮아요(p.581) # 책임도 질 수 없는데 허용을 어떻게 하나. 거기서 항상 저희들이...'그래 니네 욕구가 이러니까 해라' 해줘도 되돌아오는 건 수습해야 할일이 더 많은 거예요. (피해)대부분 시설에 있지 않고퇴소하죠. 자유롭게 살다가 쉼터에 있죠. 그거 있죠, 성폭행여성그런 쉼터. 거기에 가 있죠. 즐길 순 있으나 책임이 없고. 그런 안타까움, 한계가 있죠(p.581)
박경수, 장혜경. (2013)	종사자 유형 :거주시설 종사자 장애유형 :발달장애인	#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민을 하게 했던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자 이용자분인데, 생리 전후로, 최근에 청소년기에 접어들고 이러면서 그런 욕구가 강해지셨는지 본인은 이제 장난도 좀 치고, 재미있는 행동일 수 있는데,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이용자 분을 눕혀서 옷을 벗긴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어요(p.260) # 내가 지금 이 방에서 자위를 하고 싶은데, 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자해를 하고, 공격을 하게 되고, 저희는 좀 분리를 해서 그런 장소에 모셔다 놓으려고 하면 또 굉장히 예민하시기 때문에 미세한 외부 자극으로부터도 자기 그런 부정적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한 내 방에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하면 이 분 스트레스 받을 일 없겠죠 (p.260)

저자	종사자 및 장애유형	주요 내용
		# 인력의 성비가 불균형해서 생기는 딜레마들도 다수 있었다. “직원 간의 성비가 맞지 않아 여자 선생님이 남자 이용자의 목욕을 보조해주는” 상황이나 “교사와 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없어”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p.264)

4.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장애감수성의 영향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및 장애감수성이 이들의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류재구와 정신섭(2021:149)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권 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설문을 통해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인권 감수성은 이들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만, 활동지원사가 지닌 자기성취감이 매개변수로서 직간접적 연결고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고, 무엇보다도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간의 관계 형성 정도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획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류재구와 정신섭(2021:149)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권감수성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그 교육이 자기성취감과 이용자의 지지 등이 고려되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용현과 정연수(2021:126)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가 경험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유형과 대응 태도를 탐색하여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모색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인식된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은 부정적이었고, 통제 속에서 성인권 보장이 이루어지면서 종사자와 이용자 간 갈등 구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성적 존재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을 보였다고 지적하였다(한용현·정연수, 2021:127). 이러한 인식은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을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비사회적 성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므로, 현장에서는 이를 제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한용현과 정연수(2021:127-128)는 중재와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 등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시설 전반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근거한 지원 문화가 형성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수연과 김석주(2020)은 인권교육(교수법, 교육내용, 교육만족도 등)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영향 요소로서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이

높을수록,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높을수록 인권 관련 상황에서 종사자의 결과지각 능력과 책임지각 능력이 모두 높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김수연·김석주, 2020:76). 사회복지사 급수가 인권교육 수용에 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만큼, 교육의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강사 양성 및 훈련제도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변소현과 김봉선(2016:153)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직위, 자격, 연령과 인권교육 시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직위는 같은 거주시설 종사자라 하더라도 생활재활교사 직군이 그 외 일반직군에 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연령이 낮을수록, 인권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인권교육 시간이 많을수록 결과지각과 책임지각 수준이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종사자 및 교사의 성인지 및 인권 감수성에 초점을 둔 연구도 살펴보았다. 먼저 안은영과 이혜경(2022:216)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 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 환자 접촉 유무, 그리고 인권 감수성 중 책임지각 능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여부, 장애인건강법 인지 여부 등이 있었다. 이를 근거로 안은영과 이혜경(2022:216)은 간호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발견된 요인(장애인에 대한 인식, 인권 감수성, 장애인건강법 인식 등)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과정에서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함양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진재섭과 안효진(2018:221, 235-236)은 유아교사의 장애인권 교육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성을 가졌는지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권 교육프로그램은 유아교사의 배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권 감수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장애인권 관련 문제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는 도덕적 방식이 아닌, 관련 문제와의 관계적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배려윤리적 해결방식으로 접근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진재섭·안효진, 2018:241). 즉, 장애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유아교사 자신과 관계가 있음을 우선 인식하고, 유아교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배려윤리적 관점에 기반한 실천이 궁극적으로 유아교사의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표 Ⅱ-2〉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돌봄노동에 대한 성인지·장애감수성 영향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류재구, 정신섭 (2021)	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권감수성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 성취감 및 클라이언트 지지의 매개효과를 연구하기 위함(p.142)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300부 배부 중, 최종 190부를 대상으로 분석함(p.142) 방법 : 설문조사(p.142)	장애인시설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은 서비스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p.149)
한용현, 정연수 (2021)	목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삶을 인권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가 경험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행동 유형과 대응 태도를 탐색한 후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p.126)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3명, 장애인복지관 3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3명 등, 총 12명을 대상(p.113) 방법 : 구조화 면담 후 개별 녹취파일 전사/ 질적 연구(p.11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인식하는 성인지 감수성은 미흡함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성적 존재로 인지하지 못하고 혼재된 감정과 시선으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에 양가감정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을 성적 존재로 보지 않고 타자화하며 통제대상으로 인식하였음(p.127)
김수연, 김석주 (2020)	목적 : 인권교육(교수법, 교육내용, 교육만족도)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p.64)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군집표집을 사용하여 241명 대상으로 진행 및 최종 232부 분석함(p.65) 방법 : 우편설문조사 / 비실험연구설계(횡단조사)(p.65)	1)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p.76)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사 자격등급은 인권감수성에 중요한 영향을 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하 소지자의 경우, 인권 관련 상황을 지각하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인권감수성이 1급 소지자에 비해 낮았음 2)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p.76)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인권 관련 상황에서 종사자의 결과지각 능력과 책임지각 능력이 향상됨. 강사의 전문성이 높은 인권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는 인권 관련 상황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대해 책임성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실천적 인권감수성이 높음
변소현, 김봉선 (2016)	목적 :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수준 및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이후의 인권교육 설계에 적절한 함의를 제시하는 것(p.144) 대상 : 장애인 거주시설의 원장, 사무국장, 사회재활교사, 생활재활교사, 기타 보조인력 등 가능한 모든 직급을 포함하여 총 501명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p.153) 1) '직위'는 거주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생활재활교사 직군과 그 외 일반직군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을때, 인권감수성의 모든 영역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일반직보다 인권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최종분석(p.144) 방법 : 설문조사	2) '자격유형'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 (1,2급)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황지각, 결과지각, 책임지각의 각 영역에서 민감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연령'의 경우 낮을수록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남 4) '인권교육시간'이 많을수록 인권감수성의 수준이 높았으며,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이 높아졌지만, 상황지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안은영, 이혜경 (2022)	목적 : 간호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p.208) 대상 : 대학병원 간호사 총 181부 최종분석 (p.208) 방법 : 설문조사/서술적 조사연구(p.208)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환자 접촉유무, 인권감수성 중 책임지각능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 여부, 장애인건강권법 인지 여부로 확인됨(p.216)
진재섭, 안효진 (2018)	목적 : 유아교사를 위한 배려지향 장애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p.239) 대상 : 어린이집 교사 /실험집단17명, 비교집단17명으로 총 34명으로 진행(p.225) 방법 : 프로그램 개발(문헌연구,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 구성) 및 타당성 검증, 실험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적용	배려지향 장애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유아교사 자신과 관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인권의 옹호를 위해 유아교사로서 지녀야할 기본적인 의무와 배려윤리적인 관점을 실천 및 유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장애인권감수성 향상에 효과적이며 장애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지닌 유아교사의 역량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음(p.241)

5.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 특징과 교육·훈련 시 고려사항

여기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특징에 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김지영(2022:99)은 활동지원사 및 이용자, 보호자를 직접 참여관찰하는 방법을 통하여 활동지원사의 경우, 노동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인지, 정서, 도덕성 등을 동원하며, 이러한 노동의 다면성은 비가시화되므로 표준서비스 영역으로는 구분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여성에게 친화적인 업무로 인식되면서 그 성과를 드러내기가 어렵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하였다.

김근태와 정신섭(2021:59)은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활동지원사의 표면화행동과 양심행동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151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활동

지원사의 높은 표면화행동이 역할모호성을 높이는 반면 서비스행동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활동지원사의 높은 양심행동이 역할모호성을 낮추고 서비스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김신애·황정희·고은영(2021)은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에 대한 심층면접 과정에서 '상호연대이해'에 초점을 두었고, 이것이 장기근속 경험과 결합할 경우, 종사자와 이용자 간의 상호연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 결과에 따르면,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 함께 하면서 차별에 대한 인식과 연대감을 통한 공동체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지원 과정에서 종사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느끼게 되고 장애인을 참여자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취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김신애 등, 2021:149, 153-154). 이처럼 연대감은 공동체성을 가지게 하고, 노동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도록 지원함으로써 성인지성이 확장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sex)이 다른 이용자를 지원하고 상호관계에서 겪을 가능성이 있는 수치감과 불편감 문제로 인해서,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지원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육·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신애 등, 2021:154).

이병화와 이미영(2021:102)은 167명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삶의 만족도 역시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이병화와 이미영(2021:102-103)은 정기적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행위를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교육과정에서 다루되 장애유형별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의 활동지원사는 40시간의 이론교육과 1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다양한 장애유형의 이용자를 지원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력이 많고 전문적 케어가 가능한 활동지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자격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도 지적하였다(이병화·이미영, 2021:103-104).

진윤주·신준섭·서동준(2020)은 223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들이 서비스 과정에서 갖고 있는 감정노동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활동지원사의 감정노동이 업무의 불분명성, 서비스 이용자와의 기대 불일치 등에서의 갈등에서 비롯되기 쉽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진윤주 등, 2020:58). 저자들은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시 거절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낮출 수 있도록 정기적인 프로그램, 상담, 고충처리제도 등과 직무교육, 긍정적 수퍼

비전, 스스로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량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하였다(진윤주 등, 2020:58).

김지영(2019:317-318)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에 주목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는 돌봄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저자는 이용자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노동 조건 역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지영(2019:318)은 돌봄은 노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도 있음을 강조하면서, 기본적으로 좋은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요구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축적되어야 좋은 돌봄의 근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의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것은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토대와 조건의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또한 지적하였다.

임소연과 이진숙(2016:543, 553-554)은 좋은 돌봄은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측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이용자 역시 동일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합당한 존중과 대우 등 지위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상호이해의 증진과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이성의 돌봄노동자와의 원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종사자 간 모두에게 사회관계기술, 갈등관리, 이성간 관계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관계기관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p.553-554).

〈표 Ⅱ-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 특징과 교육·훈련시 고려사항 관련 선행연구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김지영 (2022)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의 과정이 모호한 동시에, 비물질적이고 다차원적인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함(p.59) 대상 : '참여관찰'-연구자가 직접 활동지원사로 참여함(p.66-67) 심층면접 : 활동지원사 13명,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장애인) 6명 및 보호자 2명 대상 방법 : 질적연구(참여관찰, 심층면접)(p.66)	노동과정에서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감정, 인지, 정서, 도덕성 등을 동원하는데, 이는 표준서비스 영역 구분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다면적 노동으로 이어짐(p.99)
김근태, 정신섭 (2021)	목적 : 활동지원사의 표면화행동과 양심행동이 서비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역할모호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활동지원사의 서비스행동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활동지원사의 높은 표면화행동은 역할모호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서비스행동이 감소시킬 수 있으며, 활동지원사의 높은 양심행동은 역할모호성을 낮추고 서비스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p.43) 대상 : 활동지원사 중 151명 최종분석(p.53) 방법 : 설문조사(p.53)	각각 시사함(p.59)
김신애, 황정희, 고은영 (2021)	목적 : 활동지원사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추후 활동지원사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것(p.131)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10명(p.131) 방법 : 질적연구(심층면접)	연구참여자들은 이용자와 함께 사회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시선을 느끼게 되고 참여자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소수, 취약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됨(p.149)
이병화, 이미영 (2021)	목적 : 성인지체장애인이 경험한 활동보조서비스 만족이 건강증진행위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는 것(p.87) 대상 :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인지체장애인 중 167부 최종분석(p.95) 방법 : 설문조사(p.95)	활동보조서비스 만족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지체장애인이 경험하는 삶의 만족 수준도 높아지며, 건강 증진행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p.102)
진윤주, 신준섭, 서동준 (2020)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감정노동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 검증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효율적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p.49)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223명 최종분석(p.49) 방법 : 설문조사 진행(p.49)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감정노동을 하는 직업으로,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강요인인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p.49), 활동지원사는 업무의 불분명성, 서비스 이용인과의 기대 불일치와 같은 갈등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음(p.58)
김지영 (2019)	목적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을 분석하고, 활동지원사의 노동을 구성하는 조건들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p.307)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법 : 사회서비스 통계, 정책자료, 관련 논문 등 기존 문헌들을 분석함(p.307)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돌봄 사회화와 공공성 강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활동지원사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취약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노동 조건 또한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음(p.317- 318)
임소연, 이진숙 (2016)	목적 : 돌봄의 사회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에 종사하는 여성의 노동실태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분야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돌봄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지위향상과 그로인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p.552)	1) 돌봄은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의 측면이 있어 돌봄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용장애인 모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의 특성을 지님(p.543) 2) 돌봄종사자의 설문결과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와 대처 등의 본인의 교육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이용장애인의 교육강화가 가장 높은 개선점으로 나타난 것은

저자	연구방법	연구결과
	대상 및 방법 : 1차-설문조사자료 중 총122부 통계분석 후 2차 장애인활동보조인 4명 심층 인터뷰 진행(p.541)	돌봄서비스의 상호호혜적 특성을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음(p.551) 3) 관련사례 :"의사소통이나 소양교육이 장애인에게도 진짜 필요해요. 괜찮은 분들도 많아서 다 그런건 아니지만 보조인을 너무 막 대하기도하고 말도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너무 힘들고 여자인 나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부리는 사람 대하듯 대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활동보조인 B)(p.551)

Ⅲ

종사자 교육 현황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 내용 분석

1. 개요 27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현황 27
3. 성인지 관점에서의 교육내용 분석 33
4. 소결 41

1. 개요

본 장에서는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의 개괄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 등에 의한 표준교재가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특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는 관련 시설 종사자를 기준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나 2007년 이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 정책은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하는 활동지원사업이 시작되게 되었다. 이에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속 사회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종사자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집에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장애아동 가족 지원 돌보미들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종사자의 중요 지원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 종사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장애인복지 분야의 종사자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의 대표적인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첫째, 장애인 정책 중 장애인 당사자에게 일대일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 양성교육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장애인가족 양육지원 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이다. 둘째, 기관소속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사자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이고 셋째, 주양육자 부모교육 및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첫째,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로 목적, 교육 대상과 시간 등이고, 둘째는 구체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교육내용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는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으로 제시하였다.

2.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현황

일반적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은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사업안내에 교육명과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2022년 지침(사업안내)에 명시된 주요 사업을 근거로 교육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인 주요 종사자의 교육과정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본다.

가. 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종사자 교육 현황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이들은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종사자로 약 40~50시간 정도의 양성과정을 위한 교육을

받고, 추가로 실습을 이수하면 교육이수증을 받고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4].

둘째,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이들은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종사자와 20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간활동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활동 인력이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의 17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센터 소속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을 한 전문적인 개입 방법 등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제공기관에 소속된 지원인력은 총 54시간의 교육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윤리, 학대와 보호 등을 주로 학습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주양육자에 대한 교육이 최근 신설되어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서비스 지원인력과 주양육자에 대한 교육 등이 확대되고 있다[5].

셋째, 장애인복지법상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 대표적으로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종사자의 교육은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시 대처요령, 이용자 간 인권존중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은 매년 2회(8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다[6].

〈표 Ⅲ-1〉 지침에 따른 교육명과 교육내용

구분	지침	교육명	내용
장애인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활동지원사 양성 및 보수교육 - 활동지원개론,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활동지원의 실제, 현장실습	○양성교육과정 총 50시간 (이론 40시간 + 실습 10시간), 보수교육과정 8시간 ※ 교육내용 :커리큘럼 별도 안내
	2022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장애아 돌보미 양성교육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교육과정 총 40시간(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 보수교육과정 8시간 ※ 교육내용 :커리큘럼 별도 안내
발달장애인 대상 관련 기관 관련 종사자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안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 전문교육	○발달장애인 복지정책과 행정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에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 - 공통과정(이수시간 30시간), 분야별과정(개인별지원팀 21시간/권익옹호팀 25시간/ 운영지원팀 9시간) - 보수교육과정(선택 및 필수 포함 이수시간 5시간/10시간)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주간활동 인력 교육, 방과후 활동 인력 교육	○발달장애인 인권과 윤리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보호

4)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5) 2022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6) 2022년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구분	지침	교육명	내용
			- 이론교육(30시간), 현장실습 24시간 - 방과후활동 인력 ; 이론교육 18시간 - 연 4시간 이상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인력	○ 발달장애인 및 가족특성, 상담기법의 이해와 적용, 상담사례발표, 관련 서비스 기관 현황 등 ※ 성인권교육 (생애주기별 기본형),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매뉴얼 별도 안내
장애인 복지 시설 관련 종사자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이용자 인권 권리주장 방법, 인권침해시 대처요령, 이용자간 인권존중 및 직원 인권존중 등 ※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이용자 인권교육 :연 1회 (4시간) 이상 - 직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보수교육 ※ 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 이용자 인권교육 :연 1회 (4시간) 이상 - 직원 인권교육 연 2회(8시간) 이상

나. 주요사업에 따른 종사자 교육과정에서의 성인지 교육 관련 내용 검토 현황

위에서 살펴본 지침을 근거로 대표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 성인지 교육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의 활동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성희롱 금지 및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2021년까지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성인권 현장을 반영한 교육내용은 미흡하였으나, 2022년 신규로 장애인과 인권이라는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에서의 장애아동 돌보미 양성교육에서는 주로 안전 및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사항 내용을 다루고 있고, 장애아동 돌보미의 아동학대, 특히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한 대처와 대응을 주로 다루고 있다.

〈표 Ⅲ-2〉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중 성인지 교육 관련 검토 내용

사업 안내서명 (지침)	성인지 관련 내용	성인지 검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 이용자(보호자교육)에 대해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금지 등 법령 및 제도관련 교육 실시, 시군구 및 공단은 연1회 이상, 활동지원기관은 수시교육 실시(pp.85) -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를 기관의 의무로 두며 연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보수교육 내용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하도록 함(pp.131-133) - 이용자 교육 및 모니터링에 대한 기관 의무 명시,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을 포함한 부당행위 모니터링 및 교육, 처리방법 명시(pp.139) -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과정에 장애 인권과 학대 2시간, 활동지원사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2시간 포함(pp.155) - 활동지원기관 평가 항목에 직원 및 이용자 대상 교육 제공 포함(pp.171)	- 활동지원인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실시 명시 - 기관의 장애인 인권 및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 및 모니터링 의무 명시 - 활동지원사 신규양성 과정에 성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음 - 교육 실시에 대한 관리(평가)중심으로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 성인권에 대한 현장을 반영한 교육 내용 부족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와 돌봄, 휴식(문화·교육·박람회 및 가족 캠프 등) 지원함(p.353) - 장애아돌봄미 양성교육은 총 40시간(이론 30시간, 실습 10시간), 보수교육은 연 8시간 이상(pp.373-374) - 안전사고 예방 조치로서 장애아 돌보미 활동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교육 철저,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사항 교육(p.389)	- 장애아동 돌보미의 아동학대, 특히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한 대처와 대응 교육 강화

둘째, 발달장애인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의 인권과 감수성에 대한 내용과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보호, 자기결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와 이해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장애의 특성, 현황 및 실태, 의사소통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인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보수교육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 역시 발달장애인의 인권, 차별, 자기결정권 등의 내용이 대부분으로 성인지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이 아닌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중 성인권교육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Ⅲ-3〉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중 성인지 교육 관련 검토 내용

사업 안내서명	성인지 관련 교육 내용	성인지 검토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 장애인의 인권과 감수성: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와 교육, 차별금지와 적극적 조치, 정당 한편의제공과 과도한 부담, 장애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 - 발달장애인의 학대와 보호: 학대 유형 및 실태, 학대의 원인 및 결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자기결정): 권익옹호(자기결정)의 개념, 이념적 기반, 유형, 실천 원칙과 기술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와 이해: 발달장애(인)의 이해,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에 대한 지원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제공인력(기관장, 직접서비스제공자)는 3년에 1회 이상 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내용에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특성'이 포함되어 있음(pp.275).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에서 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의 필수 교육내용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항목이 있고 여기에 '장애특성, 현황 및 실태, 의사소통 방법' 등이 제시되어 있음(pp.39). 또한 후견인후보자 교육 이수자에게 매년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pp.41), 그 내용을 후견사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성인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공통교육과 분야별 교육을 이수하고 입사 2~3년차에는 전문교육시간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pp.65). 기본교육과정의 예시에 '장애인의 인권과 감수성'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와 이해'가 포함되어 있음(pp.67).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중 성인권교육 지원이 포함됨.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성적 발달, 성에 대한 태도 등 사업 수행기관이 계획한 일정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운영하도록 함(pp. 328-329).	- 해당 내용은 기본교육과정의 예시로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 것은 아님.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을 연2회 실시하도록 함(pp.57) - 주간 활동 인력의 교육 내용에는 발달 장애인 인권과 윤리, 자기결정과 지원생활, 학대와 보호에 대한 교육이 9시간 포함되어 있음(pp.58,60).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에는 발달장애인 인권과 윤리, 자기결정과 지원생활, 학대와 보호 교육 3개 모두 제외되어 있음(pp.235).	- 연2회 실시하는 예방교육이 보수교육을 진행되고 교육 중 성인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 못함.

셋째,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소속 종사자의 교육은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교육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교육 및 종사자 인권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학대예방이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학대신고무자이기 때문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장애인 옹호 및 장애학대 예방차원에서 성인 감수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Ⅲ-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중 성인지 교육 관련 검토 내용

사업 안내서명 (지침)	성인지 관련 내용	성인지 검토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 시설 이용자 인권교육을 연1회 4시간 이상 실시, 직원 인권교육을 연2회 8시간 실시하고 기록 보관,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 명시(pp.120-121, 253, 276, 345) - 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 패널티 또는 제외 기준에 장애인학대 및 성폭력 성희롱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시설, 은폐 또는 행정처분 시설 포함(pp.205, 283, 410)	- 옹호와 예방 차원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필요
장애인 복지사업(2)	- 장애인학대신고자의무 제도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 연1회 실시 및 진행 보고 의무,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사례 및 발견시 신고방법, 관련법령 내용 등 교육(pp.275) - 장애인 학대예방 및 학대사례지원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운영(pp.279-290) - 학대피해쉼터 운영 및 종사자 인권교육 연2회, 8시간 실시(p.338)	- 신고자의무를 통한 학대의 발견과 신고 옹호지원기관과 피해자 지원체계에서 관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소속이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인력과 기관소속으로 크게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 기관 종사자들은 보수교육 차원에서 매년 지침에 근거하여 8시간 교육을 받고 있으나 그 내용은 최근 사업에 대한 지침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이용자 안전 및 건강에 관한 교육, 종사자의 인권 관련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 기존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특별한 표준매뉴얼이 없이 오프/온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사가 준비한 자료를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침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표준교재안이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성인지관점에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3. 성인지 관점에서의 교육내용 분석

가. 장애인 자립생활 및 돌봄 제공 인력 교육

1) 활동지원사 교육

가) 개요

활동지원사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활동지원사 교육운영과정은 표준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근거[7]하여 활동지원중개기관은 활동지원사의 역량강화 및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준교육은 총 40시간이며, 교육내용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인권과 학대, 활동지원사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Ⅰ(신체적장애), 활동지원Ⅱ(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전문교육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자격증 소지자, 최근 1년간 정부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자를 대상으로 한다(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2022:154).[8] 2021년 신규활동지원사 교육교재는 2016년 교육교재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추가하였다. 특히 교육내용 중 '인권과 학대' 부분은 '장애와 인권'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인권보장과 장애인차별금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내용을 추가하였다.

---

7)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을 별표3에 제시되어 있다.

8)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표 Ⅲ-5〉 활동지원사 교육의 종류

구분	내용
양성교육/표준교육	- 교육시간 : 총40시간 - 교 육 비 : 15만원 - 교육내용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인권과 학대, 활동지원사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 Ⅰ(신체적장애), 활동지원 Ⅱ(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양성교육/전문교육 - 유사자격증(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 소지자, 최근 1년간 정부(지자체)의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 360시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총32시간 - 교 육 비 : 12만원 - 교육내용 : 활동지원사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 Ⅰ(신체적장애), 활동지원 Ⅱ(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일상 및 사회활동지원, 의사소통 지원
보수교육	- 교육시간 : 총 8시간 - 주 체 :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에서 자체교육 - 교육내용 : 변경된 활동지원사업 행정 안내 등

나) 교육 내용 분석

2021년에 성인지 감수성 부분이 장애와 인권 파트에 추가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 항목으로 명명되어있으며, 하위 항목으로는 성인지 감수성, 장애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교차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라고 분석된다. 장애 상태는 성별, 연령 등과 교차하며 이러한 교차성은 단순히 가산적이기보다는 누적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세부 항목은 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부 항목은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교차성을 다루기에 충분하지는 않을 수 있다. 또한 교차적 차별과 관련하여 예시로 나오는 명절에 기혼 비장애여성과 기혼 장애여성이 겪는 상이한 차별에 대한 설명의 경우, 자칫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의 구분 짓기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예시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체크리스트'의 경우 가치판단적인 문항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서는 실제 행동 너머에 내포된 인식을 측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발달장애인은 연애는 할 수 있지만 섹스를 해서는 안된다', '발달장애인은 결혼해서는 안된다'와 같은 문항들을 가치중립적인 문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파트들과 같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 편견, 학대와 성폭력 예방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된 것에 반해 성인지 감수성 파트에서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있지 않아 현실에 근거한 사례

제시가 필요하다.

보수교육에 대한 표준교재안은 없으며, 활동지원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관에서는 대부분 최근의 활동지원 서비스 지침 교육과 코로나 19 소진 및 우울 극복 관련 종사자를 위한 역량 강화 또는 인권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교육

가) 개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함으로써 상시적 돌봄이 요구되는 환경에서의 양육자에게 휴식을 지원하고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아돌보미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및 외출 지원뿐만 아니라 놀이와 학습을 지도한다. 만 70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장애아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은 이론(30시간)·실습(10시간), 오리엔테이션(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 가지 형태로 (신규, 교육 감면, 경력자 면제) 구분되어 있다. 신규자일 경우, 이론·실습(40시간), 오리엔테이션(3시간)을 이수한다.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장애인복지 등 관련 자격 및 전공자와 아이돌보미경력자, 최근 1년 동안 활동보조경력 180~360시간 미만인 자는 교육감면 대상으로, 이론·실습(20시간), 오리엔테이션 3시간을 이수한다. 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장애인활동보조인 경력자는 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9)]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은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후, 활동 경력이 6개월이 지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장애아돌보미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활동 이후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자료는 2020년부터 현재(2022년)까지 매해 개정되어왔으며, 아래의 교육 내용 분석은 최근 3년(2020년, 2021년, 2022년) 교육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나) 교육 내용 분석

2022년 교육자료 기준으로, 41차시-44차시에 장애아동 성 관련 교육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41차시와 42차시는 장애아동 행동특성 이해 및 성교육 항목에서 장애인의 성이해와 장애아동의 성행동 특성 이해 및 지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43차시와 44차시는 장애아동 행동특성 이해 및 성교육 항목에서 장애아동 성교육과 장애아동 성폭력 예방과 대처로 나뉘어

9) 보건복지부(2022). 2022년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사업안내.

구성되어 있다.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41차시 장애인의 성 이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 항목으로는 성 평등 관련 용어, 성적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 장애인 성 인권 등이 있다.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내용은 단순히 성차별, 성 역할 고정관념, 성인지, 성차별, 이중차별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한 용어 설명 교육을 통해 학습 목표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성적 권리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 또한 개략적인 용어 설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 자료 구성이 필요하다. 43차시 교육 자료는 전반적으로 교육대상자가 장애아동에게 성교육 지도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장애아동의 성행동 특성과 더불어 장애인의 성교육 지도 자세에 대해 다룬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의 성적 호기심을 인정하고 질문에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장애아돌보미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자의 태도와 에티켓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필요하다. 교육내용 중 장애아동과의 애정 표현은 생활 연령에 맞게 해야 한다는 지침은 구체적인지 않아 교육대상자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이므로 장애아동에게 편향된 성 가치관이 심어지지 않도록 언어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돌봄 현장에서 교육대상자가 숙지하여야 할 성 중립적 언어표현에 대한 교육 자료를 사례 제시 등을 통해 제시해야 할 것을 분석된다.

한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은 6개월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따라서 양성교육에 비해 교육시간이 짧으며, 교육내용 또한 돌봄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0년, 2021년, 2022년) 보수교육 자료는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각각의 교육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교육자료는 성폭력 예방교육,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 실제,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장애아 도전적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과 돌보미 역할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교육자료는 장애아동 학대 이해 및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아돌보미 직업윤리 및 철학,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의 경우, 장애아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이론과 실제,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이해와 활용,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이해와 활용으로 교육 자료가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교육자료의 주안점을 살펴보자면, 2020년의 경우, 양성교육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판단된다. 2021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학대,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장애아돌보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법지식과 장애인 인식개선이 중점

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과 비교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이 추가되면서 장애감수성 및 차별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되었으며,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보조기기에 대한 교육이 추가되었다. 교육 시간과 범위가 적은 만큼 추후 개정시, 성인지 관점 교육내용을 따로 싣기보다는 성인지 관점을 교육내용 전반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표 Ⅲ-6〉 최근 3년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보수교육 비교

구분	교육 내용	비고
2020년	· 성폭력 예방교육 · 뇌병변 장애아동 지원 실제 · 안전지도 및 응급처치 ·장애아 도전적 행동 지원: 긍정적 행동지원과 돌보미 역할	양성교육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반복 학습
2021년	· 장애아동 학대 이해 및 예방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아돌보미 직업윤리 및 철학 ·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돌봄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법지식(학대, 장애인을 위한 법과 제도, 개인정보보호)과 장애인 인권 중심으로 교육 전개
2022년	· 장애아 가족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지원 · 장애아동과의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이론과 실제,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이해와 활용 · 중증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이해와 활용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 전개

나. 기관 소속 발달장애인 제공인력 교육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가) 개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들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10]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반

10)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7

적인 활동을 돕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은 활동지원사나 장애아돌보미와 달리 일정 자격 조건이 필요하다. 채용 기관마다 응시자격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자,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직업상담사, 제과·제빵·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 관련된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등이 해당된다. 교육시간은 이론(30시간)·실습(24시간)으로 총 54시간으로 구성되어있다.

나) 교육 내용 분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가이드북은 30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론교육에 제공되는 교육 자료이다. 해당 교육 자료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욕구와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인권과 윤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원생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 발달장애인의 안전, 발달장애인의 건강, 발달장애인 학대와 보호, 주간활동서비스 실천 등 총 10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내용 중 성인지 관련 교육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9장 발달장애인 학대와 보호'에 장애인 학대(성적학대, 성폭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은 성적 욕구와 호기심이 가장 왕성할 성인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내용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분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임해영·김학주(2015)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발달장애인의 급작스러운 성행동이나 일탈적 성행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성인식이 발달장애인의 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발달장애인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다. 발달장애인 주양육자 교육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

가)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은 보건복지부가 2012년부터 추진한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처음 개발되었다. 본 분석은 2016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기존 연구내용에 최신 업데이트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가하여 만든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해당 자료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을 위한 강사 참고용이며, 부모 양육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되었다.

나) 교육 내용 분석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은 발달장애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과 관련된 교육은 초등학령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제'와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제', 그리고 성인기 단계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성, 사랑, 결혼'이다. '발달장애인의 성, 사랑, 결혼'도 성교육과 성추행·성폭행 예방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성교제와 결혼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다. 해당 자료는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교육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성인지 관점의 교육내용의 추가가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부모가 지니는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최복천·김유리, 2014). 또한 발달장애인의 성적 권리는 무엇보다 부모의 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들의 성적 권리 보장을 위해 부모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 외에도 성인지 관점에서의 교육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성교육 과정에서 성 편향적 인식과 언어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과 동일하게 돌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성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

2)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

가) 개요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은 구어 이해와 지시수행이 가능한 사춘기의 발달장애인을 둔 주 양육자가 생활 속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성인권 교육을 제공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이들을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 매뉴얼이다. 사춘기의 발달장애인은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며 많은 에너지를 분출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주 양육자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주 양육자에게 발달장애인의 성과 성적 발달을 이해시키고 발달장애인에게 성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주 양육자는 사춘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발달장애인이 경험하는 불안감과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교육 매뉴얼은 주 양육자가 발달장애인의 성과 성적발달잘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성교육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본 매뉴얼은 총 8회기 강의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회기는 주제, 목표와 세부목표, 배경 정보, 교수 범위, 교수 내용, 평가, 도움되는 문헌 등을 포함한다. 각 회기마다 성취되어야 할 목표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이 제시되어 있다.

나) 교육 내용 분석

본 교육 매뉴얼은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8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성', '발달장애인', '사회의 성문화', '생활 속 성교육'이라는 네 가지로 영역으로 나뉘며, 이 안에 8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표 Ⅲ-7〉 성인권 교육의 영역과 주제

영역	주제
인간의 성	1. 인간 성의 특성
발달장애인	2.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
	3.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과 성인권
	4. 성적 발달의 기초로서 자기인식과 자존감
	5.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사회의 성문화	6. 사회의 성문화와 디지털 매체의 성 정보
생활 속 성교육	7. 생활 속 성교육
	8. 함께 성장하기

본 교육 매뉴얼은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된 교육 매뉴얼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보다는 학술적·이론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sex, gender, sexuality의 의미와 차이, 발달장애인의 성적 발달 및 사춘기 특성, 성 교육 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럴렐 토크, 모델링, 칭찬 방법 등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매뉴얼은 성인권 관련 교육이지만, 성평등 의식이나 성별간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신체 발달, 성적 자기결정, 성폭력과 성범죄, 성 분별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성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성적자기결정권은 철학적인 사고나 법적인 판단에 기초한 성평등 측면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한용현·정연수, 2021). 따라서 본 성인권 교육에는 큰 범위의 발달장애인 성인권뿐만 아니라, 성인지 관점에서의 남성·여성 발달장애인의 성 평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성인권 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4. 소결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주요 교육현황을 살펴보고, 지침에 근거한 주요 사업을 토대로 주요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 시설 종사자와 발달장애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교재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서비스 종사자인 활동지원사 및 장애아양육돌봄미 관련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둘째, 기관소속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교육, 셋째, 발달장애인 주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 내용을 성인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크게 장애인복지시설 소속으로 아닌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지원사, 장애아양육돌보미, 주간활동제공인력 등은 30~50시간의 양성교육과 8시간의 보수교육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지고 있고, 대체적으로 시설 소속 종사자들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장애인 인권과 학대 예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침에 근거하여 표준교재가 있는 종사자 교육교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성인지 관점에서 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수정 및 보완 문항 등을 제안하였다.

아래의 표는 각각의 교육과정의 성인지 관련 내용과 주요 검토 내용이다.

〈표 Ⅲ-8〉 교육과정별 성인지 관련 내용 분석결과 요약

구분	교육명	성인지 관련 내용	주요 검토(안)
자립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 돌보미 교육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보수교육	· 성인지 감수성, 장애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됨(p.57) · 보수교육에서는 해당 없음	·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교차성을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되며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체크리스트'의 경우, 실제 행동 너머의 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문항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양성교육/ 보수교육	· 2022년 교육자료 기준으로, 41차시-44차시에 장애아동 성 관련 교육 자료가 구성되어 있음. · 성인지 감수성 부분은 41차시 장애인의 성 이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위 항목으로는 성 평등 관련 용어,	·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내용은 단순히 성차별, 성 역할 고정관념, 성인지, 성차별, 이중차별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한 단순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용어 설명 교육을 통해 학습목표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구분	교육명	성인지 관련 내용	주요 검토(안)
		성적 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 장애인성 인권 등이 있음. · 2020년의 경우에는 양성교육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교육하는 것을 판단되며 성인지 관련 내용으로는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음. · 2021년 장애감수성 및 차별의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음. · 2022년의 경우에는 장애아동과 장애아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되었으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됨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보수교육 시간과 범위가 적은 만큼 추후 개정시, 성인지 관점 교육 내용을 따로 싣기보다는 성인지 관점을 교육 내용 전반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됨.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교육	· '제9장 발달장애인 학대와 보호'에 장애인 학대(성적 학대, 성폭력 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성인지 관련 교육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p.144).	· 발달장애인의 성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성 행동 문제 해결을 위한 지침이 필요함.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과정 매뉴얼	· 성과 관련된 교육은 초등학령기(아동기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제, p.59)와 청소년기(청소년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가정에서의 성교육 실제, p.45), 그리고 성인기(성인기 단계에서의 '발달장애인의 성, 사랑, 결혼p.3) 부분에서 다뤄짐.	· 생애주기별 발달단계에 따른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 관련 내용 외에도 성인지 관점에서의 교육도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부모의 성 교육 과정에서 성 편향적 인식과 언어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발달장애인 주 양육자 성인권 교육 매뉴얼(전문가용)	· 발달장애인의 주 양육자를 가르칠 성인권 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작된 교육 매뉴얼로,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지침 보다는 학술적·이론 중심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성인권 관련 교육이지만, 성평등 의식이나 성별간 불균형·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음. · 큰 범위의 발달장애인 성인권뿐만 아니라, 성인지 관점에서의 남성·여성 발달장애인의 성 평등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의 성인권 교육 내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Ⅳ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수요 분석

1. 연구 개요 45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48
3. 현행 교육의 실태와 문제 55
4. 성인지 교육정책 수요 70
5. 소결 89

1. 연구 개요

가. 연구 목적 및 대상

이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운영과 내용 등 전반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문제점과 정책수요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점집단면접(FGI)을 시행하였다.

FGI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장애인 복지종사자 교육 강사, 장애인 복지종사자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30명이 FGI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참석자 중에는 교육 강사이면서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혹은 장애인 부모인 경우도 있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등 면접 대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6명(사례17,26~30), 교육강사 12명(사례1~10,14,26), 교육관리운영기관 관계자 7명(사례2,11~16),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8명(사례17,19~25), 장애인 부모 3명(사례1,9,18)이었다. 한편, 교육 강사는 발달장애인지원기관,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다양한 장애인 단체·기관에 소속되어 있었다. 교육운영관리기관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관계자로서 여러 지역(서울, 경기, 대구, 제주 등)에서 참여를 하였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자립지원센터 등에 소속된 관계자와 활동지원사이었다.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 유형이 지체 3명, 뇌병변 4명, 시각 1명이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부모는 3명이 참여하였는데, 자녀의 장애가 발달이 2명, 중복장애는 1명이었다. 이들 참여자는 해당 기관 및 면접 참여자의 추천을 통해 발굴하였다.

FGI는 1~3명을 대상으로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고, 8~11월까지 총 14차례 시행되었다. FGI 전에 면접지를 메일로 보내주고 면접 당일에는 충분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 전에 구두로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고, 그 내용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표 Ⅳ-1〉 초점집단면접 참여자 현황

구분	강사	종사자	운영기관	장애인	장애부모	사례번호
교육강사	O				O	사례1
	O		O			사례2
	O					사례3
	O					사례4
	O					사례5
	O					사례6
	O					사례7
	O					사례8
	O				O	사례9
	O					사례10
교육관리운영기관			O			사례11
			O			사례12
			O			사례13
	O		O			사례14
			O			사례15
			O			사례16
장애인 및 장애부모		O		O		사례17
					O	사례18
				O		사례19
				O		사례20
				O		사례21
				O		사례22
				O		사례23
				O		사례24
				O		사례25
종사자	O	O				사례26
		O				사례27
		O				사례28
		O				사례29
		O				사례30
합계(명, 중복)	12	6	7	8	3	36

나. 연구 내용

FGI의 내용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장애인 복지종사자 교육 강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와 같이 대상자 유형별로 아래 〈표 Ⅳ-2〉에서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Ⅳ-2〉 초점집단면접 주요 내용

대상자 유형	면접 내용
복지서비스 종사자	- 개인 경력, 제공 서비스 - 종사자로서 근무 전과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변화 - 장애/성인지 감수성 인식 - 서비스 현장에서 장애인 이용자의 주요 이슈 - 서비스 현장에서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어려움 - 종사자 이전 양성교육의 도움 정도 - 보수교육에 성인지 내용 필요성 및 구성 내용 - 성인권, 성평등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시 중요한 부분 - 서비스 과정에서 성차별 및 인권침해 피해 경험
교육 강사	- 개인 경력 - 성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 관련 성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인식부족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 - 성인지 감수성 제고위한 교육자료 구성시 고려사항 및 구성방향 - 표준교재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성인지성 반영과 적절성 - 성인지적 관점에서 표준교재 등 교육에서 개선 사항 - 젠더+장애의 차별/중복차별 완화를 위한 교육측면의 개선 사항
장애인 교육운영 관리기관	- 개인 경력 - 기관/단체 연혁 및 성인권 관련 지원 내용 전반 - 성인지/장애인 성인지 관련 사회적 인식과 흔비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이로 인한 이슈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교육측면의 개선 -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성별 고정관념으로 서비스의 제약과 문제점 - 표준교재에서의 성인적 관점 적절성 및 수정보완 내용 - 표준교재 등 현재 교육운영에서 장애인 성별 고정관념 제거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내용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부모)	- 장애 유형과 정도 -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과 심각성 - 장애로 인한 차별과 성별이 교차된 차별의 사례 -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요 - 표준교재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 관련 수요

2.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이 절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왜 필요한지와 관련하여, 그 배경이 되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 및 인권침해 상황을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 장애인복지서비스 종사자와 교육 강사 및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

1) 무능·무성의 대상

한국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는 가장 먼저 무능의 존재, 무성의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있으면 무시되기 싶고, 무능력하다고 말하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 뒷바라지는 어떻게 할거냐, 아이는 낳을 수 있느냐.. 비장애인에게는 애인있냐, 언제 하냐고 물어보지만, 나(장애인)에게는 누구 하나 이렇게 묻지 않는다. (사례17)

> 장애인, 장애여성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장애인은 못 한다,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투쟁적으로 바뀌는 것 같다. 사회가 전혀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19)

>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해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불쌍하다는 시선이 많다. (사례20)

> 추석 때 밥을 다 먹고, 식기, 수저를 싱크대로 갔다 두러 가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그만두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나는 설거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가만히 두라고 하니, 나는 집에서 뭘 할 수 있지라는 느낌이 확 있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닌데, 시키면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사례 22)

> 가장 큰 문제는 장애인을 환자로 대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라는 식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 문제이다. (사례 25)

장애인 부모 역시 장애인 당사자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부정적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아를 둔 한 부모는 자녀가 생리와 성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인식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장애인 부모부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음을 보여준다.

>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생리를 할 때, 생리를 못하게 할까 고민을 했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그런 성적행동을 하면 주변에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문제다. 흔히 일어나는 것이 핸드폰으로 디지털 그루밍 사건이 많다. 여성이면서 발달장애가 교차가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사례9)

여자아이는 생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아이는 성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다. 어머니들이 무성을 더 요청하는 것 같다. 생리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라고 말한다. 우리아이는 생리하지 않아라고 하면 부럽다고 한다. (사례18)

엄마가 강하게 제지하면 밖에서는 더욱 심각하다는 생각, 이런 것이 강화될 경우, 최근에는 미투 등이 있기에, 장애인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들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 부모들 자체가 보수적이고, 사회에 나갔을 때 여전히 보수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예방하지 않고, 그때서야 도움을 요청한다. (사례 18)

종사자와 부모 모두 장애인이 무성적 존재가 아님을 먼저 인지시켜야 한다. 부모가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사례9)

2) 무관심과 배제의 대상

장애인 당사자, 특히 장애여성은 '장애'와 '여성(젠더)'이라는 이유로 일상에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장애 정도가 중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를테면 집안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연애와 결혼 및 임신을 포함한 모든 일상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부모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하고 차별한다고 지적한다.

장애여성이므로 장애와 여성의 억압이 중복되어서 다양하게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여성은 비장애인에게 요구되는 것을 받지 못한다. 비장애인은 비혼이더라도 결혼 언제하냐, 자녀 언제 낳냐고 하지만, 중증장애여성에게는 어느 누가 물어보지 않는다. 이게 성평등한 것이 아니다. 배제되는 것이다. 내가 임신을 했을 때도 (가족들이)낙태하라고 했고, 단지 연애만 하라고 했었다. 중증장애여성이 배제되는 것이 문제이다. (사례17)

제 나이 또래 여성/남성은 연애를 해야 할텐데, 애인이 있으면 좋을텐데, 나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도 연애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물어보지 않는다. 나는 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까? 부모님, 형제들을 통해 주로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하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제가 혼자 살고있는 집은 내가 할 수 있는 장소로 배치를 했는데, 요리도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오면 나는 중증장애인이 된다. 내가 커피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엄마는 "니가 뭐 하노"라고 하신다. 내가 힘들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무기력해지는 것 같다. (사례20)

3) 의사권·선택권이 비존중되는 대상

장애인 당사자는 일상에서 본인들이 선호하고 선택한 것이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의해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종종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 필요한 것을 신청하는 과정이나 요청한 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 종사자가 본인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이들과 동행한 보호자나 조력자(활동지원사 등)에게 함으로써 본인의 의사가 무시되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등, 주변화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 옷 사러 갔을 때 남성장애인은 색깔, 물건을 지정해서 요청하지 않는데, 여성장애인은 어떤 색깔을 요청했는데, 활동지원사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온다거나,... 활동지원사의 시선에서만 결정하려고 한다. 미장원 갈 때, 활동지원사가 짧게 커트하라고 한 경우도 있고, 밝고 하얀 색을 입고 싶은데, 자주 빨아야 하니 입지 말라고 한 적도 있었다. (사례17)

>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편한 옷을 입으라고 할 때도 있고, 외출을 하고 싶은데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외출 지원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싶은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은 활보도 있고, 어떤 분은 근무시간에 지원사 분의 가족분을 일하는 곳에 데리고 와도 되는지도 물어보기도 했었다. (사례21)

> 당사자는 나인데 설명은 활보에게 하는 경우,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지만,... 공공기관에도 서명이 필요하거나, 한글 쓸 수 있냐고 물어본다. 공공기관에 가서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활보에게 물어보고 이건 저건 이렇게 설명하는..., 나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느낌이었다. 당사자가 이분이니 이분 말을 들어달라고 하시는 분(활동지원사)은 없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 당연히 활보는 보호자가 아니고 지원사이고 당사자와 직접 소통하라고 해 주면 좋겠다. (사례20)

4) 보호와 의존의 대상

장애인 당사자는 우리사회가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고, 어린아이 취급받는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중증지체장애인의 경우, 이동을 비롯한 신변 처리 등에서 전적으로 조력자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대상임을 인지하게 되고, 조력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서도 그러하다.

> 신체보조를 받아야 하는데 지원사가 힘이 약해서 제가 너무 위험했던 적이 있었고, 활동지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 활보여서, 제가 주로 필요한 것이 살림인데, 어린 활보가 배치되어 어려움이 있어서 교체를 했었다. 신체보조는 휠체어에서 다른 의자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 부축을 해 주어야 하는데 힘이 약해서 떨어질뻔 했다. 제가 뼈가 약해서 크게 위험했던 적이 있었다. (사례20)

장애부모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거나 어린아이 취급을 받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하는 것을 위축시키고, 조력자에게 더욱 의지하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 활동지원사가 연령대가 높은데, 내 딸/아들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데,... 활동지원사가 공적인 장소에서 성적 발언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싫어하는 활동지원사도 있었다. 내 아이 보듯이 대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사례19)

> 장애활동지원을 하지만 장애인 혐오 발언을 하곤 한다. 어떤 장애인이 이런데... 비교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 차원에서 나는 이러지 않은데 다행이지 않냐, 나라에서 지원받지 않냐는 식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활보는 40-60대였다. 반말을 한다던지,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딸처럼 대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엄마가 필요한 건 아니다. (사례20)

나.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성차별과 인권침해 실태

1) 성차별

장애인 당사자, 특히 장애여성은 복지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한 여성은 생식기 구조상 여성은 소변 시간이 남성보다 길 수밖에 없고 머리카락이 길어서 관리해야 하고, 월경으로 인해 준비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종사자는 장애인은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성차별이나 성적 불편감을 준다고 하였다.

>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감정이나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해도 되고, 여자는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제가 여성스럽지 못한 것을 지원사가 많이 지적한다. 여자는 음식은 조금만 먹어야 해, 웃는 것도 크게 웃으면 안 돼 등... 그런 것이 있다. (이처럼)종사자로부터의 성차별이 많다. 장애여성은 장애남성보다 오줌 누는 시간도 길고, 머리도 길어서 따아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차별의 요소가 된다. (사례21)

> 여성장애인으로 불편했던 것은 월경시기에 불편했는데, 이를 비교하시는 분(활동지원사)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남성장애인은 월경을 안하는데, 여성장애인은 월경을 해서 힘들다고 하거나, 어떤 분은 월경하는 나를 보면서 남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할 때도 있는데, 너무 황당하다. - 월경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음. 대체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사례21)

한 장애인은 복지서비스 종사자로부터 장애여성은 이혼할 권리가 없고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대상인 것처럼, 장애인다움, 여성다움과 여성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것이 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와 부딪치는 부분이라고 하였다.

> 여성과 남성의 장애인의 특성, 우리사회의 대응, 이로 인해 반응이 다름. 장애인인데, 이혼했는데, 활동지원사가.... 왜 이혼했나 남편한데 잘 붙어서 살지, 민감한 부분을 건들게 되는데, 이런 것을 건들게 되면,... 활동지원사와 갈등이 생기게 된다. (사례17)

2) 성적 불쾌감 및 성폭력

장애인 당사자는 신변 처리 과정에서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생리대를 교체해야 할 때, 본인의 의사를 묻지 않거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문을 열어둔 채 도와준다든지, 목욕·샤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다든지 등이 있다고 하였다.

> 장애여성은 생리작용, 생리현상이 있지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거나, 바지를 올려 주거나, 옷이 쪼여지면서 드러나는데 그때는 벽을 향해 돌려주면서 되는데, 화장실에서 하면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문제이다. 별거 아닌데 왜 이러냐고 하는데, 이게 별거가 아니다. 장애인에 있어서는... 화장실에 활동지원사가 같이 가는데 문을 안 잠그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목욕 지원을 하는데 활동지원사가 더워서 문을 열고 하는데, 남편도 있고 다른 가족도 있는데, 이렇게 활동지원사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장애은 무성적 존재로 보기 때문이며, 그것이 가장 밑바탕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사례17)

> 남성이용자는 활동지원사가 여성이 많다 보니 어려워 한다. 특히, 신변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OO가 작네, OO가 OO하네 장난처럼 남성 성기를 터치는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이용자가 불편해하는 것을 (활동지원사가) 교육받으면 이용자 관계에서 불편해하게 되므로 힘들어한다. (사례19)

> (생리를 하면)화장실에 하루에 1-2번 가고, 24시간 참기도 하는데, 생리대를 교체하기 싫기 때문이다. 생리대 교체 후에 성기를 닦아주는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으면 불편해서 활동지원사에게 가능한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신변보조이므로 내가 감내해야 한다. (사례23)

> 활보가 목욕할 때, 생식기는 씻어 달라고 하기 그래서 내가 할께요라고 했는데, 활보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씻어 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몇 번을 얘기를 한 적이 있다. 활보 중에서도 선을 지켜주는 분이 가장 좋다. (사례25)

3) 비존중 및 통제의 일상화

활동보조를 지원받는 장애인 당사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선택, 결정이 무시되는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장애인 당사자와 활동지원사 간의

연령차 외에도 친근한 관계 형성이라는 이유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모호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여, 실제 제공받아야 하는 서비스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 (나와 같이) 활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고 이모, 삼촌으로 호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깝게 편하게 지내려고 부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활동지원사로서의 역할을 흐릿하게, 경계를 흐릿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싶고, 우리(나와 활동지원사)는 가족이 아니다. (사례22)

> 활보가 가끔씩 야한 농담을 하실 때가 있다. 그때 수치스럽다 민망하다. 당황스럽다는 생각을 한다. 어머님 나이 때의 분이라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었다. (사례20)

> 활보 선생님과 연령차가 있다 보니 성에 대한 편견도 있다 보니, 장애여성이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파트너와 연예를 하면 이상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활보 선생님의 연령이 50-60대 이어서 성에 대한 소통이 어려워 하기도 하고, 지금의 성 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갈등도 있기도 하다. (사례24)

> 활동보조인의 결정이 우선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배치가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요구에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갈등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활보가 바뀌면, 거의 한 달 동안 계속 요구를 반복해서 얘기를 드려야 한다. 활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 전달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다. (사례25)

한 장애부모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지도하고 통제하며, 의사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 활동지원사제도는 신체장애인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그런데 실제 이용자는 발달장애인이 더 많다. 서비스 문제가 있는 것은 활동지원사가 선생님처럼 행동하는 것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 권한 부여가 활동지원사에게 많아서 그렇다. (사례1)

복지서비스 종사자 역시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의 장애인의 성에 대한 보수적·통제적 태도는 가장 일상적인 활동인 신변 처리 지원에 있어서도 통제와 비존중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있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거나 제도적 기준을 맞추다 보면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이들은 언급한다. 즉, 제도에서 규정된 업무 범위와 관리감독 체계에서 서비스 종사자는 장애인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들 속에 자신들을 놓이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성선생님들이 비율이 훨 높거든요.(생략) 목욕은 지금 워낙 인권에서도 동성에 대한 배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선생님이 남성 목욕 지원은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억지로라도 맞추려고 하죠. 사실 근데 현장에서는 좀 어려워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직원 배치율이 그렇게 골고루 될 수가 없거든요.(사례30)

> 주간업무보고를 하면서 활동지원사 입장에서는 저는 자괴감이 좀 듭니다. 제 직업에 대한 폄하기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이용자의 신변처리를 하는데 그걸 또 리얼하게 주간업무보고에 적는다고 생각하면 제 직업에 자부심이 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사생활 노출입니다. 저희들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펼쳐놓고 그냥 관리감독감시, 주간업무보고 안에서 활동지원사를, 이용자를 관리감독 하나...(사례26)

> 나들이를 갈 때 차량 이동시간이 길어질 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대소변처리를 잘 안되니까 기저귀를 착용하거든요. 사실상 저는 반대하는데 왜냐면 20대가 넘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데 화장실을 안내해서 가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한 사람인데 이동의 편의, 그러니까 지원인력과 그런 프로그램을 잘 수행해야 하니까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에 사실 반대하거든요. (사례28)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특히 장애인의 성에 대한 낮은 인식은 이들의 성적 권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통제적 접근 중심의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현장에서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지원 방향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장애인의 성적 향유권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다.

>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든 장애인 성적인 부분이든 일반 성인이든 존중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은, (중략)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식,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사례28)

> (복지관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요구에 적절한, 꼭 필요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용자 분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른 장애인분들도 보면 옷을 벗으려고 하는 손짓이 보일 대는 굉장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럼 화장실을 데려 간다거나 다른 분들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 노출은 하면 안 된다, 왜냐면 CCTV도 곳곳에 있고 또 지원 인력 중에는 사회복무로 하는 젊은 청년들도 잇고 해서 조금이라도 노출이 돼서 개인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는 차단하는 거 그리고 조심하거 그런 것 같아요(사례28)

> 센터나 기관에서는 성인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를 없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한 차원 더 높여서 성을 존중한다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요. 신체접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애정표현이라고 하는 게

나이나 아니면 이런 신체발달 상황이나 발육이나 이런 거를 볼 때 분명이 접촉이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애정이라고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성인지나 그런 인권에 대한 인식은 역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쪽으로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사례28)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는 본능적으로 성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사실은 교도소를 가신 분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도 또 그런 피해 본 것들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입을 다물 거나,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략) 그냥 잘 안전하게, 아직까지도 안전하게 이렇게 있다가 취업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라는 부분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사례30)[11]

장애인 당사자분들의 성적 향유권이죠. 그런 내용을 한 번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없어요. (생략) 왜 그런 것들을 지원사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까? 성 향유권이라는게 단순히 이제 성적 관계뿐만 아니라 데이트 결혼 교재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이 있잖아요.(사례27)

3. 현행 교육의 실태와 문제

가. 종사자·이용자 맞춤형 교육 부족

1) 짜맞추기식·형식적 및 편견적 교육 현장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현행 보수교육, 의무교육이 짜맞추기식의 형식적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교육이 장애인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적·부정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어떤 기간에 짜 맞추기씩 그냥 보수교육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그 수업 방식은 저희 지원사들한테는 별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사례27)

종사자분들은 성인지 교육이라고 사실은 이제 뭐 해야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권교육 안에서 성인지 교육이 있냐. 없냐. 정도의 반응 정도만 물어보거든요.(사례30)

지역 내에서 아이엘 센터뿐만 아니라 무슨 노인요양기관 아동복지 이런 간호 이쪽으로 해서

11) 기관 종사자들은 발달장애인의 성권리를 옹호하면서도 성 관련 쟁점(예: 자녀 양육, 성폭력)에 대한 염려로 소극적 태도를 취하거나 심리적 중압감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감은 성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을 종사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고 그 책임 또한 종사자의 몫이 되는 현 서비스 체계와 관련이 있었다.(김유리 표윤희 서민경 조당윤, 2021: 71쪽)

> 가끔씩 연계해서 교육을 할 때가 있어요.(중략) 우리는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저 사람의 보호자다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더라고요. 교육내용이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못하게 해야된다 이런 교육을 하더라고요.(사례29)

2)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와 특성 미반영

장애인 복지서비스 안에서도 종사자의 업무 영역과 근무환경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장에서 이뤄지는 보수교육, 의무교육은 이러한 종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근무 시간대가 다른 종사자 간에는 모여서 교육을 해야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곧, 종사자가 교육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복지 현장의 상황을 시사한다.

> 1년에 8시간인가 채워야 됐던 걸로 아는데 못 채웠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어영부영 넘어갔어요. 말씀하신 대로 환경 이런 거 조금 활동지원사가 개개별로 일하는 시간이 엄청 다르잖아요. 같은 교육내용이라도 한두 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사례29)

> (교육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주면요.(사례28)

>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3교대 근무자들이 많아서 그 근무자들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에서 만이라도 서로가 어떤 서로의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주고받아야지 그 교육의 효과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사례30)

인터뷰에 참여한 교육 강사 및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활동지원사의 경우 임금수준이 낮아 주업으로 하기가 어려워 중장년층의 여성이 주로 하는 업무이고, 근속연수도 짧아서 양성교육, 보수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활동 지원 현장에 있는 활동지원사분들이 대부분 중장년 여성이세요. 어느 정도의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는 60년대생 분들이 오시면 젊은 분 오셨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중략) 이 현장이 되게 중장년 여성의 마지막 직업 그러니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중장년 여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대개 선생님들 중에서는 재외동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글을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그리고 되게 교육의 기회나 이런 게 많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기도 하고 그런 이제 교육 어쨌든 그런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중장년 여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현장인데. (사례16)

> 남성 종사자들의 경우 지속 근로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성분들의 경우 근속 연수가 최소 몇 년 이상 이렇게 된다, 하면 남성분들의 경우 조금 더 수입이 좀 더 보장되고 좀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그리고 일대일 지원에 대한 어떤 것들에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요, 남자분들은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한계도 되게 많으십니다. 사실 가사 지원이나 신체 지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사회 지원으로 어떻게 보면 국한이 되어서 그 부분만 원하시는 이용자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선택의 폭도 적고 지속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2)

종사자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근속 연수가 1년에서 2년 정도 되시더라고요. 활동 지원사 같은 경우는 시간 범위가 좀 많이 그래도 차지해요. 그래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이 맞춤형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월 60시간이 안 되고 만약에 60시간을 만 원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월 60만 원이라면 예 이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종사자로 좀 일을 전적으로 하시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수 교육 1회를 들었다고 해서 과연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권익 옹호 활동을 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의문이 가고요. (중략) 다음으로 365 쉼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연 단위 계약을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근속 연수가 한 2년 정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년 바뀔 때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배우는 시간도 부족한데 성인지와 학대 예방에 대한 그리고 권융 옹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충분히 소화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은 담당자들도 좀 이야기가 어려워서. (사례11)

3) 양성교육 표준안의 낮은 활용도

인터뷰에 참여한 교육 강사, 특히 성인권 전문강사에게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교육교재 표준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체로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하더라도 이를 변형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활용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교육 시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육 시간은 한정적인데 성인권·성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고,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 수요기관에서 보편적 인권에만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포함하더라도 간략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복지부 저도 쓰지 않아요. 교육안을 네 그걸 정말 생각도 해본 적이 없네요. (중략)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오후에도 보편적 인권 교육 의뢰가 와서 거기를 가는데 저는 그럴 때 항상 담당자와 확인을 해요. 보편적 인권에 제가 가서 성인권을 이야기하면 보편적 인권인데 왜 그런 얘기해요 라는 평가가 반드시 나와요.(사례7)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교재가 올 6월인가 7월에 새로 개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교재 안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중략) 예를 들면은 장애와 인권이라는 파트 이 안에 성인지를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장애인 인권 보장해가지고 인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인권 협약의 내용들 그다음에 차별 금지에서 차별 금지법의 내용들 그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복지 분야에서 종사자 교육을 할 때 인권과 학대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는 책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다가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예방까지 넣어놨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3개 과목을 두 시간 안에 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례14)

활용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로 기존에 강사가 사용해오던 교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과 교육안의 내용이 서비스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 (교재에) 주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또 성과 관련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젠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조금 조금 나아졌다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뭐랄까 거기서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교육하기에는 내용을 담아내는 게 너무 조금 좀 좋지는 않아서 강사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자기 방식대로 강사의 방식대로 한 시간 안에서 좀 녹여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신규 교육에서는 신규 책자가 교재가 조금 바뀌면서 내용이 조금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략) 교육 자료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거든요. 활동지원사 양성 기관의 교육기관 중에서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데 이 교육기관 안에는 해당 강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교육 자료가 개편될 때 강사들 간의 FGI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번 개편안에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pdf로 전달이 됐어요. (사례4)

> 사실은 인권 교육이나 성교육 초기에는 표준안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성가족부에서 타키 메일을 통해서 장애인 성교육 특히 이제 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중심의 성교육 안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많이 이제 교구도 많이 나왔었고 표준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교육안이나 표준안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떻게 교육을 나가느냐 하면은 한 10년이 넘다 보니 노하우가 생겨서 예전에 썼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저 나름대로의 특성을 다 현장의 특성을 아니까 그 특성을 기초로 해서 베이스 그러니까 저장해 놓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은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미리 교육관을 보내주면서 담당 교사나 아니면 거주 시설에 있는 생활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서 이게 적합한지 어떤지 그 환경에 맞는 건지 어떤지 아니면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이렇게 소통해서 교육관을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5)

종사자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들은 표준교육안으로 교육을 받은 활동지원사들이 활동지원사라는 역할에 대한 이해가 낮거나 실제 현장에서 이용자를 어떻게 대할지를 모르는 등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려움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전화 올 때 활동 지원사라는 직업 명칭을 모르고 전화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이 일에 직업명이 뭔지조차 사실 교육을 이미 40시간 이상 들었지만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직업을 하려고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설명부터 사실 면접 과정에서 재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사례16)

> 교육 안에 그러니까 인권 침해나 그다음에 권익 옹호와 자기 결정에 대한 만약 강의를 들었으면 현업 적용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현장과의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사례11)

> 지적인 주체가 당사자다라는 부분이 강조돼야 되는 거 장애를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내용이 오히려 다양한 장애 유형을 의학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런 교재에 보면 상당히 분량도 적고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또 그러한 사례들을 사례 중심으로 좀 쉽게 풀어나가는 그리고 많은 시간이 배정되어서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제시되어서 그런 관점으로 종사하는 데 역할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례15)

> 교육이 제가 알기로 40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교육 기관에서 그래서 일부 기간을 그냥 동영상으로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분들을 어쨌든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중략) 분명히 교육으로 어느 정도는 듣고는 오셨을 텐데 약간 좀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례13)

아울러, 활동지원사 표준교재에는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와 개념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왜 성인지 감수성이 서비스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지 등에 관한 내용이 없음도 지적되었다.

> 활동지원사 표준안에는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전무하다. 활동지원사가 해야 할 일, 인권에 대한 개괄적 내용, 응급실 내용 등만 있지, 남녀의 성별 고정관념, 지원사가 이성인 경우, 지원사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활동지원사를 성희롱을 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용자도 그렇고 종사자에 대한 학대 피해 및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한다. 집에서 성적인 얘기를 하거나, 남성 이용자에게 목욕 지원을 해야 하는데, (여성)종사자가 몸을 씻어 주어야 하나, 어디까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다... (중략)... 단둘이서 으슥한 곳에 두 분이 여행이 갔는데, 경남에서 카섹스로 유명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해서 갔는데, 이용자가 이상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되었다. (사례17)

4) 현장 수요에 따라 변화되는 보수교육

보수교육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보수교육은 표준교육안 없이 강사가 자체 개발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시간에 인권교육이나 성인지 교육을 함께 하게 되는데 교육의 내용과 질은 강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수요기관의 기관장이나 담당자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된다.

>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은 1년에 종사자 4시간 이용자 8시간 의무 교육을 인권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평생교육센터 이런 곳에서도 보수 교육으로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 그리고 여기 안에서 교육 정책이라는 것들이 뭔가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뭔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매뉴얼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료집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관마다 강사를 섭외해서 그때마다 자료집을 제작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자체적인 이런 것들을 한 형태이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기관의 관장이나 원장 이런 분들의 가치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좀 더 직원 교육을 많이 하시는 곳은 더 많이 하시고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서를 통해서 사업비를 따로 별도로 받아서 종사자들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곳들도 계시고 (중략) 보수 과정의 경우에는 이게 정례화된 교육 자료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교육과 이렇게 합산해가지고 두시간 안에 다 해주세요.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사례 4)

보수교육의 내용은 교육시간에 따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요기관에 따라 교육 시간은 적게는 2시간 정도에서 8시간 정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교육의 내용 역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사례나 갈등 발생시 문제 해결 위주로 다루기도 하고, 보편적이거나 기초적인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또한 수요기관의 형태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식으로 강사의 판단에 따라 주요하다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거주 시설과 활동 지원사 중개기관 네 그러니까는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성인지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요 네 아까 거주 시설의 경우에는 인권 문제에서 성인권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사례4)

> 강의 안에 항상 젠더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것부터 들어가요. 저는 그게 시민으로서도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장애인 기관에 종사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래서 저한테는 보편적 인권 안에 젠더의 개념을 장착을 하시는 게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넣습니다. 그러면 사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죠. 왜냐하면 이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시거든요.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별과 젠더에 그렇게 많이 엄밀하게 딱 나눠지지 않는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워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편적 인권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종사자분들을 만날 때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내부에서도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조건과 정책과 그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차리게 하셔야 되잖아요. (사례7)

나. 종사자 교육 인지 및 성인지 감수성 부족

1) 종사자 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지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에 대해 제도에서 요구하는 종사자의 의무사항을 넘어, 특히 돌봄 노동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삶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특성상 주관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종사자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점검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용자나 활동지원사나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착된 습성이나 생각들은 시 바꾸지를 않아요. 쉽게 이렇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원사 선생님들이 어떤 연령대가 이미 40대 중반을 다 넘기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는 이미 본인들의 생각이 확고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 분들도 이미 장애를 안고 이만큼 살아오시니까 본인들의 생각도 엄청나게 고착화되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나 중개기관 이런 데서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래야…….(사례26)

>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하다보면 활동지원사 본인도 조금 나태해지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다보면 봉사니 뭐니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인도 좀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약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저는 교육, 보수교육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들으면 리프레시 되가지고 좋더라고요.(사례29)

> 저희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전문성을 갖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교육 받지 않으면 현장에서 자꾸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이용자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냥 극히 주관적인 지원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꾸 이런 교육 그걸 통해서 자꾸 내가 감지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돼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하는 것 같아요.(사례30)

한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종사자의 교육에 있어 성인지 교육이 그 동안 전문 영역으로서 피교육자인 종사자에게 기회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면서, 다만 의무교육이 많은 상황에서 성인지 교육을 어떻게 위치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직장성희롱 예방교육이 있고 (거주시설 의무교육인) 이용자 성교육 이거는 그냥 경찰서나 이런데서 와서 성교육 해 줄 수 있는 거지, 당사자가, 지원자가 어떤 그런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에 대한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들이 워낙 많으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사례30)

2) 이용자 수요 및 종사자 역할을 고려한 교육 필요성 인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중 활동지원사의 경우 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그 역할이 복합성을 갖고 있고 또한 그 역할의 범위도 모호하다고 하였다. 이에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인 요구 속에서 모호해진 역할의 경계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12)]

12) 활동지원사가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몸'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는 몸이 요구

>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하지만 어디까지가 활동지원사의 역할이냐 영역이나 이러면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사례29)

> 약간 지원사로서의 업무와 지원사로서의 업무가 아닌 경계에 놓인 지원욕구가 있잖아요. (중략) 집안일이라든지 하면서 아니면 신변 처리를 도와 드리면서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정서적 욕구가 해결이 되냐 해소가 되냐 이런 부분들이 도 중요한 것 같고요.(사례27)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부족한데, 이것 역시 종사자의 업무 모호성을 겪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복합적인 돌봄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 종사자의 역할의 복합성 등 특성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이 전문성을 띤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어디 무슨 자격증을 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40시간 (이수)하고 하는 거다. (중략) (병원에서 진료 중에 뇌병변 장애인 당사가자) 본인이 저한테 설명을 했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대요. 제가 말을 전하는 데도 그래서 당신은 보호자예요? 물으면 아니요. 전 활동지원사인데요. 이러면 은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은행에서도 그렇고.(생략) 저는 활동지원사라서 본인이 이렇게 수락을 해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다 해도 병원에서는 그냥 법적으로 안 된다 이건 본인이 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진짜 답답한 거죠.(사례29)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활동지원사 양성 표준교육안에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이 장애와 인권의 한 부분으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 내용 자체의 적절함보다는 종사자의 특성에 맞게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풀어쓰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 일단은 이제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3~40대도 아니고 60대에서 70대라고 한다라면은 너무 일단 말의 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이거 받아놓고 읽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중략) 당연히 이제 성폭력이나 성폭력이라는 피해 사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혹은 이런 것들은 성폭력이다라고 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동일한 어떤 성적인 욕망 성적 주체다라는 걸 훨씬 더 강조를 하고 그 뒷부분이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에 대해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을 활동지원사의 사례에서 녹이거나 따로 분리를 해서 어떤 성역할이라든가 성별 분업이라든가 여성성이라든가 남성성 이런 것들을 좀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편견에 대해서 조금 그런 평을 갖지 않고 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따로 하나 챕터를 조금 더 열어서 제시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이 성인지 감수성 안에 그냥 어떻게 녹일지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례10)

하는 복합적인 요구를 총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반면 장애유형,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용자의 조건과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수준이 노동을 상이한 장소에서 수행하기도 한다. (의존에서 자립으로: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노동과 돌봄에 관한 연구, 김지영, 2021)

일반적으로 그냥 장애인을 그냥 통칭해가지고 생활 조건들을 이제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많고 지금 이제 서술돼 있는 것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활동 지원사분들이 모두 다 다 이렇게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들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교재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라든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 지원사들이 가져야 될 어떤 사회인지 감수성을 본인들의 어떤 활동 영역에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남성 장애인하고 비교해서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열악한 처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 구체적인 사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사실은 활동 지원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편견을 조금 더 덜 가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8)

3) 종사자의 장애감수성 부족

인터뷰에 참여한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종사자의 장애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수동적인 서비스 대상자에서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자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적인 인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장애인서비스 종사자, 특히 활동지원사는 연령대가 높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장애인 이용자를 도움이 필요한 존재, 선의로 봉사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여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신규 종사자) 선생님들이 오실 때도 이제 장애인이라는 호칭을 안 쓰시고 장애우 장애자 이런 호칭을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왜 장애인으로 불러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근데 이 왜 장애인으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장애는 차별적인 발언이니까 장애인이라고 부르셔야 돼요'라고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이것도 이제 사실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역사적으로 어릴 때부터 장애우라고 배워왔거나 장애자라고 배워오신 분들이니까. (중략)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수급자라고 부르거든요. 공식적인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사실 장애인 이용자를 수동적인 위치에 놓는 것이 아니라 좀 이 현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볼 것인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16)

장애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많이 변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조건으로 해석하고 있고 돌봄의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변화하니까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지 활동지원사분들도 그분들을 대할 때 이제 편견 없이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8)

이제 돌봄 종사자들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혜가 있는데 이걸 강요하기가 딱 쉬운 나이라고 생각해요. (중략)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고 내 판단 내 기준을 당사자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 것들도 잘 면밀하게 본다면 세밀하게 본다면 이것도 다 인권 침해 아닌가 교육의 필요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2)

> 발달장애 양육자분들이나 보호자 종사자분들은 발달장애인들을 사실은 말로는 아니지만 무성적인 존재로 대하시거든요.(중략) 저는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보호와 관리의 대상이지 일단은 비장애인 비슷하게 성적인 존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그런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걸 처리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례7)

이외에도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이용자를 미숙한 존재, 또는 성적인 욕구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성적 존재로 인식하여, 이용자의 신체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하여 현장 전문가들은 대체로 장애감수성 부족이 원인이며 그 때문에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도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용자를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드러나는데,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인지하고 호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어리거나 낮은 지위의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을 쓰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 이용자를 대할 때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존중하지 않은 호칭으로 부르거나 아이처럼 취급한다면은 주변에서 장애인을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은 또 역시 이 사람을 선생님이 대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공적인 관계 선생님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존중하는 호칭과 얘기들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잘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 그러니까 장애인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장애인의 몸을 장애인이 권리가 있는 존재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권리인지도 (종사자) 선생님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례16)

> 활동지원사분들께서 뭐라고 하죠. 자기 결정을 활동 지원 상으로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이분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약간 저희가 이제 지금은 활동지원사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다 보니 이용자는 활동지원사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상하관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사례19)

> 저는 장애를 대하는 이중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식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들 바꾸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대면을 했을 때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체 장애인 이용자분들은 활동지원사를 부를 때 누구 씨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사가 예를 들어서 탈 시설 하신 분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러 가도 이제 활동지원사가 결정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게 이제 유아화하거나 대상화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그니까 대면했을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좀 안

그러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다들 뭔가 발달장애인한테 조금 함부로 대하는 태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1)

호칭도 성인인 경우에 이름과 이 씨로 부르는 게 맞겠죠. 누구누구 씨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친구 친구 누구 우리 아이 누구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장애 유형으로 명명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자폐지, 이렇게 명명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례15)

무성이지, 신체 장애가 있는데 어떤 성적인 기능을 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서비스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무래도 만약에 남성 이용자에게 여성 활동지원사가 배치가 됐었다 하면 이게 샤워라든지 이런 지원을 할 때도 (이용자가) 약간 그런 고충을 많이 호소하세요.
이용자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가슴 이런 걸 막 시켜 주시다가 여성분한테 너 이렇게 가슴이 이뻐 봤자 어디다 쓸래,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든가 그분들한테도 중요 부위를 툭툭 치면서 장난을 한다라든가. (사례12)

또한 현장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수성 부족의 원인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장애인 이용자의 보호자 역할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활동지원사의 경우, 지원사의 역할은 장애인 이용자가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용자를 보호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이용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이용자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나 통제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한다.

저희 주거 서비스에 보면 종사자와 당사자분 두 분이 대부분 사시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한 달 지나면 집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항상 모든 집이 다 비슷해요. 집주인은 당사자분인데 그런 권리관계가 항상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저희가 보호가 아니고 지원이다. 그리고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조력이고 어떻게 내가 선택과 결정을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할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또 선택은 내가 하고 있고 그럼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반복하는 게 이제 조력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이제 보호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례15)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활동지원사가 양육에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부모인 경우에 이제 활동지원사가 사실 엄마보다 더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신체적인 기능적인 돌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양육에서 장애 여성이 배제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도 해요. (사례16)

사실 활동지원사의 업무는 교육이나 훈련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장애인 당사자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사회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려줘야만 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원하는

>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위협도 할 수도 있고요 야단치고요 이러는 과정에서 정서적인 학대가 들어가요. 때로는 그런데 선생님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조금 무지하신 어떤 그냥 생각을 한다면 '내 자식 같으면 반 죽였어'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교육의 필요성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얼마나 이게 지금 위험한 일인지를 모르신다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사례2)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들어있는 지원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용자의 신체에 관련한 서비스는 이용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종사자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이 생길 수 있고 이용자의 신체에 대한 자율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한다.

> 지원하시는 선생님들 활동지원사 선생님들께서도 사실은 이제 특히나 발달장애 아이를 이제 케어하시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마구 내리신다거나(중략) 장애인이라고 해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약속을 했고 지원을 목욕 지원까지 오케이라고 했지만 그날따라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매번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매번 물어봐주면 좋겠다. (사례9)

> 예를 들면 이제 휠체어를 타는 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무튼 어떤 분이 참여하시든 저희 프로그램 편의시설이나 이런 사전 점검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2층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없는 2층에 있는 프로그램실을 섭외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장애 여성이 참여하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냥 안고 올라가면 된다는 걸 좀 당연하게 생각해요. 뭔가 베푼다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제 경향들이 있거든요. (사례15)

4)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인터뷰에 참여한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교육을 받았거나 이를 인식할 기회가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보면, 종사자의 연령대는 대체로 40~50대 여성이 많은데, 이 세대는 성인지 관련 교육이나 감수성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경험해볼 기회가 적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부재를 가져올 수 있다.

> 젠더 감수성은 제가 개념 자체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페미니즘이 이슈화되기 시작하면서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을 저희 또래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합니다. (중략) 2015년에 근무했던 기관이나 지금 근무하는 기관에서나 젠더 감수성에 관련된 교육을 한 번도 받았던 적이 없고(사례27)

> 지금 활동지원사를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40대 평균나이로 40대 후반

> 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잘 안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교육 받은 적도 없고, 서로 이야기하기조차 잘 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사례26)

> (거주시설 직원이)당사자 분한테 아마 물어 봤었나 봐요. 나중에 누구누구랑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안 돼, 걔는 남자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이 바로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연령이 대부분 지원자들이 50대에서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인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계시고,(사례30)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은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어 성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통제적인 방식의 지원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의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서도 동일하게 지적한 것이다.

> 종사자 분들도 과연 이분들이 비장애인처럼 부부생활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어? 라는 거를 먼저 베이스를 깔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교육 자체를 종사자 분들이 받아왔던 연령대가 아니다보니 그런 성교육에 대한 개방적인 부분들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선 차단, 경계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중략) 지원자들 마음속에는 이분들에 대한 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닫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사례30)[1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운영기관 관계자들은 대체로 서비스 종사자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 이들이 거친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었던 시대의 문화나 교육을 받았기에,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활동지원사의 경우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스스로 한정 짓는 사례가 있다. 또한, 모든 서비스 종사자는 이용자와 밀접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을 이용자에게 강요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이용자를 대하는 태도나 행동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대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사회적인 성 역할이 매칭하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 남성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가사 일은 죽어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사례14)

---

13) 이성과의 사귐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인정하면서도 이성교제의 보다 발전적인 형태 즉, 발달장애인의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강한 염려를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6쪽, 발달장애인이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2014, 최복천, 김유리)

> 활동지원사님들 연령대가 다 이렇게 거의 50대 6대이시다 보니까 이게 성 역할에 대한 이런 고정관념들이 또 남성 활동지원사는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좀 더 중요한 일을 해야되는 사람이고 여성 활동지원사님은 또 가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된다 이런 약간 고정된 또 역할에 대한 이런 관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중략) 남성 활동지원사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정보 제공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고 뭔가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일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여성 지원사님은 가사 활동을 아주 능숙하게 해야 된다 음식도 맛있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고정 관념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례12)

> 성적 결정권도 아무튼 자신의 관점을 계속 강요하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라고부터 시작해서 '여성은 꾸며야 된다 그리고 연애조차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례15)

> 아직까지도 남성에 대한 자위 행위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드러나 있지만 여성의 자위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립생활 주택에서 이용자분이 남자이고 코디네이터나 활동지원사가 여성일 때 실제로 그렇게 스스로 욕구를 풀고 나서 정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어떻게든 알려줄 수 있지만 여성(이용자)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접근하는 것 같아요. (사례13)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식이 맞물려서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가정 내에서 가사 역할 분담이나 자녀 출산과 양육의 문제를 여성의 역할로 받아들이고 있는 종사자가 여성장애인에게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는 일도 발생한다.

> 장애인이 먼저 원하는 것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인격적인 어떤 독립된 자아로서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건데 이거를 활동지원사인 내가 먼저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젠더랑 장애랑 다 걸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혹은 남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미리 생각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내려놓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례10)

> 지원사님들이 좀 쉽게 하시는 거는 또 이렇게 장애가 있으면서 결혼을 하면 힘들다 이런 생각. 또 이렇게 약간 여성이 출산하고 육아하고 가사 활동을 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좀 있으시잖아요.
> 그러다 보니까 네가 어떻게 그런 걸 할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넌 생리가 없는 거를 복으로 알아라 이런게. 이용자분은 (생리가) 없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걸 고민을 하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2, 30 대 이렇게 연령이 되면 막 그러는데 너는 생리가 없는 걸 복으로 알아라 너가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없으면서.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키우고 가사 활동을 잘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결혼이다. (사례12)

다. 성인지 교육 강사 인력풀 및 필요성 인식 부족

1) 장애·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 강사 인력 및 관리 부족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양성·보수교육을 위한 강사 섭외에 있어, 장애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모두 갖고 강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실제 장애 감수성을 갖고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 등 성인지 관점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반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더라도 장애감수성을 비롯한 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강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 모두를 모두 갖고 있는 강사진을 발굴하고 인력풀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성교육 전문 강사라고 해서 여성단체에서 성교육하는 분들 모셔서 하다보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도 다소 좀 떨어지시고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교구라든지 이런 준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교구들이 많다.(사례30)

> 특히 발달장애인분들한테 맞춰서 교육할 만한 콘텐츠, 교안 이런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강사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어서 그런 강사 풀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사례 30)

2) 장애인시설 및 교육운영관리 기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성 인지 부족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하다고 인지하지만, 본인이 소속된 장애인 시설이나 교육운영관리기관에서 장애인 감수성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종사자의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 젠더 감수성이나 장애감수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종사하는 저희들도 하지만 기관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지하고 저희 종사자들한테 끊임없는 교육이라든지 푸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사실 그런 거는 전무하거든요.(사례26)

4. 성인지 교육정책 수요

가. 성인지 교육 독립 운영 및 커리큘럼 구성시 고려사항

1) 성인지 감수성 교육 독립 커리큘럼으로 운영

인터뷰에 참여한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인식과 함께 교육 개선 방향으로 현재 성인지 감수성이 인권교육에서 포섭된 방식이 아닌 별도의 독립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차라리 종사자의 인권 교육 안에 성인지 교육 몇 시간에 법정 교육이라고 들어간다면 아마 강사 분들도 조금 더 많아질 것 같고요 발달장애인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당사자를 위한 교구도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사례30)

> 여성의 경우는 내가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생략) 인식이 부족했을 때, 혹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다, 지원자로서 그래야 이제 전반적인 내가 어떤 이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성, 신체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듣거나 보거나 혹은 알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28)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역시 성인지 감수성이 지금 장애와 인권의 한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별도로 구성해야만 온전히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 교육운영 40시간 안에서 성인지를 다루면 스쳐 지나갈 것이다. 보수교육에 뇌성마비, 뇌병변 교육을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발달장애이든 신체장애이든 활동지원사 등 종사자에게 의무화하도록 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커리큘럼 내에서)독립적으로 두어서 하면 좋겠다. 다른 과목에 같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있으면 충실이 이해되고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다. (사례1)

> 장애와 인권도 필요하고, 여기에 포함된 성인지 감수성은 별도로 해야 한다. 성인지 관점이 있어야 한다. 장애와 인권에 있으면 묻힐 수 있다. 실제 지체장애인 신변 처리를 활동지원사가 도움을 주게 되는데, 오랜 시간 같이 있다보면 조심성, 감수성이 떨어지게 된다. 옷을 갈아 주면서, 성기를 만지면서 어떻더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한다. (사례19).

2) 성인지 감수성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방향 및 운영 시간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종사자 교육에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독립 운영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이론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 사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우선은 성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현장과 잘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현장에서 성인지와 관련하여 종종 편견을 갖기 쉬운 것 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성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되, 무성적 존재가 아님을 명확히 교육을 통해 전달되어, 종사자가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종사자가 기존의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예시 등으로 잘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종사자로서의 피해도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성인지 측면에서 교육하는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제가 보기에는 제목은 성인지 감수성 및 성폭력 예방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든 아니든 성에 대한 인지 부분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의 성에 대한 무성체가 아니라 장인도 성적 존재라는 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종사자로서 현장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독립된 필수 과목으로 따로 좀 배정이 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 안전 교육 있잖아요.
> 심폐소생이나 이거는 모든 종사자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략) 세 가지 부분이 있죠. 기본적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자기 진단에다가 그게 무엇인가라는 부분들 이분에 대한 편견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그러면 장애인의 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라는 거 그래서 비장애인이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고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자유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갈 게 종사자 보호... (사례14)

> 일단 저도 일단 지금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또 이해가 조금 낮은 게 이용자도 경향이 조금 있으시고 저희 기관은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퇴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편견일 수 있는데요. 이용자분들도 성 역할에 대한 이해가 또 되게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자꾸만 성적인 문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 성 역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조금 무게감을 가지고 하고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어떤 성적으로 발달 단계에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이 모든 성적인 문제가 다 이게 범죄고 그러지는 그런 단계별로 이렇게 뭔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지원자님들도 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2)

> 독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고 내용 또 기본 개념이랑 그다음에 대처 방법 그다음에 실제 사례들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자위 행위에 대한 그런 지적 그다음에 또 어떤 성 문제나 그런 자위 행위가 발생했을 때 종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런 보호 장치 정도 마련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랑 그다음에 또 꼭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

> 접촉이 눈에 보이는 거지만 언어적인 그런 것들도 좀 드러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저는 약간 그 앞에 차별금지법 되게 중요 인권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례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지 관점을 만약에 따로 독립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 부분 또 너무 이론적인 부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사례13)

한 장애부모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시, 남성 이용자와 여성 종사자와 관련된 섹슈얼리티, 성인권 등에 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동성 종사자가 좋은데, 활동지원사는 절대다수가 여성이므로, 이성 종사자가 지원해야 할 때, 일상생활에서는 목욕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신체접속을 할 때, 먼저 물어보지 않고 일사천리로 종사자가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사례1)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해서는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들은 최소 2시간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 최소 2시간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네 2시간 확보 최소... (사례14)

아울러 표준교재 안에서 종사자의 장애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현장 전문가에게 확인하였다. 가장 먼저 나온 의견은 동기부여에 대한 의견이었다. 수많은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면서 보수교육이나 의무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종사자가 교육의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더라도 교육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에게 먼저 교육을 통해 어떠한 부분에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사자가 장애인 이용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는 역할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과정이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 활동지원 종사자 선생님 종사자분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아요. 법정 의무 교육을 수도 없이 받아야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근로자도 근로자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수도 없이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학대 신고자 의무 교육이 2021년도에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권 교육이 보다 더 이제 심화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너무나 많은 교육들이 있다. 보니 이거 하나를 충실하게 받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냥 또 교육이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례2)

> 무슨 내용을 하더라도 듣는 종사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사자의 의식을 움직이는 세 가지 요인이 첫 번째는 선생님 앞에 말씀하신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이 교육을 받는가에 대한 동기 부여 그러니까 법정 시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교육을 들음으로 해서 너희가 뭘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는지 이 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상자들에게 어떤 걸 전해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역량을 높일지에 대한 동기 부여가 두 번째는 돼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육을 들으면 교육 시간에 대한 그 시간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교육 시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사례6)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한다고 해가지고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질은 사실은 장애라는 것 자체가 질병은 아닌데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를 다르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정상성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니까 장애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변인으로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돌봄 생활지원사 생활 지원 활동지원사분들의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례8)

또한 이용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도 교육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종사자를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종사자가 베푸는 입장이 되고 이용자가 수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종사자에게 자신의 권리나 욕구, 또는 종사자에 대한 불만을 말하지 못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용자와 종사자가 동등한 관계를 맺는 것의 중요성을 교육을 통해 알려주고,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하여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은)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과의 관계성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권력관계를 봤을 때 활동지원사가 우위에 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관계가 평등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가 이런 얘기로 접근이 돼야 되는 거지 물어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환경들도 있다는 거 여러 맥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면 되지 않은가 그러니까 물어보라는 의미가 정말 그대로 물어보라는 의미가 아니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가 평등하게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그것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례8)

활동지원 현장에 와서도 엄마의 관계 이모의 관계 이렇게 사적인 관계로 관계를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경향들 그리고 그걸 더 익숙해 하는 상황들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공적인 직업이라는 것 그리고 자원 활동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라는 것을 좀 더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사례16)

처음 만났을 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지원사가 약간 이건 매뉴얼 할 수도 있는 너무 딱딱한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떤 식의 내가

>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라는 부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이후에는 좀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례10)

나. 성인지 교육 추진 및 운영 내실화

1) 보수교육 표준교재 개발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하여 표준교육안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성교육 뿐 아니라 보수교육에서도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내용을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하는 것을 강사의 역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표준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교육의 질을 좀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교육의 질이 담보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하신 강사님들 그러니까 강의력이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막 진짜 바쁘시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다가 금액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걸리잖아요 강사를 초빙하거나 모시려면.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아까 이제 얘기가 언뜻 나온 것 같은데 만족도가 좀 낮아지거나 교육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한 거죠. (사례11)

> 저희가 자기 결정 자기 선택 항상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존중되는 서비스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교재에 항상 있는데요. 어떻게라는 부분 하나도 없거든요. 그니까 저희 사업 평가를 할 때도 결정과 선택을 얼마만큼 존중했습니까, 이런 지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 제시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발달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이제 교재나 매뉴얼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앙 정부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고 그래서 보다 이제 추상적인 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사자 중심 서비스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당사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얘기하잖아요. 발달장애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아무튼 이러한 서비스나 모든 것에 최종 종착지는 당사자가 권한을 가지는 것에 있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하고 당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서비스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 모든 내용이 형성이 된다면 아무튼 모순적이고 부딪히는 것도 좀 해소되고요 궁극적으로 당사자분들이 지금 원하는 지향하는 교재의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사례15)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강사 역시도 보수교육는 현재 표준화된 교육안이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교육안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표준안을 사용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표준안의 내용은 현재 양성교육 표준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장애의 유형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변형을

허용하는 형태에서 반드시 교육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감수성 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이 있어 10명이면 그 비장애인들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 또한 특성이다라는 것까지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체장애는 어떻게 저희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중략)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장애는 이렇게 지원해야 돼 하는 부분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사례9)

> 표준안인데 여러 가지를 많이 모든 필요에 따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도 어느 한 면으로는 일리가 있는데 워낙 다양하시거든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같은 표준안이라고 해서 같은 걸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전달 방법조차 완전히 달라지는데요.그리고 전달자인 강사도 필요한 소양이 사실은 많이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 유형에 맞게 최소한의 강의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장애 유형에 맞춰서 최소한의 강사에 대한 지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걸 물론 강사도 교육 의뢰 기관마다 다 맞춤해서 대상 분석도 하고 그러지만 그 표준안에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매뉴얼로 나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저는 그 교육안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파악이 일단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7)

>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성을 좋아하지 표준화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제공 인력들의 품질 관리가 안 된다면 분명히 저는 기본적인 표준화는 이게 있어야 된다 (중략) 어느 정도 기본은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을 좀 제시하는 방향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례1)

> 저는 표준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같이 지금 장애 당사자를 위해서 종사자 교육에 이미 진입해 있고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지만 좀 더 우리 장애 영역에 있어서 종사자분들이 더 장애인을 장애인분들의 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좋게 저변을 확대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게 표준안이 필요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표준안을 근거로 이제 생각하고 수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면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표준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라고 인식하는 부분이 현실과 좀 안 맞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지 않고 장애 특성만을 반영해서 이렇게 표준안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는 다양한 유형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맥락이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욕구들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베이스에다가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환경 그리고 인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가해서 그다음 마지막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장애 특성에 대한 유형별 이런 것들이 나오는 표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례6)

한편,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지원하는 장애인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생애를 아우르고 있으며, 그 역할도 다양하다. 하지만 서비스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성별, 사회적 경험 및 장애·성인지 감수성 등에 의해서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당사자를 위해서 맞추는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활동지원사 인력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죠. 당사자 분이 선생님들의 성비에 맞춰야 되는 꼴이 된거죠.(사례30)

>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과거 장애인 이용자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분들이 많아보니 약간 어머니의 마음 같은.(사례30)

이는 가사업무 경험이 부족한 젊은 남성에 대한 가사 지원 교육, 컴퓨터 업무 경험이 부족한 중년여성에 대한 컴퓨터 교육 등 종사자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것과 같다. 이처럼 종사자가 현장에서 부딪치고 가치관과 경험적 제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 서류 작업을 하신 당사자분들 지원을 나가는데 서류 작업을 할 줄 모르는 지원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학교 다니시는 당사자분들이 계신데 학교에서 수업 필기하고 과제 수행해야 되는데 타자 치실 줄 모르는 지원 사분들, 사실 그 이유가 원인은 4050대 여성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사분이 있으심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혹은 보수교육을 통해서라도 지원사도서 당사자분들의 어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서류 작업들은 기본적으로 함양해야 될 수 있습니다. (생략) 그리고 반대로 젊은 남성장애인 분들은 집안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적잖아요. 그러면 집안일에 대하 보수교육들, 청소하는 법, 집안일 관리하는 법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원할 때는 젊은 남성을 선호하지 않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생략) 보수교육 때든 집안일 혹은 서류작성법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교육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어떤 특정 나이대의 남성이건 이런 부분들은 보수 교육을 받았을 테니까 뽑아도 되겠다.(사례27)

2) 표준교재 내 장애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 감수성 고려

현재 표준교재는 중증장애인에 맞추어져 있어, 경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지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한 장애인 당사자는 경증장애여성이라 하더라도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유로 교차·중복차별을 겪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종사자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지금 표준안은 중증에 맞추어진 내용이 많은데, 인권 파트만 보면 사회적 편견 등을 다루고

> 있는데, 경증과 중증 안에서의 차이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가 중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예로) 경증여성은 외모에 평가를 받는데,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는데 뒤에 사람이 오면 쩔뚝거리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냥 서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자신의 장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싱 현상은 성소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며, 경증여성에게도 있다. 이런 것을 활동지원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례17)

서비스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이용자가 종사자와 현장에서 많이 부딪치게 된다. 특히, 성 이슈와 관련해서는 장애유형에 따라서 관련 문제 행동이 다를 수도 있어 교육과정에서 전달하여 종사자가 이를 숙지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현장에서 이용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잘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 사춘기를 지나면 성 이슈가 생기는데, 활동지원사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냥 발달장애인이라고 생각만 하고, 이를테면 발달장애인이 성기를 노출한 것에 대해서 활동지원사가 경찰에게 말한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는 활동지원사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방임이다. (사례1)

>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을 행할 때,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활동지원사, 종사자의 몸을 만질 경우, 종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발달장애인이 가해자가 되는 과정은 그렇게 하는 잘못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얘기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혼선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가해자가 되곤 한다. 학교 성교육 과정에서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하지 않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청소년기 및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사례1)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계, 경계나 감정에 대한 교육이 없다. 잘못 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인권교육이 강화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종종 방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되면,... 어디까지 활동지원사의 역할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사례1)

다만, 장애유형별 교육을 서비스 행위별로 너무 구체적으로 할 경우, 해당 장애유형에 속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은 무능과 무성적 존재로 대상화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어떤 장애는 어떻게 도와주어야 해 식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히려 특정 장애를 대상화할 수 있다. 장애인을 다루는 관점은 변화해야 한다. 지원의 내용은 그때그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선을 그어서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렵다. 오히려 장애를 대상화할 수 있다. (사례9)

한편, 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당사자의 개별 욕구와 특성을 존중하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 과정에서 종사자가 어떻게 서비스 지원을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다뤄지지 않아 서비스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와 개선에 있어서도 성별 이해와 보호나 안전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특성과 발달단계, 사회적 존재로서 가지는 역할과 욕구 등이 서비스 지원 과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 보완도 필요하다.

> 청소년을 이용자로 맞이하였을 때는 청소년 자체가 저를 아줌마 이런 식으로, 아줌마가 나의 이걸 할 수 있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아줌마가 뭘 알아요, 아줌마는 모르잖아요,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많이 당황을 했고(사례26)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와가지고 성일이 될 때 까지 크는 이용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아니니까 스킨십도 자유롭고 이런 부분인데 어느 순간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한 납득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억지로 하려고 하거나 그게 이제 커서도 그냥 덥석 잡는다든지 도 밖에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외출할 때 보면 아무나 덥석 잡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생략) 이용자들을 위해서 어렸을 때라도 경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금 많이, 여기까지만 돼 그리고 어디까지만 되라는 부분을 많이 가르쳐요. (생략) 아이한테 너무 딱딱하게 하는가. 아니 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봤을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이 그런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사례30)

> 지원사의 지원을 통해서 그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격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는가 (생략)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분도(장애인분도) 거기에 소속돼서 사시면서 어떠한 남성으로서의 기대치를 부여받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과 여성장애인 분도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받으시는 남성으로서 받으시는 여성으로서 받으시는 혹은 이제 성소수자로서 받으시는 그런 기대치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사례27)

> 성인지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극적인 대처 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인식이 필요하겠다. 신체적 접촉이 다양하게 있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인 성인지의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생략) 문제의 소지만 없는 쪽으로 가다 보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성인으로서 대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지원인력으로서는 그런 것 좀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례28)

3) 종사자·이용자·보호자 모두 쉽게 이해·활용할 수 있는 표준교재 구성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현재의 표준교재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학술적·전문적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것, 여러 갈등과 성차별의 상황, 장애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로 그동안 잘못 인지되어 행해진 서비스 내용 등을 특별히 현장 사례로 정리를 해서, 이를 교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즉각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문자보다는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및 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도전적 행동에 대해 이 책(활동지원사 표준교재)은 연구자가 작성하다 보니, 듣고 보고 기억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개념과 이론은 중요하지만, 성별과 연령에 맞게 지원해야 하는데,...(책에 보면)성인지 감수성은 이렇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예시/구체적 사례가 들어가면 좋겠다. (사례1)

> 장애인의 호기심은 감추고 통제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보여주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때 그때 (장애인 관련)사회이슈를 가지고 강의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사례9)

> 이 교재에서는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들로 좀 작성된 사례들을 좀 봤는데 이 교재 안에서 사실 이게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 받는 몸의 사생활에 대해서 사실 깊게 고민하지 않아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 이런 것들이 사실 연결돼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도 그게 다시 연결되는 부분인 거죠. 선생님들이 왜 교육이 기억이 안 남는지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중략)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중장년 여성들이 이제 모여 있는 현장인데 이제 교육 자료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술적인 내용으로만 작성돼 있을 때 활동 지원사 선생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럴 때 좀 더 이제 이 현장 특성에 노동 현장을 구성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교육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구성되는 것 그리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로 구성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례16)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부모인 참여자 역시 유사한 지적을 하였다.

> (표준교재)자료는 너무 학문적으로 작성된 것 같다. 내용이 어렵고 현장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좋은 말로 쓰여 있는데,... 엄마들이 어떻게 대놓고 사용할지는 어려울 것 같다. 인권은 추상적이라 대놓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애인의 성을) 개방하고 자율롭게 얘기하기 어렵다. 곪아 터질 때, 사건이 터질 때 상담을 하게 된다. 부모대상 강의를 하게 되면 성인자녀를 둔 부모는 강의가 끝나면 많이 상담을 요청한다. (사례18).

장애인 부모는 여성장애인은 주변인에 의해 배제되고 무능력·무성적 존재로 인지되면서 더욱 여성성, 여성다움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한국사회에서 장애가 있으면 무시되기 싶고, 무능력하다고 말하는데, 결혼할 당시에는 남편 뒷바라지는 어떻게 할꺼냐, 아이는 낳을 수 있냐,... 비장애인에게는 애인있냐, 언제 하냐라고 하지만, 나(장애인)에게는 누가 이렇게 묻지 않는데,...장애인에게는 수퍼우먼이 되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음. 그래서 조선시대 여성처럼 강한 여성이 되려고 한다. 성평등, 성인지 감수성은 양면성이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역할을 찾고 싶어서, 어찌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찾고 싶어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성다움으로 인지시킬 수 있어, 이는 양면성이 있다. (사례 17)

또한 현재의 이용자 교육은 획일화되어 있어 시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이용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의 내용은 동일할 수 있겠으나 교육의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 중심으로 교육의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용자가 다 한 가지 장애 유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과 관련한 교육을 할 때 발달장애인이면 발달장애인 용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 지체장애인으로 표준화해가지고 보통의 교육을 진행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시각장애인도 있거든요. 거기 제 생각엔 이용자가 시각장애인이면 점자나 이런 걸로 안내서를 드려야 될 텐데 아마 안내서 드리는 기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사례4)

> 지체장애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가 비장애인에게 교육하는 패턴이 에서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발달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의 문제지 사실은 다 똑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해야 되는 성인권에 대한 모든 제대로 된 정보는 다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주는 방식이나 대상에 따른 장애 유형에 따른 도구에 대한 것들이 잘 갖추어지는 거 시스템적인 게 잘 갖추어지는 거 이게 필요한 거고. (사례6)

이처럼 교육이 단순히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자 및 이들 부모 등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상자 중심이자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접목 가능하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4) 양성·보수교육 목적을 고려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다양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피교육자인 종사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 필요성을 언급했다. 양성교육에서는 기존의 가치관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짚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보수교육의 경우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연차와 경력에 맞추어 그에 맞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의 어떤 성적인 실천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 속에서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금지주의로 많이 나가시게 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장애인의 입장에서 풀어나간다기보다는 활동지원사 본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입장에서 풀어나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 상호 어떤 소통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강조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사례8)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들의 중심의 어떤 사례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하고요 돌봄 종사자나 돌봄 종사자로 한다면은 두 시간 동안 이론 교육과 사례 교육과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과연 이제 다 배웠는데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딜레마 상황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이 딜레마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땐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심화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례2)

거주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성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커리큘럼이 성 인권 교육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8시간 진행하고 있잖아요. 연 8시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종사자분들이 이번 년에도 근무하고 내년에도 근무하고 후년에도 근무하고 이러면 연도 차이에 따라서 근무 경력에 따라서 수위의 내용 교육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8시간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매번 매 연도마다 교육 갈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교육해야 된다라는 기초 과정만 계속 도돌이표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례4)

코디들한테 이제 교육을 들으러 가라고 했거든요. 일부러 도대체 어떤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다 활동 지원사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니 담당 코디들한테 교육을 다 받으러 가라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다 왔더니 소장님 교육이 너무 엉망이다. 이 교육 안에 장애인들에 대한 어려움 장애 유형별에 대한 교육 이것 또한 없고 그리고 이제 성인지 감수성 또한이긴 하지만 이렇게 깊숙하게 가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와 닿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례19)

5)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제공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연령, 교육 수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종사자에게 장애와 젠더,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그동안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잘 못 인식한 부분을 교정하여 궁극적으로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코디들에게 활동지원사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관을 하도록 했는데, 교육이 너무 엉망이었다고 했다. 장애유형별 교육도 없고, 성인지 감수성도 얘기는 하지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돕지 못해 나이가 많은 활동지원사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다. 지체, 발달, 뇌병변 등 장애유형별로 기다림이 필요한데, 말을 늦게 하거나 늦게

>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빠르게 하니 그냥 이들의 결정/의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다. 성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측은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사례19)

> 시각장애인은 의심이 많다, 지체장애인은 힘들다 등의 식으로 강사가 교육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것이 선입관을 주는 것 같다. 장애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기회나 공감 자체가 부족하고, 관련 정보가 없다보니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하지 않는 관계도 많고,... 주도적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사례23)

실제 장애인 복지서비스 현장에는 여성 종사자가 많고, 40~50대 연령대가 많다. 이처럼 여성 중심, 특정 연령대 중심의 종사자가 많을 경우 다양한 연령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 저희 같은 경우는 근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과거 장애인 이용자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던 분들이 많아보니 약간 어머니의 마음 같은.(사례30)

> 사실 저희 젊은 세대는 급여 때문에라도 활동지원을 알바 정도로 밖에 생각 안합니다. (중략)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4-50대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느낌이 뭐냐면 (중략) 어머님들이 그냥 은퇴 후에 약간 여가 일로 하시는구나 이런 인식이 너무 컸습니다.(사례27)

6) 현장 중심의 성인지 교육 콘텐츠 지속적 개선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은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기 보다는 종사자가 배운 내용을 체화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사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안의 내용이 이론뿐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끔 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함께 강사들은 교육안의 내용에 사례 몇 가지를 포함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사례집의 형태로 축적하고 공유하여 강사가 강의 환경이나 대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 번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준안도 지금처럼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매년 3년마다 업그레이드 버전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6)

똑같은 교육이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방법만을 찾아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교육에 나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 교육 내용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축적되지 않고 또 휘발되면 또 계속 똑같은 개인 그러니까 개인기로 돌파해야 되는 강사 개인기로 돌파해야 되는 이걸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좀 축적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사례3)

저는 교육을 받는 목적은 기억에 남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아서 하나라도 남아서 실천을 해야 된다 네 그게 1번이라서 가장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자 그리고 쉬운 언어와 그리고 물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인권 모두가 다 존엄한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인권 감수성 교육을 이렇게 녹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례 중심. (중략) 계속해서 이 현장은 사례가 계속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때문에 권익 옹호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이제 사례들 중심으로 그 교재 기본 교재에다가 녹여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부디 현장에서 기억이 나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1번이고요. (사례2)

현장에서 제가 이제 많이 요청드리는 건 그래도 교육 자료를 요즘은 가짜 정보도 많고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 공유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권익옹호라고 하거나 자기 결정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발달장애 이해라 것들은 인구학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해마다 계속 바뀌고 이분들을 위한 활동지원 제도도 계속 뭔가 시스템이 업데이트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 있는 강사분들이 그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좀 있는데 제가 만나본 강사분들은 강사 활동만 하시는 분들은 정보 취합을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조금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간혹 하기는 해요. (사례1)

7) 시설장·코디네이터 교육 강화

먼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관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 만큼이나 실제 업무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이용자를 대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는 노력이 중요한데, 기관장의 인식이 낮다면 이러한 관리 감독이 잘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사자가 성인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성과 관련된 문제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기관장이 가져야만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저는 기관장의 의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종사자 대상의 교육이나 이런 인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이제 내놓고 싶고요 그래야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예를 들면 교육에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기관장님이 잠깐 등장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인권교육이나 그런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본인의

업무에 그 시간에 인권 교육이라는 그거보다 평소에 할당된 아니면 그 시간에 인권 교육에 충실하면 그날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예 계속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린다면 종사자 대상의 그런 성인지 인권 감수성의 개선 방향은 가장 고위직 기관장들의 그런 인식이 가장 중요하고 그분들의 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사례7)

교육받다가 이용자들이나 이용자들의 전화가 오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가기 바쁘고 그다음 지원 나간다고 참여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교육 시간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구현하자면 교육 받을 때 종사자들만 받으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예 중간 리더까지라도 받아야 되고 안 되면 제일 좋은 거는 그 기간의 기관장 중간 리더 그다음에 종사자가 다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앞에 리더들이 굉장히 적극적일 때 교육 효과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사례6)

제가 또 유심히 봤는데 관장은 참여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장이나 되게 핵심적인 관리 하시는 분들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를 해서 바꿔내야 되는 환경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교육한 것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몇몇 되지 않는다.(중략)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는데 그 관리자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강사들이 반복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책임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임자가 교육 안에 없단 말이죠. (사례4)

감수성은 결국은 문화잖아요. 문화를 바꿔야 되면 결국은 대표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의지가 보여야죠 그래야 그 조직의 문화가 바뀌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 말고 네 대표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3)

또한, 종사자의 근속연수가 짧아 반복적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현재 코디네이터의 수가 적고, 관리하는 종사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종사자의 수를 줄여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코디네이터는 이제 뭐랄까요. 사회복지사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이용자와 연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활동지원사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아야 하지만 이용자와 관련한 면접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잘 캐치해서 연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결되었다손 치더라도 중간에 이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에 제일 첫 번째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 코디네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서비스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조력자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례4)

담당 사회복지사가 만나고 있는 돌봄 종사자는 거의 한 50여 명 가까이 돼요.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이용자 50명 그다음에 활동지원사 50명 그 한 사회복지사가 만나서 조율해야 되는 100명인 거예요.(사례2)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기관 종사자들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교육들은 발달장애인 성교육이나 아니면 활동 지원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기관에서는 기껏해야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 차원의 교육 1년에 1시간 정도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워크숍 정도 하는 것 이 정도 가지고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중략) 예를 들어서 둘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을 사실은 체크해야 돼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향성을 잡고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있으려면 코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코디는 그냥 이 둘을 연결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거의 머물고 실제로 들어가서 이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이런 전달 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 코디라고 하는 역할을 이렇게 축소시켜놓고 과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코디 자체도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비스 전달 체계 전체에 대한 문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중략) 코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기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 맺어주는 역할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계의 결절점을 딱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치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 이걸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량이 좀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사례3)

8) 성인지 실천 위한 업무환경 개선

마지막으로,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육의 내용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 현재 종사자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교육 내용을 실천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하고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교육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종사자의 성인지 교육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무 현장이 성인지적 운영과 실천이 함께 이뤄지도록 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야 한다.[14]

14) 성에 대한 인식변화는 종사자와 시설이 함께 변화해야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고 시설 문화는 성인권과 시설 방침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인지적 접근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은 성에 대한 인지로부터 시자거해 이를 대응하는 실천적 행동까지이기에 이 과정을 습득하기 위해 종사자 스스로 자기성찰의 틀을 마련해야 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삶이 긍정적이고 성취감 있는 일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권적 태도로 지원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자신의 성, 삶에 대한 태도, 실천의지 등 자기점검과 종사자 개개인의 성장이 시설문화가 되고 그 문화·정서 속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성적 활동이 이해될 때, 이들 삶이 안녕을 위한 적합한 성인지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성인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이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연구, 한용현 정연수, 2021)

> 지침 전달하고 정말 미안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활동지원사 교육에 나가서 활동지원사가 할 수 있는 성폭력 혹은 반대로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할 수 있는 폭력 이런 예시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목욕 같은 거 시킬 때 얘는 동성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표준 교육 안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그런 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활동지원사 현장 그러니까 재택 지원 현장 안에서는 이런 인권의 지침 같은 것들이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다 무시가 되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다시 역으로 질문이 들어올 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원칙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그 매뉴얼대로 될 수가 없는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고 매뉴얼만 개발되는 게 사실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사례3)

>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필요한 걸 요구할 수 없는 장애인의 특성이나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당사자의 요구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서비스 안에서 준수해야 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사례28)

다. 성인지 전문 교육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1) 성인지 전문교육 강사 양성 및 질 관리

모든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대상의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는 성인지 감수성과 함께 장애감수성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인지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가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지식을 전달하기만 한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지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장애감수성을 갖춘 성인지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 성인지 감수성이 전면으로 나서 그동안 그러니까 기존에 성평등 강사단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가장 우선적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 좀 생각이 바뀐 게 장애감수성이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성인지 감수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다 뭐가 후다 이런 거라 얘기하기는 그런데 제가 워낙 이제 일단 성인지만을 강조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더 역으로 느꼈던 건지도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성교육에 있어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법이거든요. 의사소통 자체가 되지 않는데 교육 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런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해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장애감수성을 갖춘 강사단이 되게 필요하다. (중략) 그리고 또 각 지역마다 성인권 강사들 있는데 이분들 제대로 역량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 그러니까 단순히 강사로 양성돼서 알아서 본인들이 활동하시라가 아니라 이분들이 꾸준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수 교육 정말 잘해줘야 되는 거고. (사례3)

또한, 강사의 전문성이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의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를 수요기관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 성인권을 교육하러 가보면은 작년에 교육했던 그분을 어떻게 섭외를 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주 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만족도가 좋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도가 좋든 아니면은 학습 수위가 어떻든 간에 매년 오는 강사가 어떤 기관에는 정해져 있더라.(중략) (강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참관을 하거나 섭외했던 거기 예를 들면 요즘에는 만족도 조사지를 조금 다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지가 5점 척도로 해갖고 아주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어떤 것이 조금 부족했는지를 따로 시간을 내서 피드백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받을 수 없어요. (사례4)

> 강사 양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저희 강의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담당자분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좀 했는데 이분이 이제 장애감수성 부분에 약간 위험한 단어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따로 이제 나중에 만족도 조사 끝난 다음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추후 교육 때는 좀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권익 옹호 부분에 저희가 생각할 때의 방향과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개선점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통해서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례11)

2) 종사자 인력 성비 균형

활동지원사는 90% 이상이 여성이며, 연령대도 40~50대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남녀 구성은 비슷하다. 이는 다시 말해서, 남성 이용자의 대다수가 여성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변 처리 등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와 종사자 간에 성이 달라 양쪽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 장애인 당사자도 이 부분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남성 활동지원사 인력 확보를 통한 성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신체장애인은 남녀가 차이가 크지 않지만, 발달장애인은 남성이 80%가 넘는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할 때, 여성을 주로 말하는데, 남성 당사자가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다. 현장에서는 주간활동지원을 보면 남성아동은 더욱 심각하다. 남성아동을 인형 대하듯이 한다. (사례1)

> 남자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여자 종사자가 목욕을 해 주는데, 그게 맞나 싶다. (사례9)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도 이성을 대상으로 지원할 때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종사자와 이용자 간 성별 교차지원 과정에서 장애인의 고충과 이용자의 고충에 대해

해당 서비스 운영기관과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성별을 교차하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제가 남성이면서 남성분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변처리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은 당연히 동성이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이제 사회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저는 동성을 지원하는 게 동성이 매칭이 되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중략) 성에 대한 가치관이 다 다르고, 근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사분이 조금 소극적이거나 소통에 대해 조금 막혀 있는 경우를 좀 봤거든요.(사례27)

> 근무하다 보면 남성 여성의 이용자 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배치될 수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남성 이용자분들이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는다 하는 그러니까 갑자기 노출을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선생님, 젊은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힘든 부분이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사례30)

> 남성 이용자 발달장애인 분들도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정도 인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성 선생님이 목욕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성 분들이 지원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조금 더 들어요. (중략) 그냥 인간으로서의 대한 부분을 본 다라면 좀 그런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성인 분이 조금 해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사례30)

한 종사자는 복지서비스 현장의 성비 불균형과 관련해서 이용자와 종사자 사이에서 동성 지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만약 이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고려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동성이 아닌 이성의 경우에는 접근하는 방식을 사전에 약속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략) 지원하는 중개기관이나 정부나 처음에 이일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교육과정에서 근본적인 부분은 거의 언급이 없는 상태거든요. 장애인 복지에서 이 자체를 조금도 안 다루어 보고 이 현장에 투입되는 거는 저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사례26)

3) 교육 예산 확보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견 중에는 교육 예산 확보에 대한 것도 있었다. 단순히 교육강사 양성을 위한 예산뿐 아니라 표준교재 제작에 필요한 예산등 전반적으로 교육예산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이 성인지 감수성과 이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제고 필요성에 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좀 전반적으로 교육 지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일들 굉장히 많고 하다못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도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선생님 강사분들은 많은데 이게 아카이빙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에 피드백도 개별적으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지지 않고 있고 어떤 성인권교육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현장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갔을 때 성공했던 케이스와 실패했던 케이스가 그냥 서로 모여지고 합해지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저희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저희들끼리라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아카이빙에 좀 예산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사례3)

중개기관에서도 예산을 잡잖아요. 매 연도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강사비가 얼마로 책정됐어요라고 물어보면 꼭 우리는 예산에 이만큼밖에 책정을 안 해서 이만큼 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준이 너무나 들쭉날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의 결을 좀 같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략)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그리고 이거는 그런 면도 있지만 사업을 설계하는 담당자 사업 공모 사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럴 때 그 공모 사업을 담당 페이퍼를 작성하는 담당자의 감수성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좀 체감 온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례4)

5. 소결

본 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비롯하여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 총 30명을 대상으로 14차례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성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 현행 교육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성인지 교육정책 수요를 도출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해서 무능·무성의 대상, 무관심과 배제의 대상, 의사권·선택권이 비존중되는 대상, 보호와 의존의 대상으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교육 강사,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다양하게 일상생활 영역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종사자로부터 제공 받는 과정에서 성차별과 성적 불쾌감 및 성폭력, 비존중과 통제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장애감수성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부재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 본 연구의 Ⅱ장 선행연구 고찰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은 종사자는 성차별과 성에 관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경향이 높아고 하였다.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대해, 종사자와 교육 강사,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짜맞추기식·형식적 및 편견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행 교육에는 종사자의 업무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실제 종사자가 현장에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겪는 여러 문제점을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현행 교육의 문제점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복지부가 개발한 양성교육 표준교재안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데 활용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지원사 표준교재의 경우 장애왕 인권 교육에 성인지 감수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개념이나 내용이 이론적이고 학술적, 전문적인 용어로 기술되어 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보수교육에 대해서는 표준교재가 아직은 없고, 무엇보다 장애인 시설 등 현장의 수요에 따라 보수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은 달라지므로 충분히 교육이 표준화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현행 교육이 지난 문제점이다. 그렇지만, 종사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실제 이들이 서비스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의 부족·부재로 인해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성차별 및 성인권 침해를 하고 있음을 일부는 인지하고 있었고, 예전의 수동적 이용자에서 주도적 이용자로 장애인 서비스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종사자와 교육 강사 및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는 이용자의 수요와 종사자의 역할을 고려한 교육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장애 영여겡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비롯하여 교육 강사는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풀을 구축히야 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필요함을 장애인 시설 장과 종사자 및 교육운영관리기관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서비스 현장에서 성인지 교육이 운영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성인지 교육정책에 대해서 크게 성인지 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함에 있어서 성별고정관념 등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단순 개념뿐만 아니라 서비스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한 표준교재안이 개발될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안하였다. 이때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특성, 그리고 종사자의 업무 특성과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함도 전제하였다. 이와 함께 이용자·보호자 및 종사자 모두가 표준교재안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성인지 교육 추진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그리고 종사자는 성인지 교육을 통해 이해하고 익힌 부분이 서비스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하는 노동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무리 교육 내용을 이해하더라도 현장에서 성차별과 성불평등 없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업무의 조건과 범위 및 노동환경에 제약이 있다면, 교육의 내용은 이론과 사고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인터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은 앞서 현행 교육의 문제로 지적했던 성인지 전문 교육강사의 양성과 인력풀 구축에 대해서 정책수요를 명확히 제안하였다. 좋은 교육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부터 이들의 질 관리를 통해 서비스의 성평등과 인권증진에 기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터뷰 참여자는 종사자 인력을 구성할 때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함도 지적하였다.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40-50대 여성이 집중화되어 있는데, 서비스가 장애인 개인별 돌봄 영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성비 불균형은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이나 성희롱·성폭력, 나아가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성인지 교육을 통해 종사자 개인별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노동환경의 개선이 성인지적 서비스를 실천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종사자 인력의 성비 균형에 대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성인지 교육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반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

V

결론 및 정책과제

1. 결론 95
2. 정책과제 96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종사자의 교육(양성·보수)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의 정의와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이 장애 영역에서 왜 중요한지, 실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현장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종사자가 직면하는 성인지 감수성 부족·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이슈를 살펴보았고, 장애 영역에서 특히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및 장애감수성의 함양이 긍정적 효과성이 있음을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어서 종사자 교육현황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활동지원사 교육, 장애아돌보미 교육, 기관 소속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제공인력 교육, 발달장애인 주양육자 교육에 대해서 그 구성과 특징을 살펴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테면, 활동지원사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 내용이 최근 추가 되었지만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교차성을 다루는 교육내용이 부족한 점, 장애아돌보미 교육에는 장애아동에 대한 편향된 성 가치관이 심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나 돌봄 현장에서 성 중립적 언어표현 교육이 부족한 점 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 성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수요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비롯하여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에 근거한다. 주된 결과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는 독립된 성인지 교육의 진행, 사례 중심의 맞춤형·참여형 교육 진행, 종사자의 경험적 한계를 해결 할 수 있는 보수교육 필요, 장애인 개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인지 교육 필요, 전문 강사진의 확대와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개발 필요, 성별 교차지원, 사적영역 지원 등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업무안내와 모니터링 필요, 성인지 감수성 정착을 위해 장애인 제도적 보완 필요 등이 도출되었다.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를 통해서는 표준교육안의 필요성, 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 교육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선 작업, 교육자 양성과 관리, 시설장·코디네이터 교육 중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마지막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로부터는 독립된 성인지 교육의 진행, 사례 중심의 맞춤형·참여형 교육 진행, 종사자의 경험적 한계를 해결 할 수 있는 보수교육 필요, 장애인 개별 특성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성인지 교육 필요, 전문 강사진의 확대와 역량강화, 교육컨텐츠 개발 필요, 성별 교차지원, 사적영역 지원 등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업무안내와 모니터링

필요, 성인지 감수성 정착을 위해 장애인 제도적 보완 필요, 성인지 감수성 정착을 위한 운영기관의 역할 중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다음의 정책과제(안)를 제안한다.

2. 정책과제

가. 성인지 교육 측면

1) 성인지 교육의 의무화와 독립된 교육 커리큘럼 운영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비롯하여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 관계자,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 모두 장애 영역에서의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인지 교육은 장애인 복지종사자 중에서도 현재 활동지원사와 장애아돌보미 교육에만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활동지원사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발달장애인의 성인식, 장애인의 성에 대한 권리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 세부 항목에서도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교차성은 다루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의 활동지원개론(8시간)의 '장애와 인권(2시간)' 교육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성폭력 예방과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 학대와 함께 포함되어 있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적 한계도 있다. 장애아돌보미 교육에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단순히 성차별, 성 역할 고정관념, 성인지, 이중 차별 등에 대한 단순 용어 설명만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과 설명만으로는 장애 영역에서의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함양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FGI에 참여한 모든 유형의 대상자 대다수가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독립된 커리큘럼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래야 온전히 장애 영역에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차별과 성인권에서의 성 역할과 고정관념 및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을 개선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시간 확보 및 프로그램 구성 방향

장애 영역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독립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배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 FGI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종사자 교육 강사와 장애부모, 교육운영관리 관계자의 의견에서도 있듯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의 장애와 인권 내용에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있는데, 이는 성폭력 예방과 장애인 인권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 학대 교육과 함께 구성되어 있으며, 단 2시간만

배정되어 있다. 이런 교육의 구성과 시간 배정은 장애 영역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우선 성인지 감수성만을 위한 교육 시간이 최소 2시간 이상 보장되어야 한다.

독립된 시간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역에서의 성 역할과 성별 고정관념, 성 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와의 관계와 서비스 과정(장애유형과 생활영역, 문제행동 등)에서 종사자의 일반적인 사고와 인식 및 태도·행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성 역할/고정관념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교육, 나아가 이것이 궁극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장애인)에게 성차별 및 성인권 침해와 연관될 수 있다는 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현장 종사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빈번하게 행하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존중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사회적 역할, 발달단계 등에서 성인지 관점이 어떻게 종사자의 서비스 지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의 성인지 관점과 관련 감수성 함량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어떠한 성차별과 성인권 침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자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

앞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해 성인지 교육이 독립된 교육 커리큘럼으로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내용의 구성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성인지 감수성은 단지 해당 과목이나 현재 이를 포함하고 있는 장애와 인권교육 커리큘럼(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만 다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장애 영역에서의 비차별과 성평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는 보수교육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교육 커리큘럼에서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포함되어야 가능한 부분이다. 추후 양성·교수교육 개정 시에는 교육 전반에서 성인지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에 대한 성인지 교육 필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함께 성인지 관점과 감수성이 부족·부재하여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욕구와 서비스 수요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로 인해 성차별과 성인권에 침해를 가할 수 있듯이, 반대로 이용자인 장애인 및 장애부모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성차별과 성인권 침해를 받기도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중심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게 성차별과 성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도 검토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양성·보수 교육 측면

1)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확보 및 역량 강화

장애인 서비스 현장에서 종사자가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애 영역에서의 양질의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FGI를 통해 확인한 결과, 종사자와 교육 강사, 그리고 교육운영관리 관계자는 종사자의 교육에 있어 장애 영역과 성인지 영역을 모두 잘 이해하는 전문 강사를 찾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는 종사자의 장애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부재는 서비스 현장에서 이용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권침해의 요인이 되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 강사풀은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장애 영역에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는 강사들, 혹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성인권 및 성교육을 했던 경험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이 완전한 성인지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장애 영역에서 성인지 교육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강사풀을 확인하고, 전문 강사진의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이용자의 성별과 장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참여형 교육으로 현장에서의 실효성 강화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는 종사자의 양성·보수 교육이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효성이 낮음도 지적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교육 내용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현장에서 종사자가 경험하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의 사례는 이용자의 성별과 다양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종사자가 실제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교육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3) 종사자의 성인지 관점 및 감수성 부족·부재로 인한 서비스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보수교육 필요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지원하는 장애인은 이들의 성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등 다양한 생애과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에 대한 종사자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편견, 그리고 사회적 인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불편감이나 고통을 주는 경우로 발전하곤 한다. 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경험적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이 보수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현장에서 성인지 관점과 감수성 부족·부재, 장애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도 있는 만큼, 보수교육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경험하는 관련 문제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4)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보수교육 의무화와 심화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교육내용 포함

장애인복지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은 의무가 아니다. 특히 활동지원사와 장애아돌보미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8시간의 보수교육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의 형식적으로 최근 장애인복지 현장의 지침 내용이 전부이다. 현재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게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활동지원사와 주간활동제공인력, 장애아돌봄미 등의 역할도 현장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보수교육은 제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향후 장애인복지현장의 보수교육은 활동지원기관, 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닌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위한 공통과목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택과목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최근 발달장애인 등의 장애유형별 전문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있으나 교육 컨텐츠에서 성인지 관점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5) 현장 중심의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표준교재 마련

FGI 결과, 다양한 현장 종사자들은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교재와 같이 현재 개발되어 배포된 교육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강사 역시 동일하다. 표준교재를 인지하고 있는 강사의 경우는 실제 활용하지 않거나, 교육 의뢰기관의

내용에 충실히 하다 보면 활용할 내용이 표준교재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현장 종사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성인지 및 장애감수성 교육 컨텐츠가 개발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가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성교육 및 성인권 표준교육안이 우선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때 표준안의 내용은 현재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안과 같은 형태가 아닌, 장애의 유형이나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변형을 허용하는 형태로 하고, 전체 컨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내용 전반에서 성인지 및 장애감수성을 반드시 포함한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6) 현행 표준교재에 성인지 관점 교육내용 수정 및 보완[15)]

2022년 활동지원사 양성교육에서는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는 활동지원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를 중시해야하며, 활동지원사에게 인권감수성과 장애감수성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로 장애인을 대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인권감수성 및 장애감수성과 마찬가지로 활동지원사에게 중요한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1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Ⅲ. 장애와 인권〉은 소주제가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장이다. 그런데,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차별적 내용을 차별로 명시하여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 이에 교육내용 중 수정·보완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과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활동지원사 양성 표준교재에 대한 수정보완을 제안하지만, 이미 개발된 다른 유형의 종사자 대상 표준교재에 대한 성인지적 검토와 이에 근거한 보완 및 수정도 시급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표 Ⅴ-1〉 성인지 관점에서 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 수정 방향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51쪽	5. 편견, 차별, 학대 - 사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아동이 통합유치원에 입학하였다. 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장애인 친구”로 소개하였다. 단어나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성이 “장”이고, 이름을 “애인”으로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동을 “애인아!”라고 불렀다. → 장애는 집단화, 대상화, 무성	사례 추가

15) 〈부록 2〉에 활동지원사 표준교재 전반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과 장애감수성 측면에서 수정·보완 내용을 제안함.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화하는 편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름으로 소개해야 한다.	
58~59쪽	1번 문항 또한,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성역할 기대가 폭력 및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심야 귀갓길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여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남성에게 파랑색 이미지, 강함과 감정통제를, 여성에게 분홍색 이미지,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폭력이나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의 신체적인 데이트 폭력을 사랑이라고 범죄를 포장하면 2차 폭력이 되고, 성희롱 당한 여성에게 조심하지 못해서라는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다.	여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문장이 끝나면 이러한 행동이 폭력이고 차별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내용 설명을 좀 더 추가하고, 표현을 명백하게 기술함
59쪽	2번 문항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은 정숙함과 순결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써 충분한 성적 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때문에 여성의 의상과 신체노출은 언제나 성 규범과 요구 사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 또한 외모꾸미기는 여성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이다.	의상은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자기표현 방식으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것과 성관계의 개방성을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과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충분한 성적 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외모꾸미기가 여성의 도덕성 판단의 잣대라는 표현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되는 표현임
59쪽	3번 문항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이혼·사별·비혼부모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그룹홈, 위탁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가족으로 여겨진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1인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추세에서 '정상가족'이란 하나의 이데	가족의 개념은 문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된 사회제도로서 생물학적·제도적 규범에 의해 연결되어 구성원이 함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집단이다.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구성원의 역할도 달라지고 유연해지는 사회에서 비(미)혼모 가정, 이혼 가정이 불완전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은 비정상가족=불완전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부적절한 표현임.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올로기이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59쪽	5번 문항 따라서 성적 농담 등 성적 함의를 담은 말을 할 때는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친한 친구에게 약속 장소에서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듣는 것과 직장 상사에게 직장에서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듣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따라서 몸매를 평가하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몸매를 기준으로 두고 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마른 몸매가 뚱뚱한 몸매보다 좋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적 농담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행동임
60쪽	① 장애와 무성(無性)적 존재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비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점을 나타낸다. 흔히 장애인은 성적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는 무성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때 남성과 여성은 모두 무성적 존재로 취급되지만,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며, 신체적 결함을 유전적 결함으로 연결하여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통념이 존재한다.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편견이 발생할 경우 차별로 연결된다.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잘못 인식할 경우 결혼과 출산 등을 할 수 없다는 편견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	차이점이 아니라 무성적 존재로 오해하여 차별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표현이 무성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통념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61쪽	② 장애와 성적 존재 장애인에 대한 성에 대한 인식은 성적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때도 남성과 여성은 모두 성적 존재로 취급되지만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여성이 성적 존재로 드러나는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이다. 실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장애여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 못한 채,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모습만이 강조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상만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쉽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 때문에	장애유무와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성적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데 장애인의 성은 성별과 장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교차적인 편견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성폭력과 장애가 상호작용하여 성폭력을 당했다고 편견을 만들어낸다. 또한,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 과잉 또는 과소된 성적 욕구를	사람에게 취급 혹은 양상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장애로 인한 손상도 아니고 결함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표현되면서, 장애여성의 성적 취약성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쉽다. 장애남성의 경우 과잉된 성적 욕구를 가진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발달장애남성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호기심에 당황스러워하며,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긴다.	가진 것처럼 오해하여 성적활동에 무시 혹은 억압을 당한다.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편견과 오해가 장애인이 차별 혹은 학대의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04쪽	② 부축하여 걷기 ○ 남성 활동지원사가 여성 이용자를 부축할 때는 이용자의 몸이 흔들리면서 겨드랑이에 끼운 손이 가슴 부위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제시한다면 남성 활동지원사가 여성 이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이외에도 여성 활동지원사가 남성 이용자를 지원하는 경우, 동성의 이용자를 지원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성별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남성 활동지원사가 여성 이용자를 부축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주의해야 하는 내용임. 모든 성별에 따라 제시하거나 성별과 무관하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05쪽	신변처리지원 2) 용변 지원	여성 이용자 월경기간 중 용변 지원의 유의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용변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여성 이용자의 경우 월경기간의 용변 지원에 대한 유의사항이 별도로 필요한데 교재에 누락되어 있음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 체크리스트에서도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다면 평소 발달장애인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혹은 문제행동으로 여길 수 있고, 체크리스트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장애인을 만날 때 감수성이 필요하듯, 장애 유형별로도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 성인지 감수성과 장애감수성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장애와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복합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개념이나 사례에 대한 설명이 없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감수성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체크리스트 설명방식이 무성적인 존재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무성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문구들이 있다. 더불어 굳이 불필요한 내용을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넣거나, 여성장애인에게 지원에 있어 필요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의 실제에서도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아야 함을 설명하면서 짙은 화장도 곧잘 하는 여성이라는 문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음에도 기술하거나, 여성장애인의 생리, 임신, 출산 등의 과정에서 활동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나 설명이 없다. 향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제공 받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표 Ⅴ-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 체크리스트에 대한 추가 설명 제안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62쪽	1번 문항 발달장애인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믿는다. 흔히 발달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발달장애인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충동적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다. 발달장애인은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관계를 통해 경험할 기회도 부족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을 놓친 채 발달장애인이 표현하는 방식을 비장애인 기준에서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발달장애인도 일상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성행동과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 다만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방법이 달라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비장애인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일상 속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과잉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기술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3번 문항	결혼은 성인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는 과정이다. 발달장애인이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다.	삽입
	4번 문항	발달장애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몇 가지 제시되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극소수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유전에 관한 논란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기인한다. 유전여부를 넘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타인의 통제는 발달	삽입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장애인을 성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다.	
	6번 문항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성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모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발달장애인 존재에 기인한 문제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은 일시적인 정보전달 중심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사고와 행동,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화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회적인 교육형태로 명칭이나 성관계에 대한 정보이해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성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체화교육이 다른 학습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변화가 필요하다.

7) 교육교재와 매뉴얼 누구나 쉽게 접근·이해 가능한 내용과 문체로 구성

FGI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을 비롯하여 종사자와 교육 강사와 교육운영관리 관계자에게 복지부의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교재에 대해서 어떤지를 인터뷰 전에 미리 보내어 검토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당일 물어 보았을 때, 모두 너무 학술적이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학술적인 글/표현은 연구자의 의도나 사고가 반영될 수 있지만, 교육교재나 매뉴얼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되 잘 이해하여 교육의 효과 혹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재를 학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하기 쉬어야 한다. 언어와 사고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교재의 내용과 문체는 장애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이 모두 뒷받침되어야 한다.

8)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의 교육교재 집필·검수 과정에 참여 기회 제공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위한 교재 및 매뉴얼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 역시 본인 및 장애자녀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및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도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교재를 처음 접했을 때, 이런 교재가 본인에게도 이용되도록 공개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교육교재의 내용이 너무 학술적인 표현과 내용으로 구성되다 보니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부모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교육교재의 내용과 문체가 장애인을 무능하고 무성적이며, 차별하거나 장애인을 주변화시킬 수 있는 지점도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신체적 손상을 이동 능력이나 보는 능력(시력)이 부족/제한 등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는데, 발달장애인의 지능 혹은 의사소통 능력을 은연중에 부족/제한으로 표현하는 문구가 많다.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의 환경적 장벽은 물리적인 것보다 주변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와 같은 관계적 장벽으로 기회나 경험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주의집중, 기억, 학습 등 인지적 어려움이 있고, 의사소통이나 행동양식이 비장애인과 다른 것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차별적인 표현이다.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교재에서 뇌병변장애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지원 방법이 동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문구로 작성된다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적 위치성에 있어 스스로를 우위에 놓게 되고 그로 인해 역할에 있어서도 자립지원이 아닌 단순 돌봄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종사자 대상의 교육 교재를 개발할 때나, 발간을 위한 검독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그리고 성별 등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교육 운영 측면

1) 코디네이터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FGI 결과 여러 현장 전문가들은 서비스 종사자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종사자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높고 연령층이 대부분 중장년층이며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응답하였다.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공적인 업무로 생각하지 않고 가사노동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는 경우, 활동지원사는 자신의 결혼관이나 자녀 양육관, 성별 가치관 등을 이용자에게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용자에게 드러낼 수 있다. 이미 갖고 있는 남성의 역할이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생각 등을 한 두 차례의 교육을 통해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이들을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사회복지사)가 종사자들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분리하여 개인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활동지원사로서의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한 명의 코디네이터가 수십 명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매칭을 해주거나 고충이 있을 시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버거운 현실이다. 코디네이터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수를 줄이고, 코디네이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서비스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시설장의 책임 및 역량 강화

현장 전문가들은 활동지원 사업 운영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시설장의 책임감과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설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성희롱, 성폭력 등이 용납되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의지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시설장의 성인지 감수성과 본인의 기관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해당 기관의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종사자들이 보수교육을 받을 때에 시설장과 중간 관리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3) 현장 종사자의 성비·연령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현장 종사자, 특히 활동지원사를 관리하고 양성하는 교육운영관리기관 관계자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성비가 불균형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성차별과 성인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때때로 종사자와 이용자의 위치가 가해자와 피해자로 전환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어, 심각한 갈등 구조로 전환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FGI에 참석한 한 장애남성은 자신의 신변처리를 비롯해 일상생활 지원에 있어 남성 활동지원사를 더 편하게 생각하지만, 현장에서는 남성 활동지원사를 찾을 수 없어 현재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FGI에는 남성 활동지원사도 참여를 하였는데, 그 역시 장애남성의 경우 현장에서는 남성 활동지원사와의 소통을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는 이용자의 신체적·심리적 안녕에도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활동지원사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고, 이는 고스란히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젊은 남성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특히 활동지원사 지원율이 낮은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사회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돌봄의 가치를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이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며, 무엇보다 남성 종사자 모집을 위한 전략을 세워서 현재 장애인 돌봄 노동시장의 성별·연령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권오형·권선진·심석순·장선아·남정휘(2009). 장애인복지종사자 교육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근태·정신섭(2021), "활동지원사의 표면화행동과 양심행동이 역할모호성의 매개로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제8권 제1호, 43~66.

김나영(2021).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실현의 측면에서 본 주간활동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한국장애학』. 6(2). 55-71.

김묘경·유선주·전경숙·김유미(2019),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 경험: 혼합연구방법의 적용", 『성인간호학회지』, 제31권 제5호, 507~521.

김수연·김석주(2020), "사회복지종사자 인권교육이 인권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제49권, 57~81.

김순구(2021),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8호, 268~278.

김신애·황정희·고은영(2021), "장기근속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직무유지 경험연구: 근거이론 접근", 『학습장애연구』, 제18권 제3호, 127~160.

김유리·표윤희·서민경·조당윤(2021). “발달장애 성인의 성과 성교육에 대한 장애복지기관 종사자의 경험 및 인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실천』, 제22권 제1호, 51~78.

김지영(2019),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문사회 21』, 제10권 제3호, 307~320.

김지영(2021), "의존을 통한 자립 -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에 관하여", 『문학들』, 제66호, 204~237.

김지영(2022), "젠더 관점에서 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노동과정 : 다면성과 숙련성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61권 제2호, 59~107.

류재구·정신섭(2021),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권감수성과 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자기성취감과 클라이언트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복지경영연구』, 제8권 제1호, 133~154.

박경수·장혜경(2013), "장애인 거주시설 실천가의 인권 딜레마 사례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제22호, 249~272.

변소현·김봉선(2016),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職業再活硏究』, 제26권 제1호, 139~156.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21),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교재』. 보건복지부.

안은영·이혜경(2022), "간호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접촉경험, 인권감수성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제39권 제2호, 205~219.

임해영·김학주(2015). 성인기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대처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9, 149-173.

여성가족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1), 『2020년 성폭력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우정희·유승연(2018), “간호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역할 갈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제22권 제3호, 41~54.

이병화·이미영(2021), "성인 지체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건강증진행위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과 복지』, 제23권 제3호, 87~110.

이준우·김일선장·김정석(2022), "중증 장애여성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56권 제56호, 149~177.

임소연·이진숙(201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여성의 돌봄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 제7권 제2호, 533~559.

임해영·홍영준·전주람(2019), "발달장애인의 성문제 행동에 대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6호, 575~586.

진윤주·신준섭·서동준(2020),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감정노동이 우울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문화산업연구』, 제20권 제2호, 49~62.

진재섭·안효진(2018), "유아교사를 위한 배려지향 장애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유아특수교육연구』, 제18권 제4호, 221~247.

최복천·김유리(2015), “발달장애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인식 및 지원요구에 관한 질적 연구: 부모 및 관련기관 종사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6(3), 69-92.

한용현·정연수(2021), "성인 발달장애인 성행동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연구", 『재활복지』, 제25권 제2호, 107~132.

홍경선·김동익·구수연·안진경(2011). “성인지적 교수전략을 바탕으로 한 수업 성찰과 멘토링 효과”,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14(20), 40-50.

2. 외국문헌

Corner, Lorraine (1999), “Strategies for the Empowerment of Women: Capacity Building for Gender Mainstreaming,” A paper presented at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 to Review Regional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9. Oct. pp.26~29, Bangkok, Thailand.

3. 보도자료 및 인터넷자료

강남구청 홈페이지. “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돌보미 모집 안내”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4070/view.do?mid=ID05_040101 (검색일: 2022.10.2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 홈페이지. https://www.ggnurim.or.kr (검색일: 2022.10.20.)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____). 성인지 감수성이란 무엇인가요? https://www.gseek.kr/file/downloadAttaStudyRoomFile.do?flIdx=122818 (검색일: 2022.10.23.)

국가인권위원회(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장애인권리위원회 일반논평.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17&boardid=7606504 (검색일: 2022.10.27.)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발달장애인지원사업”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67

법률신문(2021.8.17.).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용어 재검토.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2070 (검색일: 2022.10.16.)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 (검색일: 2022.10.16.)

서명선(____). 정책의 성 인지적 이해. https://www.gb.go.kr/synapview/Common/synap/synap_skin/doc.html?fn=FS40870991.hwp&rs=/synapview/synapdata/ (검색일: 2022.1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4.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참고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page=1 (검색일: 2022.9.7.)

extra-mile 홈페이지.
https://www.extra-mile.co.kr/blogPost/EMC_220530 (검색일: 2022.9.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isability.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issues/women-and-girls-with-disabilities.html (검색일: 2022.10.21.)

United Nations 홈페이지 게시물. Addressing gender equality in the context of disability.
https://view.officeapps.live.com/op/view.aspx?src=https%3A%2F%2Fwww.un.org%2Fdisabilities%2Fdocuments%2Fhlmdd%2Fhlmdd_unwomen.doc&wdOrigin=BROWSELINK (검색일: 2022.10.21.)

부 록

[부록 1] 언론기사와 국가통계 및 판결문을 통해 본 장애인 대상 성차별 및 성인권 실태 115

[부록 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교재 수정·보완 내용 160

[부록 1] 언론기사와 국가통계 및 판결문을 통해 본 장애인 대상 성차별 및 성인권 실태

1. 언론기사 통해 본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상황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언론기관에서 보도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네이버(naver.com)와 구글(google.com) 포털 사이트에서 '장애인', '차별', '학대', '폭력', '인권' 등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하였다. 보도자료 검토 과정에서 '임신', '탈시설', '이동', '활동지원' 등 구체적인 사건 및 상황과 연관된 경우, 그에 맞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보도자료 수집 기간은 두 개 포털사이트 모두 2010년부터 2022년 8월 초까지로 설정하였다. 한편, 검색 과정에서 중복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처음 보도한 언론기관 혹은 규모가 큰 언론기관의 자료를 우선 선정하였다.

가. 권리영역별 장애인 인권상황 실태

1) 성적 권리

먼저 성적 권리(sexual right) 측면에서 장애인 대상 주요 언론기사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이들 기사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특히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친밀 및 비친밀 관계의 남성에 의한 강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권리를 침해받았지만,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에 가족과 이웃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대처도 늦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표 1〉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성적 권리 침해 사례

주요 내용	출처
- 2022.2.10. 동종전과로 수차례 복역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적장애여성 2명을 잇따라 강제추행하여 긴급체포됨.	여성신문(2022.2.10.) "경찰 전자발찌 차고 장애 여성 2명 성추행한 40대 긴급체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088
- 2021.8.18. BJ 땡초 외 2명이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여성을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하여 징역을 선고당함. BJ 땡초는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대가 없이 방송에 출연시켰으나 피해여성은 BJ 땡초를 남자친구로 여기고 처벌을 원치 않음. 그럼에도 법원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하에 유죄를 선고함.	여성신문 (2021.8.18.) "인터넷 방송서 여성장애인 강제추행 'bj 땡초' 징역 4년"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945
- 2014.10.10. 경기 안성시 모 운수업체 소속 40~50대 버스운전사 4명이 지적장애여성 A씨(23세)를 고등학생 때부터 성폭행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함.	동아일보(2014.10.10.) "버스운전사 4명이 지적장애 여성 수년간 폭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1010/67060460/1
- 2013.9.12.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등이 주로 사는 제주 한 아파트단지에서 남자 주민 6명이 같은 아파트 주민 지적장애여성 7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옴.	동아일보 (2013.9.12.) "제주 한 아파트서 지적장애여성들 상습 성폭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912/57610782/1
- 2013.3.13. 충남 한 시골마을에서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수양딸 여국화(가명, 28세)를 5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아빠)이 경찰에 붙잡힘. 여국화 씨는 세 남매 중 막내로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여 씨가 6살 때 세상을 떠남. 여 씨는 충북 청주의 한 양육시설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 양육시설을 떠나야 했고 결혼한 언니(37)는 돌볼 여력이 없어 충남 한 농가에 맡겨짐. 이때부터 '아빠'의 성폭력이 시작되었고 여 씨는 임신하게 됨. 그럼에도 면 사무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주민들도 쉬쉬함. 여 씨 본인도 성폭력 당해도 뭔지 잘 몰라 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임.	한겨레 (2013.3.13.) "아빠한테 성폭행... 노예 삶 산 지적장애 국화 씨의 7년의 지옥"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926.html
- 2012.7.31. 경남 지역에서 노인 3명이 한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여성(42세)을 본인 집이나 모텔로 유인하여 여러 차례 성폭행하였으며 여성의 시누이에 의해 밝혀지게 됨. 여성은 경찰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본인이 피해를 받은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동아일보 (2012.7.31.) "한동네 지적장애인 성폭행 몹쓸 노인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731/48196377/1

2) 재생산권(결혼·출산·양육권)

결혼과 출산 및 양육을 아우르는 재생산권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연애와 결혼에서부터 임신과 출산, 양육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임신과 출산은 비장애인에게도 신체적으로 매우 힘겨운 시간이고, 진료 환경도 친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양육에 있어서도 양육자인 부모와 비양육자인 자녀가 장애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부표 2〉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재생산 권리 침해 사례

영역	주요 내용	출처
결혼	2022.6.28. 중증장애인들이 결혼 및 출산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이성교제 어려움, 연애 기간 주위로부터의 부정적 시선, 가족 반대 등이 있음. 결혼 후에도 차별 및 어려움 지속되며 지원 관련 법규 부족 지적함.	에이블뉴스 (2022.6.28.) "끼리끼리 논다 중증장애인 결혼부터 난관"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628174414344949
출산	2014.4.18. 관절이 구부러지고 근육이 수축돼 온 몸이 굽는 희귀병인 쉘던증후군을 앓는 신윤아 씨는 쌍둥이 임신에 성공했지만 12주경 태아 모두에게 유전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두 아이를 떠나보냈음. 착상유전자진단검사를 이용해 다시 시도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으나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아일보 (2014.4.18.) "장애인 임산부도 활짝 웃고 싶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40418/62856460/1
	2011.8.12.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저출산 정책을 전 방위적으로 쏟아내는 정부가 여성장애인들의 모성권 보호는 외면하고 있어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함.	여성신문 (2011.8.12.) "출산지원금, 여성 장애인은 외면하나"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11
양육	2022.5.27.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또 발생함.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책임을 부모와 가족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문제임. 계속된 죽음에도 정부는 대책이 없음.	비마이너 (2022.5.27.) "또 발달장애 자녀와 부모 사망... 국가는 없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33
	2014.10.30. 경기도 양평 장애인재활시설에서 거주하는 김 씨와 전 씨는 연애 후 결혼하여 아이를 낳음. 하지만 부부는 지적장애 1급으로 양육을 독자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음. 현재 경제능력이 없어 시설에서 거주하며 아이를 키움. 앞으로 아이 교육이 중요한데, 다장애 가정 아이는 돌볼 사람이 없어 후천적으로 발달 느려질 가능성이 큼.	한겨레 (2014.10.30.) "1살 지원이 잘 키우고 싶은데...지적장애 부부의 소망"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662244.html

3) 이동권 및 접근권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된 이슈는 현재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경증장애인은 허용되지 않는 점, 중증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예약제로 운영됨에 따라 필요시 즉각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지하철과 같이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 여전히 이용상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접근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이슈는 서비스 이용 및 시설 관련 정보 등의 활용에 있어 장애인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과 관련된다. 이를테면, 상점 내 키오스크 기능에 음성지원이 되지 않는 점,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병원이 지정되었지만 여전히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있다.

〈부표 3〉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침해 사례

영역	주요 내용	출처
이동권	2022.8.1. 강효준 씨(가명, 22)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걷지 못하지만 경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한계에 부딪힘. 그러나 서울시는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음. 이동지원에서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야 함.	비마이너 (2022.8.1.) "걷지 못하는데 '경증장애인'이라고 서울시 장콜 못 타는 효준 씨"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747
	2022.5.4.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충주시의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규탄함. 충주에서 휠체어 탄 장애인은 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유일한 교통수단임. 하지만 예약제 운영으로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바로 이용하기 어렵고 관외운행은 병원 이용으로만 제한되고 있음.	비마이너 (2022.5.4.) "충주시 장애인콜택시 '행복콜', 실상은 딴판"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9
	2022.4.19. 동대입구역에서 한 지체장애인이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다리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넓은 간격으로 인한 위험은 꾸준히 제기됨. 이에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10분간 지하철 연착 투쟁이 벌어짐.	비마이너 (2022.4.19.) "동대입구역서 또 장애인 다리 빠져... 전장연, '안전한 이동권' 촉구하며 10분 연착 투쟁"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43
접근권	2022.7.11. 시각장애인 40여 명이 맥도날드 서울시청점을 기습 방문했으나, 키오스크 5대 중 음성지원 기능이 가능한 기계는 0대였음. 현실은 이런데 복지부는 단계적 적용을 운운하며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 보장 유예하는 태도임.	비마이너 (2022.7.11.) "주문 취소되고 화면 영어로 바뀌고... '유리장벽 키오스크, 시각장애인은 햄버거도 못 사먹어'"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25
	2021.9.30.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농아인협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수어통역사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은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현재 수어통역센터나 수어통역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배치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수어통역 인프라 편차가 큼.	메디컬투데이 (2021.9.30) "청각, 언어장애인 위한 수어통역사 상주 의료기관 2곳뿐"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31007
	2017.6.13. 광주시가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병원을 2곳 지정했지만,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광주장애인연대 대표는 최소한 구별 1개씩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광주드림 (2017.6.13.) "광주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2곳뿐... 접근조차 어렵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733

4) 학습권 및 노동권

앞서 살펴본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제약은 이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장애라는 이유로 노동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적용 제외되고 있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부표 4〉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학습권 및 노동권 침해 사례

영역	주요 내용	출처
학습권	2022.4.5. 노들장애인야간학교를 다니는 추경진 씨는 통학길에 나설 때마다 이동권에 어려움을 겪고 이는 학습권에 영향을 미침. 이동이 어려워 배움을 포기하는 장애 학생이 발생하기도 함.	한겨레 (2022.4.5.) "장애인이 교육받아 뭐하냐"던 2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37695.html
노동권	2022.5.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마로니에공원 일대에 모여 장애인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함. '최저임금법상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폐지' 등을 요구함.	한겨레 (2022.5.1.) "장애인 노동자들 거리에서 "9천여명 장애인 5년째 37만원 월급"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1118.html
	2022.4.19. 박선희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반려견 미용 자격증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2급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음.	한겨레 (2022.4.19.) "미용시험서 쫓겨난 장애인, 차별을 잘라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9518.html
	2021.12.7. 장애인 보호작업장 노동자 73%가 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기존 정의와는 달리 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를 '보호고용'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가둠. 또한 새로운 직무를 경험할 기회도 여전히 부족함. 보호작업장에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할 수 없었음. 또한 장애인 노동자를 '근로인'과 '훈련인'으로 나누어 임금을 차등 지급함.	비마이너 (2021.12.7.) "또다시 드러난 열악한 보호작업장 실태, 최저임금법 제 7조 폐지돼야".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75

5) 건강권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도 언론기사에서 여러 사례를 보도하였다. 이를테면,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확진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사의 지원 중단이 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 그리고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과 생존에서 고위험군에 속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없이 방치하는 점 등의 사례가 있다.

〈부표 5〉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건강권 침해 사례

주요 내용	출처
2022.3.24.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증장애인이 병상을 찾지 못해 숨짐. 이를 광주 장애인단체가 지적하였고 광주시는 대책회의를 열어 대책을 세움.	한겨레 (2022.3.24.) "광주에서 코로나 확진 40대 중증장애인, 병상 찾다 숨져"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36109.html
2022.3.2. 중증장애인 부부와 29개월 자녀는 코로나 확진으로 2주간 격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약 하나 받지 못하고 활동지원 받지 못한 채 방치됨. 장애인 감염에 대한 정부 대책은 부족한 상황임.	비마이너 (2022.3.2.) "중증장애인 부부와 29개월 자녀, 코로나 확진에 2주간 방치"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98
2022.2.3.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방역 체계의 전면 전환이 이뤄졌으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 제기됨. 특히 장애인은 감염 시 일반 확진자보다 사망 확률이 높음에도 고위험군에 분류되지 않아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임.	한겨레 (2022.2.3.) "치명률 4배 높은데...PCR도 돌봄도 사각지대 놓인 장애인"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9527.html
2014.9.30. 시각장애인 최 씨(26)가 용산행 급행 전동차를 기다리던 중 발을 헛디뎌 철로로 추락했고 대피공간으로 피하기는 했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역부족이었음. 최 씨는 전동차에 치여 머리뼈가 깨지고 목, 어깨, 갈비뼈가 부러졌음. 최 씨는 안전문 미설치 승강장에서 사고를 당함. 그러나 법적으로 안전문 설치나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 추락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과실로 보는 경향이 있음.	한겨레 (2014.9.30.) "[단독] 시각장애인 안전문 없이 추락...홀로 3분 떨다 열차 치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657489.html

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상황 실태

1) 종사자의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언론기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수집·검토하면서 확인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 인권침해의 행위자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한 것이다. 주로 이들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가한 주된 행위는 신체적 폭력과 학대 및 성추행·성폭력 등이다. 또 다른 행위자는 활동지원사이며, 이들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다.

〈부표 6〉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의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대상	주요 내용	출처
시설종사자에 의한 인권침해	2022.7.18. 거주인 간 상습 학대 사건이 발생한 남해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시설 종사자(생활지원사)도 거주인을 폭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남. 이 시설에서는 거주인 간 학대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이어졌지만, 남해군은 해당 사실을 지난 3월에야 알아차려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idomin.com (2022.7.18.) "남해 장애인시설 종사자도 학대 의혹"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381
	2022.6.29.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경산 성락원에서 생활지도원 A씨(62)가 지적장애 1급 장애인 B군(16)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됨.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음. A씨는 동료 직원들 회유하며 범행 은폐하려 함.	노컷뉴스 (2022.6.29.) "미성년 중증 장애인 폭행한 시설 종사자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58913
	2022.6.19. 지적 장애인들을 수차례 걸쳐 학대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A씨(49) 등은 지적 장애인을 수차례 걸쳐 학대하여 선고받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 행위에 해당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함.	news1 (2022.6.19.) "발로 차고, 목 조르고... 지적 장애인 학대한 종사자들 '벌금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165665?lfrom=kakao
	2022.5.9. 서초구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징계 처분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	연합뉴스 (2022.5.9.) "서초구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사 아동학대 정황... 경찰 수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9158100004?input=1195m
	2022.5.3. 사회복지사 ㄱ씨의 학대(강제로 먹인 음식에 기도가 막힘)로 20대 발달장애인 장희원 씨가 숨짐. 이에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1심 판결 결과 경험 부족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 부담에 쫓기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징역 4년형에 그쳤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는 장애인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규탄함.	비마이너 (2022.5.3.) "법원, 장애인 기도 막혀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 징역 4년 선고'"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76
	2021.12.27. 피해자 엄마의 청원 글을 통해 전남 광주 소재 지체장애 특수학교 은혜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장기간 폭행한 의혹이 불거짐. 이에 더해 학교 측의 안일한 대응 및 소극적 대처가 폭행을 장기화했다는 지적도 나옴.	비마이너 (2021.12.27) "광주 은혜학교, 장애학생 폭행 장기간 방치 의혹"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65
	2021.12.13. 대구 청암재단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가 중증장애인의 뒷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됨. 폭력 행위가 우발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생활관 등에서 지속된 것이라는 의혹 제기됨. 과거에도 해당 재단 및 시설은 수차례 인권침해 행위가 적발되었으며 인권운동연대는 성명서를 내어 이 부분을 지적함.	노컷뉴스 (2021.12.13) "대구 천혜요양원 사회복지사, 장애인 폭행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672864
	2021.9.29. 경북 경산의 장애인시설 성락원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임. 직원이 학대가 의심된다는 사례를 촬영해 공익신고해서 가능했는데, 성락원 측은 오히려 신고한 직원을 대기발령해 쫓겨날 위기에 처함.	대구MBC (2021.9.29.) "장애인 학대 신고했더니 대기발령" https://dgmbc.com/article/-L4uRk6Gn4Rc8Oi0zC2RPv

대상	주요 내용	출처
	2021.6.7. 전남 화순의 한 지적장애인 시설에서 종사자들이 장애인 상습 폭행하고 학대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됨. 원장은 이를 묵인하고 폭행에 가담했다는 내부 증언 나옴.	KBS (2021.6.7.) "[단독] 장애인 상습 감금, 폭행...학대 일삼은 장애인시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3737&ref=A
	2021.6.4. '정인이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홀트아동복지회가 이번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사회복지사)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장기간 가했던 것으로 파악됨. 사건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홀트는 국내 대표적 사회복지법인임에도 공식적 사과나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음.	고양신문 (2021.6.5.) "홀트 장애인 폭행 경찰수사...공식 사과도 없이 '몇 달간 쉬쉬'"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66
	2021.5.18. 경북 경산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돌보는 생활지도원이 17세 중증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방 싱크대에 머리 집어넣고 물고문하듯 학대한 사실 확인됨.	한국일보 (2021.5.18.) "말 안 듣는다" 10대 장애인 싱크대에 머리 넣고 물고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815560003394?did=NA
	2021.4.9. 서울 광진구의 한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33)가 중증 지적 장애인 B씨(24)를 수차례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또 다른 사회복지사 C씨(33)는 방조함.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 컵에 있는 물을 마신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음.	노컷뉴스 (2021.4.29.) "남의 물 마셨다고... 지적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532944
	2021.4.27. 사회복지사가 서울 용산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 피해자 B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는 등 놀리고 수치심을 주어 대법원이 정서적 학대 행위라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시민일보 (2021.4.27.) "장애인 놀려 수치심 준 복지사...대법 "학대 행위"...벌금형 확정"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815560003394?did=NA
	2020.11.12. 제주지역 모 장애인 단기시설 전 사무국장 A씨가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여성(10대)에게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뒤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해당 시설 원장은 A씨와 모자 관계로 A씨의 행위를 감싸는 데만 급급함.	KBS (2020.11.12.) "지적장애인 무릎 꿇리고 상습 폭행한 사회복지사...끝까지 반성 안해"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046894&ref=A
	2020.11.7. 경남 사천의 유일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뇌병변 장애 2급인 5살 A군을 학대함. A군은 보육교사 한 명으로부터 130여 대를 맞았고 한 달 여 동안 12차례 걸쳐 일어남. 주변 교사들은 가해 교사를 막지 않음. 그럼에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6개월, A군 때린 교사에게도 자격정지 6개월 처분만 내려져 약하다는 지적이 많음.	KBS (2020.11.7.) "5살 장애아 130여대 때린 교사, 징계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930178?lfrom=kakao
	2020.5.18. 장애인 인권 복지 단체가 경상남도 합천 소재 한 병원에서 간호사 폭행으로 숨진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인권위에 촉구함. 해당 간호사는 취침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병원 측은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환자 스스로 넘어져 사망했다고 변명함.	news1 (2020.5.18.) "병실 왜 안들어가 간호사 폭행에 장애인 사망...진상규명해야" https://www.news1.kr/articles/?3937323

대상	주요 내용	출처
	2020.3.4.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일부 생활재활교사들이 장애인들 폭행하였으며 행동 수정한다는 이유로 고추냉이를 섞은 물을 강제로 먹임.	한겨레 (2020.3.4.) "대소변 자주 본다고 폭행, 고추냉이 섞은 물 먹인 장애인시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1041.html
	2019.8.18. 인천 장애인 보호시설(장애인주간복지센터)에서 50대 사회복지사가 장애인을 폭행함. 장애인 B씨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함.	연합뉴스 (2019.8.18.) "보호시설서 장애인 폭행한 50대 사회복지사 입건"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8041100065?input=1195m
	2020.1.3. 장애인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중구의 한 사회복지관 장애인 시설 사회복지사(35)가 다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도 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이 추가로 밝혀짐. 더욱이 해당 복지관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부 징계만 했을 뿐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장애인옹호기관 등 외부기관에 알리지 않음.	매일신문 (2020.1.3.) "복지사 '장애인 폭행', 복지관은 돈 건네며 은폐 시도?"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0010316190385367
	2019.2.22.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30대 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서로 때리게 시키고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섬.	한겨레 (2019.2.22.) "지적장애인들에 "서로 때려라" 강요한 재활교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883218.html
	2018.7.16. 특수학교 학부모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도 한 특수학교의 교사가 장애 여학생들을 수 년간 성폭행한 사실과 교사들의 체벌 사실을 알렸음. 그동안 이를 참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특수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함.	한겨레 (2018.7.16.) "지속적 성폭행 의혹 특수학교, '수업 전 체벌' 의혹까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853498.html
	2016.8.22. 서울의 한 장애인 치료 교육 센터에서 근무하던 특수체육 교사 A(29, 여)가 2급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아동 B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B가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뱉었다는 이유로 폭행 및 폭언하였다고 함.	뉴시스 (2016.8.22.) "장애아동 머리 때리고 폭언한 특수체육 교사 '집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07423076?lfrom=kakao
	2016.5.16.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힘. 조 씨 등은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받고 있음. 원장은 폭행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둠.	연합뉴스 (2016.5.16.)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상습 학대...원장은 알고도 방치"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6043451055?input=1195m
	2015.5.19.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에 있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망애의 집'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나온 활동가 등이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섬. 해당 기관은 구청 권고를 제외하고 외부기관 조사를 받은 적 없이 공공 감시를 피해 27년 간 방치되어 왔음. 거주인 면담 조사 결과 시설 종사자가 거주인 체벌, 폭행한 정황 나타남. 명목은 보호였지만 실상은 방치였음. 식사시간 제외하고 거주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실에 앉아 있었음.	경향신문 (205.5.19.) "무보수 노역, 상습 폭행...'우면산 속 지옥'"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2599212?lfrom=kakao

대상	주요 내용	출처
	2014.8.11. 장애인거주시설의 물리치료사였던 김 모씨(52)는 지체장애 및 청각장애 2급 장애인 이모(42)씨가 '쓰레기통의 더러운 종이로 만든 딱지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밀침. 이외에도 과거 다른 장애인 2명도 '지시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함.	연합뉴스 (2014.8.11.) "인권위, 시설 장애인 폭행 물리치료사 검찰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07061369?lfrom=kakao
	2014.3.13. 울산 한 장애인 근로 작업장에서 관리자급 남성 5명이 여성 근로자 5명을 수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남.	여성신문 (2014.3.13.) "울산 장애인 작업장서 여성5명 7년간 상습 성추행 당해"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178
	2013.8.12. 경기 안양시 한 장애인시설에서 요양보호사 A씨 등 2명이 지적장애인들을 수년 간 상습 폭행하고 시설장 B씨가 안양시가 지원한 시설비까지 횡령한 것이 드러남.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해 제보하면서 불거짐. A씨는 장애인들이 문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일부 장애인들은 독방에 감금한 뒤 상시적으로 폭행함.	오마이뉴스 (2013.8.12.) "독방에 감금하고, 식사시간에 퍽! 퍽!"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031634?lfrom=kakao
	2012.12.4. '도가니'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된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전북 장애시설 원장이 수년에 걸쳐 장애인 여성 7명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동아일보 (2012.12.4.) "장애시설 원장이 상습적 폭행...전북서 제2 도가니 사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1204/51287459/1
	2012.8.2. 모 장애인단체회장이 여성 지적장애인(2,3급) 3명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행했으며 신고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함.	동아일보 (2012.8.2.) "장애인단체회장, 女지적장애인 3명 성추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20802/48263785/1
	2012.2.9. 울산 북구 소재 청각장애시설(메아리동산)에서 이용 남학생 절반 이상이 연루된 동성 간 성폭력이 발견됨. 남학생들 간 성폭력이 2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가해자가 9명, 피해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 중 6명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함. 추가로 시설종사자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남. 위생관리가 불량해 김칫독에서 구더기나 파리떼가 발견되거나 방이나 벽 등에 곰팡이가 피기도 함.	서울경제 (2012.2.9.) "장애인시설서 동성 간 성폭력 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2216636?lfrom=kakao
활동지원사에 의한 인권침해	2022.8.5.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 뇌병변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활동지원사가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음. 활동지원사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뇌병변 장애인 B씨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으며 B씨는 노트북 카메라로 촬영한 피해 증거를 모아 A씨를 고소함.	서울신문 (2022.8.5.) "뇌병변 장애인 성폭행 혐의 활동지원사 중형"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05500080&wlog_tag3=naver
	2022.5.11. 피해자 뇌병변장애인 정 씨는 2020년 11월 활동지원사 안 씨를 처음 만남. 이후 안 씨는 정 씨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폭력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폭행을 가했으며 7개월 간 지속됨. 피해자인 정 씨는 신체를 자유	비마이너 (2022.5.11.) "뇌병변장애인 7개월 간 성폭행한 활동지원사 재판...피해자 직접 증언"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31

대상	주요 내용	출처
	롭게 움직이기 어려워 증거 없이는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가족에게 털어놓지 못했으나 어렵게 찍은 사진을 증거 자료로 활용해 안 씨를 고소함. 가해자 안 씨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 초반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최근에는 말을 바꿔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함. 장애인권단체는 엄중 처벌 촉구함.	
	2020.6.18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지적장애 청년을 개 목줄로 묶어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시로 학대하다 결국 빨랫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함.	서울신문 (2020.6.18.) "지적장애인 '개목줄' 묶고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엄마도 공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100180?lfrom=kakao
	2018.7.5.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정 모씨를 돕기로 하고 방문한 활동보조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일탈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장애인을 학대하는 일도 발생함.	SBS (2018.7.5) "낮잠 자고, 폭행하기도…일부 장애 활동보조인 일탈 문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33295&plink=ORI&cooper=NAVER

2) 장애인의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앞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해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행위자가 반대인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의료시설 종사자가 서비스 과정에서 장애인에 의해 폭행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부표 7〉 언론기사를 통해 본 장애인에 의한 시설종사자의 인권침해 사례

영역	주요 내용	출처
종사자 관련 (피해자: 종사자)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정신보건의료인들이 일상적으로 폭행에 노출되지만 사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연차 낮은 경우, 인력 부족한 시간대에 폭력이 많이 발생함. 그럼에도 그동안 언론에서 간호사, 보호사 등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를 폭행하는 사건 위주로만 다루어짐.	미디어오늘(2016.7.8.) "정신병원 의사, 간호사, 94%가 환자에게 폭행 경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30958

2. 통계로 본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가. 장애인의 차별 인식 및 학대와 폭력 경험

1) 장애로 인한 차별 인식

가장 최근 발표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16]'에서는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보고하고 있는데, 느낀다(항상+가끔)는 응답은 29.3%이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29.7%, 여성은 28.7%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높다. 이를테면, 17세 이하가 47.9%로 가장 높고, 18~44세는 43.4%, 45~64세는 31.8%, 65세 이상은 22.8%이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중증, 43.3%)가 심하지 않는 장애(경증, 20.9%)에 비해서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표 8〉 장애인의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항상 느낀다	1.6	1.8	4.6	6.3	1.4	0.5	3.6	0.5	1.7
가끔 느낀다	28.1	26.9	43.3	37.1	30.4	22.3	39.7	20.4	27.6
별로 느끼지 않는다	55.1	55.8	42.4	44.4	53.6	60.3	47.4	60.2	55.4
전혀 느끼지 않는다	15.2	15.5	9.6	12.2	14.7	16.9	9.3	18.9	1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57)

장애인이 인식하는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를 보면, '매우 있다'는 응답은 앞서 '장애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이 낮고,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16)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 결과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참고자료, 2021.4.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page=1)

〈부표 9〉 장애인의 '우리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전혀 없다	3.6	3.6	2.2	1.8	3.5	4.2	2.2	4.5	3.6
별로 없다	32.3	33.6	26.2	23.2	28.9	38.5	26.3	36.8	32.9
약간 있다	54.6	52.6	51.0	56.6	56.8	51.1	57.0	51.8	53.8
매우 있다	9.5	10.2	20.6	18.4	10.8	6.2	14.5	6.9	9.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58)

2) 장애로 인한 학대 및 폭력 경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당한 경험'이 자주 및 가끔 있었다는 응답도 연령이 낮고,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서 유의미하게 높다.

〈부표 10〉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폭력 당한 경험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자주 있다	1.3	1.5	3.5	4.1	1.3	0.6	3.0	0.4	1.4
가끔 있다	10.7	7.9	24.0	18.1	10.9	5.5	16.3	5.5	9.5
없다	88.0	90.6	72.6	77.7	87.8	94.0	80.7	94.2	8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4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학대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여성이 1.5%로 남성 1.3%에 비해 소폭 높다. 그러나 연령과 장애정도는 앞서 살펴본 결과와 동일하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성적 학대 경험률이 높다[17].

17) 학대 유형별 성별 간 경험률을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적 학대를 비롯하여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 경험이, 남성장애인은 여성장애인에 비해 언어적 폭력,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음.

〈부표 11〉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성적 학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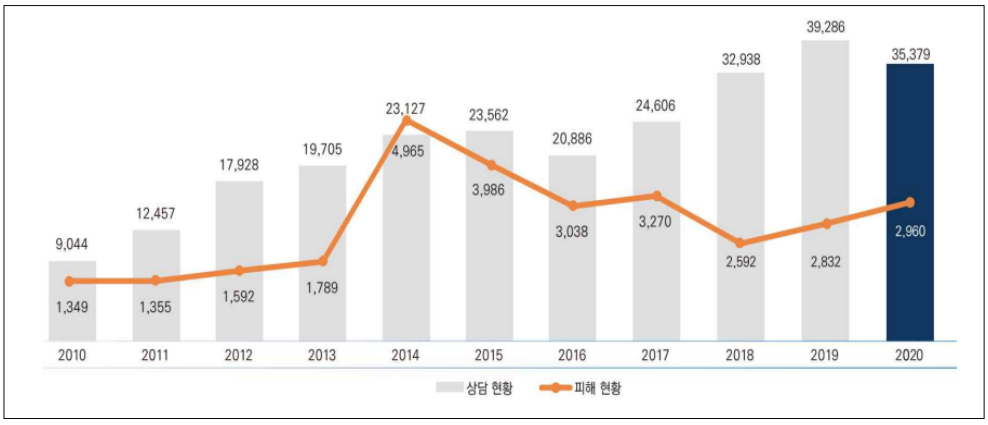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있다	1.3	1.5	-	8.4	2.6	1.0	4.5	1.5	3.5
없다	98.7	92.7	100.0	91.6	97.4	99.0	95.5	98.5	96.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47)

2010~2020년 동안 성폭력 상담 건수는 소폭 증감은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인다. 이를테면, 2010년 성폭력 상담 건수는 9,044건이지만, 2015년에는 23,562건, 그리고 2020년에는 35,379건이다. 동일 기간 장애인 성폭력 피해 건수는 2010년 1,349건에서, 2014년 4,965건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2018년 2,592건까지 감소한 후, 2019년에는 2,832건, 그리고 2020년에는 2,960건으로 반등하고 있다.

(단위: 건, 명)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2021 장애통계연보. (p.227)
https://www.koddi.or.kr/data/research01_view.jsp?brdNum=7411509

[부그림 1] 장애인 성폭력 상담과 피해 건수

장애인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주행위자는 '모르는 사람'이 38.5%로 가장 많다. 이어서 '이웃' 31.2%, '직장 상사 및 동료' 12.2%,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복지인력 등)' 2.3% 등의 순이다. 여기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자인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의 젠더폭력 주행위자인

경우, 장애 정도는 매우 심각한 중증인 경우는 해당자가 없었지만, 경증은 10.2%가 이에 해당된다.

〈부표 12〉 장애인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의 주행위자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근친(가족)	16.6	-	-	3.3	-	-	2.6	-	2.0
이웃	-	35.5	-	40.1	17.0	18.5	33.6	23.2	31.2
먼 친척	-	-	-	-	-	-	-	-	-
모르는 사람	31.7	39.4	-	25.9	51.1	76.9	31.9	61.1	38.5
학교, 학원 관계자	9.8	-	-	1.9	-	-	1.5	-	1.2
이성 친구	-	2.2	-	3.2	-	-	2.5	-	2.0
종교인	-	2.4	-	-	7.4	-	2.7	-	2.1
채팅상대자	-	-	-	-	-	-	-	-	-
서비스 제공자 (복지인력 등)	-	2.6	-	-	8.1	-	-	10.2	2.3
직장 상사 및 동료	10.1	12.5	-	14.9	9.2	4.6	14.2	5.4	12.2
기타	31.8	5.4	-	10.7	7.2	-	11.0	-	8.6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51)

이처럼 장애인이 젠더폭력에 직면했을 때 대처 방법을 보면, '그냥 있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다. 이 보다는 응답률이 낮지만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쳤다'는 경우는 17.2%가 있었다. 이외에도 13.9%는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반대로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응답은 19.2%,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8.6%, '그 자리에서 항의했다'는 3.2%였다.

〈부표 13〉 장애인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대처 방법

(단위: %)

구분	성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남성	여성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그냥 있었음	37.8	37.8	-	33.7	30.7	79.4	38.7	34.6	37.8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	28.9	15.6	-	11.3	34.8	4.5	16.1	21.2	17.2
그 자리에서 항의함	15.0	1.6	-	4.5	-	4.6	4.1	-	3.2
주위에 도움을 요청함	2.8	9.4	-	9.4	5.8	11.4	10.7	1.5	8.6
몰라서 그냥 넘어감	15.6	13.7	-	19.8	6.6	-	11.2	23.2	13.9
진정/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	-	21.8	-	21.3	21.9	-	19.1	19.5	19.2
기타	-	-	-	-	-	-	-	-	-
계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51)

3) 여성장애인의 어려움과 서비스 수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운 점'을 보면,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이 22.5%로 가장 응답률이 높다. 이 보다는 크게 낮지만 두 번째로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 시간 활용의 어려움'으로 12.4%에 이에 해당된다. 이어서 '자녀양육의 어려움' 11.8%,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11.7%, '사회화 기회의 부족' 11.1%,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 7.2%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다.

〈부표 14〉 여성장애인으로서 특히 어려웠던 점

(단위: %)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성장과정 중 가족 으로부터의 따돌림	-	3.5	2.8	-	3.1	3.5	3.2
결혼 후 배우자 가족의 학대, 차별	-	3.7	2.2	-	4.4	1.2	3.3
교육기회 부족	-	3.1	2.0	-	3.9	0.6	2.8
사회화 기회의 부족	-	13.3	6.3	-	14.1	5.6	11.1
친구 등 동료교제의 어려움	-	8.4	4.5	-	9.9	2.3	7.2
사회의 편견과 무시, 이중차별	-	12.9	9.2	-	10.7	13.6	11.7
취업 등 경제적 자립 어려움	-	20.7	26.6	-	22.8	22.0	22.5
성추행, 성폭행, 강간 등 문제	-	2.9	3.7	-	4.8	-	3.1
임신, 출산의 어려움	-	5.2	6.6	-	4.1	8.5	5.7
자녀 양육의 어려움	-	8.6	19.1	-	5.8	22.9	11.8
전문 프로그램 부족 등 여가 시간 활용의 어려움	-	13.3	10.5	-	11.4	14.2	12.4
기타	-	4.6	6.5	-	4.9	5.6	5.2
계	-	100.0	100.0	-	100.0	100.0	100.0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43)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13.3%가 응답한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이다. 이는 연령은 18~44세 이하, 장애정도는 경증인 경우 응답률이 높다. 이 다음으로는 '활동지원사' 11.3%, '출산비용 지원' 10.2%, '건강관리프로그램' 10.0%,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8.8%,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8.7%, '가사도우미' 7.7%,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7.1%, '상담서비스' 5.3%, '산후조리 서비스' 5.1%,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 4.5% 등의 순이었다.

〈부표 15〉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구분	연령별				장애정도		전체
	17 이하	18~44 이하	45~64 이하	65 이상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임신, 출산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	8.3	9.8	-	8.3	9.7	8.8
임신, 출산, 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	2.9	0.5	-	3.3	0.1	2.2
출산비용 지원	-	10.5	9.5	-	7.0	16.1	10.2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 전문병원	-	6.5	8.6	-	4.9	11.2	7.1
산후조리 서비스	-	3.6	8.4	-	2.9	9.1	5.1
육아용품 대여	-	-	0.6	-	0.3	-	0.2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	14.6	10.4	-	10.7	18.2	13.3
자녀교육도우미	-	3.3	1.2	-	3.2	1.8	2.7
가사도우미	-	6.0	11.3	-	8.3	6.5	7.7
활동지원사	-	13.3	7.0	-	15.7	3.3	11.3
건강관리프로그램	-	8.7	12.8	-	9.8	10.3	10.0
상담서비스(심리, 정서)	-	4.9	6.1	-	6.6	3.0	5.3
자조집단(멘토)	-	1.0	-	-	-	2.0	0.7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평생교육) 지원	-	4.1	5.4	-	5.5	2.7	4.5
장애를 고려한 여성용품 정보 제공	-	10.1	5.6	-	10.2	6.1	8.7
기타	-	2.0	2.8	-	3.4	-	2.2
계	-	100.0	100.0	-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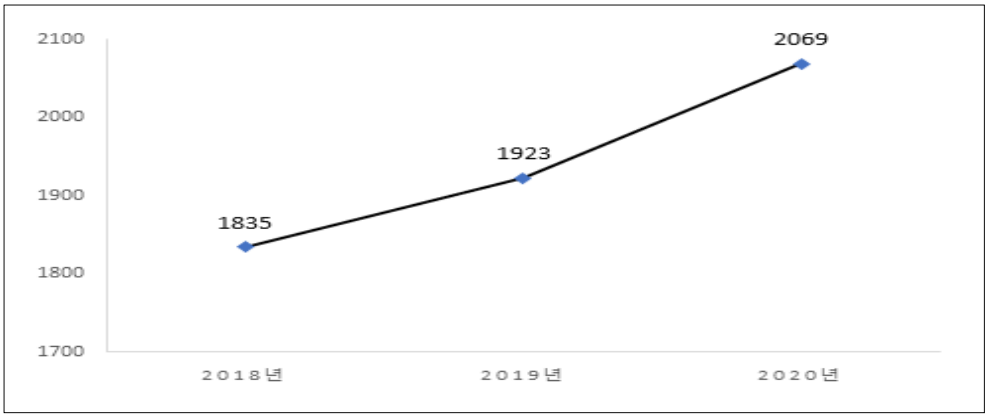
출처: 김성희 외(2021),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42)

나. 장애인 학대 특징

1) 장애인 학대 현황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매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18]. 가장 최근인 2020년 기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 건수는 총 4,208건이며,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2,069건으로 여기서 학대조사 실시 결과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008건(48.7%)으로 보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 46-47). 이처럼 장애인학대의심사례는 2018년 1,835건, 2019년 1,923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57;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61).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15, 2020:61, 2019:57).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부그림 2] 장애인 학대의심사례 건수(2018~2020년)

2) 장애인 학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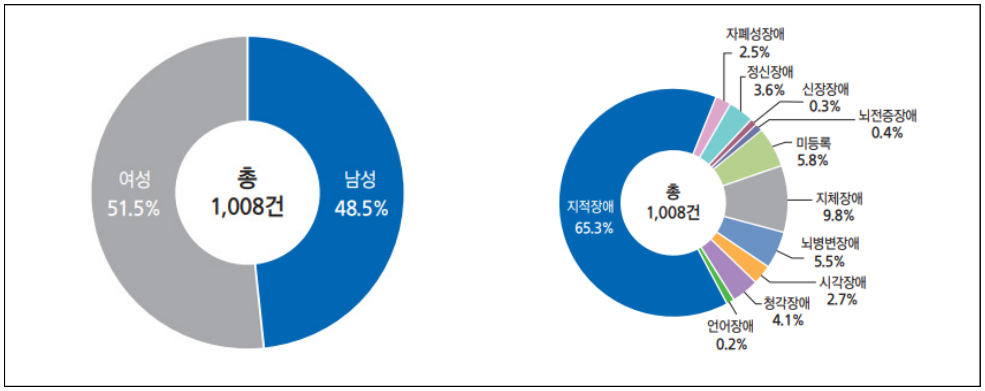
가) 학대 피해자 성별 및 장애 유형

실제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1,008건)에서 성별 비율을 보면 여성이 51.5%로 남성 48.5%에 비해 소폭 더 많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07). 피해장애인의 주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5.3%로 대다수를 차지함. 이어서 지체장애 9.8%, 뇌병변장애 5.5%, 청각장애 4.1%, 정신장애 3.6%, 시각장애 2.7%, 자폐성장애 2.5% 등의 순으로

18)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등이 포함함(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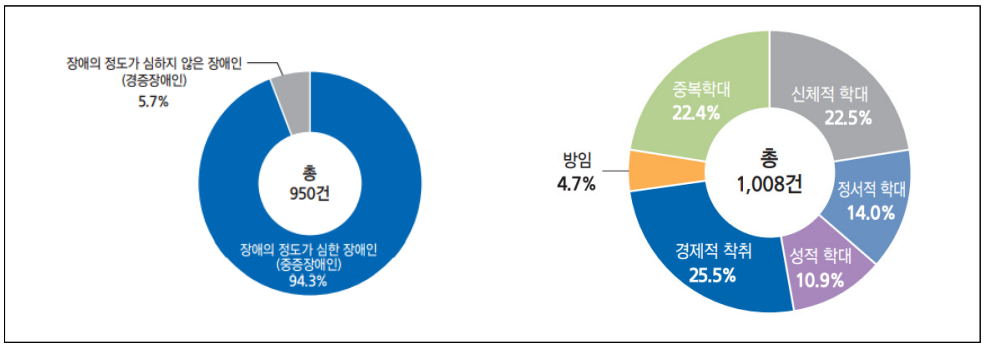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p.107,123)

[부그림 3] 장애인 학대 피해자 성별 및 장애 유형

나) 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 및 학대 유형

학대 피해자는 대다수(94.3%)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11).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비율의 학대가 조력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이 피해를 입은 학대유형을 보면, 경제적 착취가 25.5%로 가장 많다. 이 보다 소폭 낮은 22.5%와 22.4%가 각각 신체적 학대와 중복학대였고, 14.0%는 정서적 학대, 10.9%는 성적 학대로 보고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2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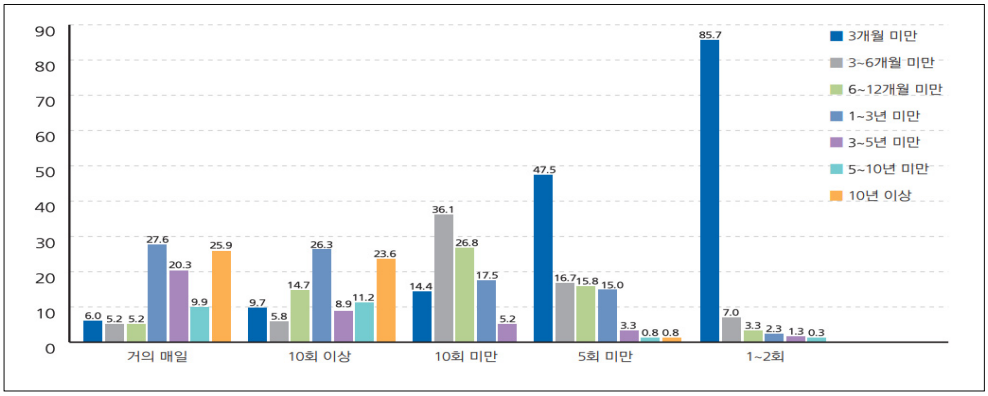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p.111,123)

[부그림 4] 장애인 학대 피해자 장애 정도 및 학대 유형

다) 학대 지속 기간

학대 지속 기간은 매우 다양했는데, '거의 매일' 학대 경험 기준으로 보면, 10년 이상 학대를 경험했다는 경우가 25.9%였고, 1년 이상만 보더라도 83.7%였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21).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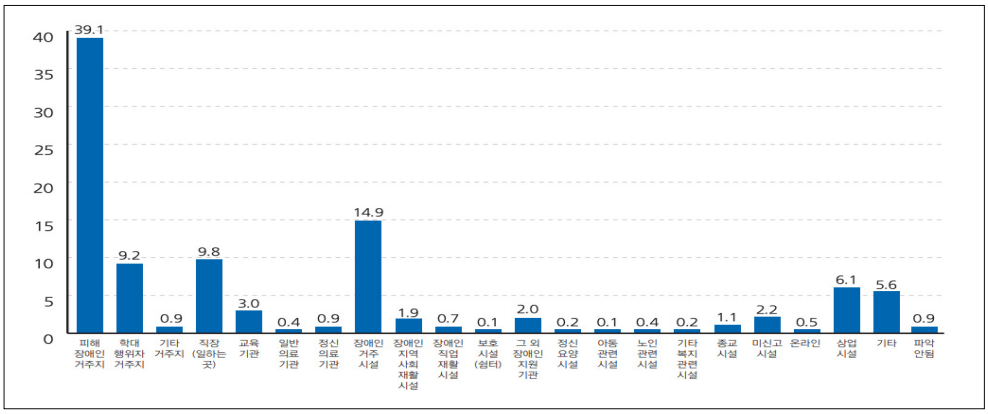
[부그림 5] 장애인 학대 지속 기간 및 발생빈도

라) 학대 발생 장소

장애인 대상 학대 발생 장소를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로 가장 많다. 이 다음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14.9%, 직장 9.8%, 학대 행위자 거주지9.2%, 교육기관 3.0%, 미신고시설 2.2%, 그 외 장애인 지원기관 2.0%,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9% 등의 순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18).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주목할 것은 거주지 및 미신고시설, 종교시설, 직장, 온라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약 1/4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들 기관은 공공서비스 기관이므로 향후 학대 피해자 예방 및 방지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곳이기도 하다.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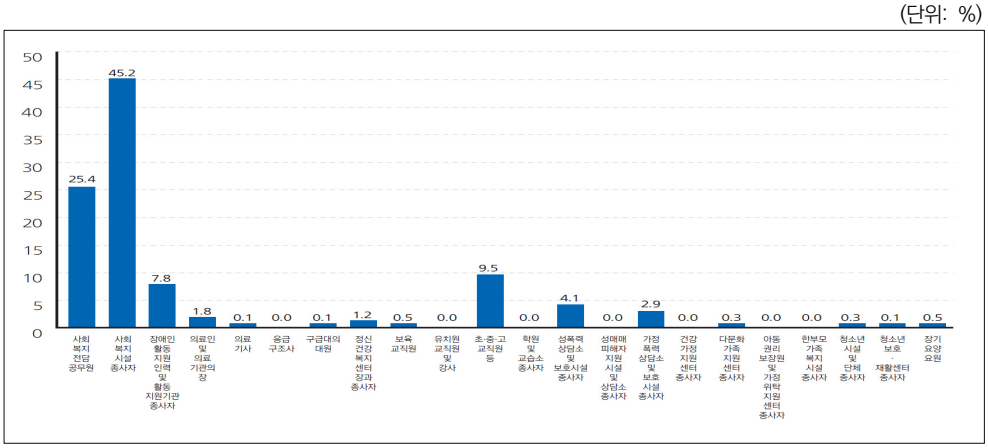
[부그림 6] 장애인 학대 발생 장소

3) 장애인 학대 행위자

가)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 현황

2020년 학대의심사례 2,069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35.2%(728건)이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87-88). 이들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45.2%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25.4%, 초·중·고 교직원 9.5%,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7.8%,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4.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9%,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1.8% 등의 순이었다.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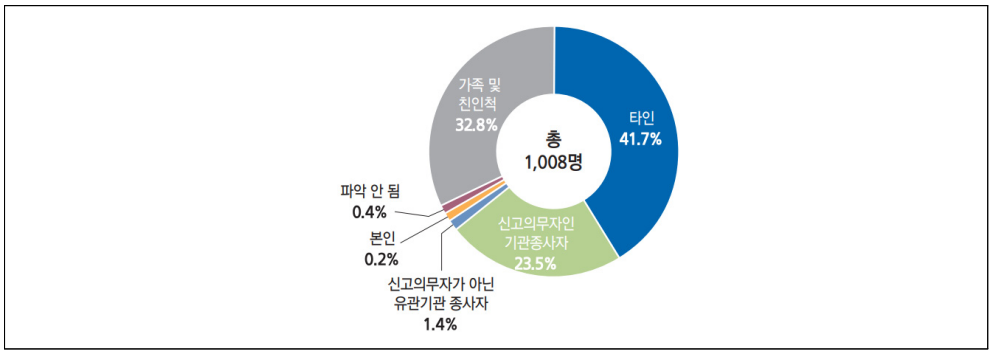
[부그림 7]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나) 학대 행위자 유형

실제 장애인 학대 판정 사례(1,008건)에서 학대 행위자를 대분류 기준에서 보면, 동거인, 이웃, 알고 지내는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되는 '타인'이 41.7%(420건)로 가장 많다. 이어서 가족 및 친인척(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 등) 32.8%(331건),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19] 23.5%(237건),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20] 1.4%(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이다. 2020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는 2019년 대비 284건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23.5%가 이들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장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 특성이 있는 만큼,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행위 처벌과 이들에 대한 학대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이 결과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15).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15)

[부그림 8] 장애인 학대 행위자(대분류 기준)

19)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제2항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의 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과 그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등,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한부모가족보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요원 등이 신고의무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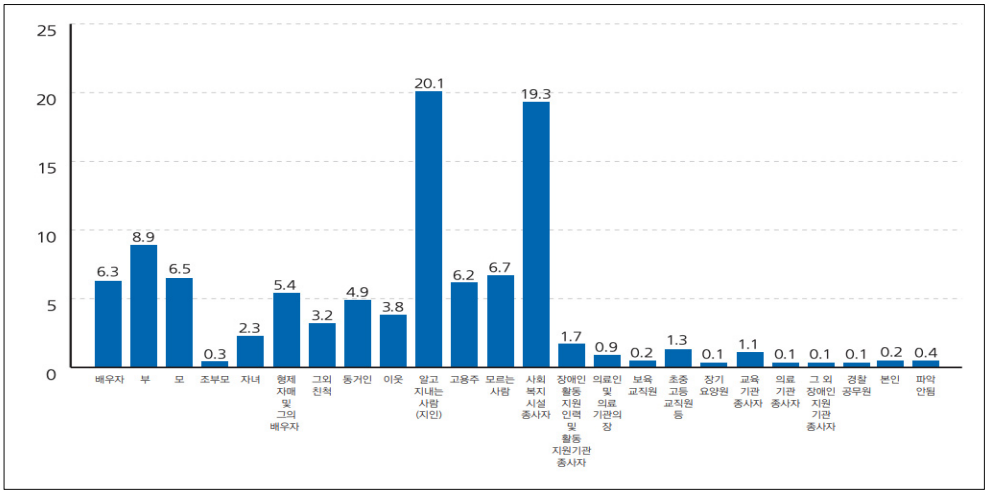
20)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에는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그 외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노인관련기관 종사자, 기타 복지관련기관 종사자, 일반 공무원, 경찰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해당됨.

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현황

장애인 학대 행위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많다. 이 다음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데 19.3%(195건)가 이에 해당된다. 이어서 장애인의 부(父) 8.9%(90건), 모르는 사람 6.7%(68건), 모(母) 6.5%(66건), 배우자 6.3%(63건), 고용주 6.2%(62건) 순으로 보고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47).

이 2020년 기준 결과는 2018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21)에서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의한 학대 비율이 전체의 41.2%인 것과 비교할 때[21] 크게 감소한 것이지만, 이들에 의한 장애인 피해사례가 전체 학대 행위자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17)

[부그림 9] 장애인 학대 행위자(중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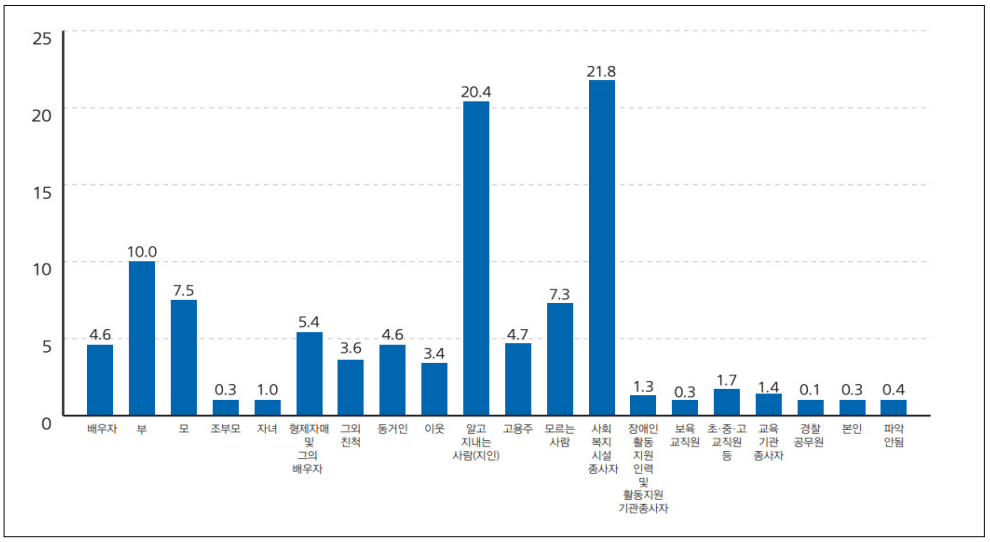
최근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2020)에 따르면, 전체 학대 피해 사례의 69.6%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고 보고서에서도 발달장애인 학대의 본인 신고율은 7.3%(51건)로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본인 신고율(13.2%, 274건)뿐 아니라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 본인 신고율(9.4%, 95건)

21) 2018년 현황에서는 신고의무자와 신고의무자가 아닌 유관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2020년에 이를 모두 합치더라도 24.9%인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것임.

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51)

특히, 발달장애인으로 한정해서 학대 행위자를 보면,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1.8%(15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지인) 20.4%(143건), 부(父) 10.0%(70건), 모(母) 7.5%(53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신고의무자로서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사 기관 종사자에 의한 발달장애인의 학대도 1.3%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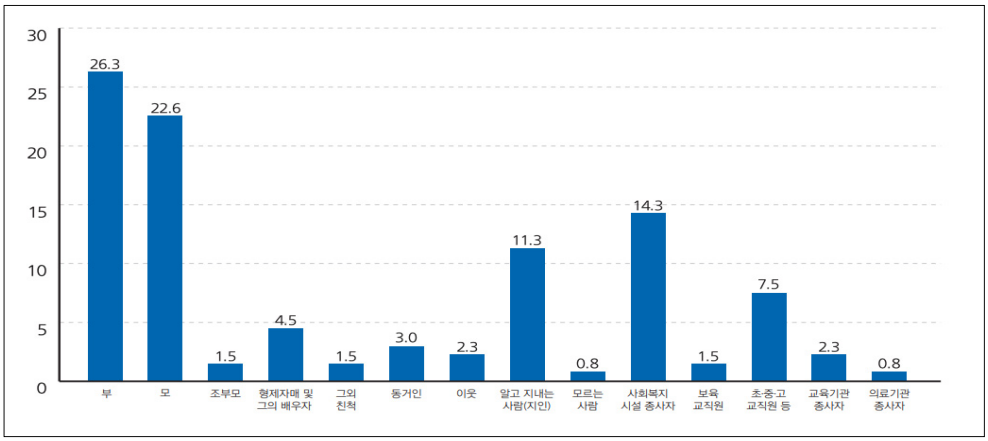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56)

[부그림 10] 발달장애인의 학대 행위자

장애아동의 학대 행위자는 부(父) 또는 모(母)가 48.9%(65건)로 가장 많다. 그렇지만 학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14.3%(19건)로 높은 순위에 확인된다. 이 다음으로 알고지내는 사람(지인) 11.3%(15건), 초·중·고 교직원 7.5%(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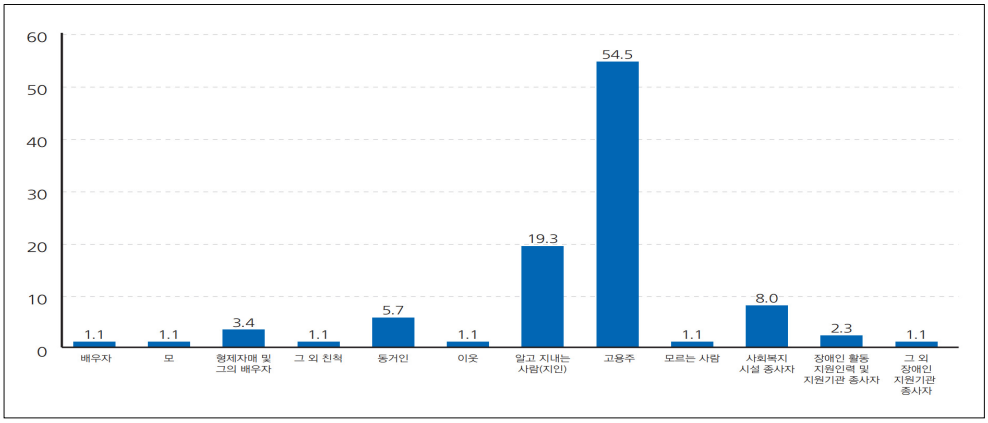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76)

[부그림 11] 장애아동 학대 행위자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92)의 2020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는 학대의 한 형태인 노동력 착취에 대해 총 88건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전체 학대사례(1,008건)의 8.7%에 해당되며, 경제적 착취 사례 321건에서는 27.4%를 차지한다.

노동력 착취의 행위자도 타인인 경우가 81.8%(72건)로 가장 많다. 그렇지만,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종사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노동 착취 행위도 10.3%(9건)로, 가족 및 친인척 6.7%(6건) 보다 높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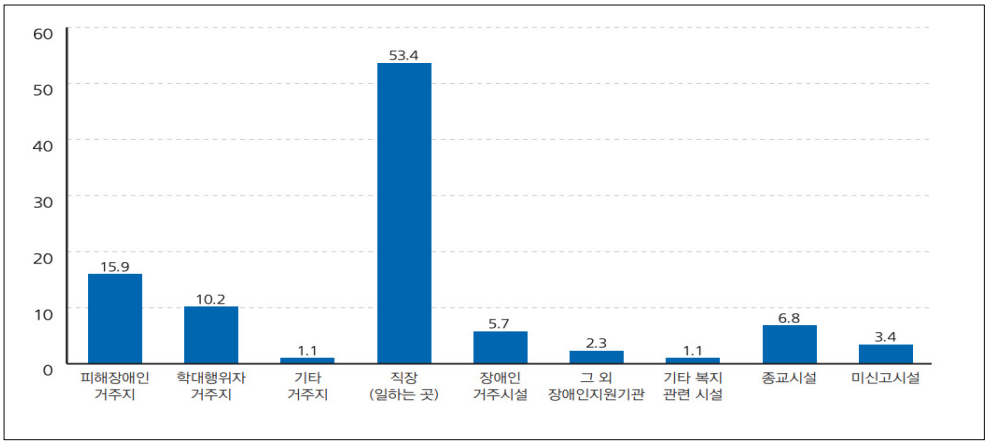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92)

[부그림 12] 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의 발생장소를 보면, 피해장애인의 직장에서 발생한 사례가 53.4%(47건)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인 거주지 15.9%(14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10.2%(9건), 종교시설 6.8%(6건), 그리고 이 보다는 낮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5.7%(5건)로 나타난다.

한편, 노동력 착취가 3년 이상 지속된 사례는 67.0%(59건)이며, 특히 10년 이상 피해를 겪은 사례가 43.2%(38건)로 가장 많다.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의 지속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12.1%, 122건)와 비교했을때 31.1% 높다는 것은 노동력 착취가 신체적 학대 등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피해장애인들이 본인의 피해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지속 기간이 길다는 점을 나타낸다(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1:194).

(단위: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2020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p.193)

[부그림 13] 노동력 착취 발생 장소

4)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의한 폭력피해

가) 종사자의 폭력피해 경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5년 '중중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시설거주 장애인, 동료, 상사로부터 폭언과 폭행 경험 정도를 보고하고 있다(8개 항목, 부록 표 16 참고). 우선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평균 2.8개 정도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 명의 종사자가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약 3개 유형의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3가지 유형별 개인마다 다르지만 응답률이 높은 3가지 유형을 보면, "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51.2%)", "큰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55.2%)", "깨물기, 침 뱉기, 뺨 맞기, 할퀴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49.9%)"가 있다.

최근 5년 이내 장애인, 동료, 상사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한 월 평균 횟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에게는 폭언 3.02회, 폭행 1.45회, 동료에게는 폭언 0.24회, 폭행 0.01회, 상사에게는 폭언 0.44회, 폭행 0.03회 정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상습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

〈부표 16〉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언·폭행 유형별 행위자

(단위: %, 횟수)

폭언·폭행 유형		장애인 거주자		동료		상사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욕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48.8	51.2	91.3	8.7	91.3	8.7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72.6	27.4	78.0	22.0	78.1	21.9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44.8	55.2	84.5	15.5	79.6	20.4
비하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81.3	18.7	86.8	13.2	83.0	17.0
무시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81.5	18.5	85.8	14.2	81.4	18.6
팔이나 멱살 잡기를 당한 적이 있다.		71.7	28.3	99.0	1.0	99.6	0.4
깨물기, 침 뱉기, 할퀴기 등을 당한 적이 있다.		50.1	49.9	99.0	1.0	99.4	0.6
목을 조르거나 물건 던지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것을 당한 적이 있다.		64.2	35.8	99.0	1.0	99.4	0.6
평균 개수 (1개~8개 범위)		2.8개		0.7개		0.9개	
최근 5년 폭언·폭행 경험자의 월 평균 횟수	폭언	3.02		0.24		0.44	
	폭행	1.45		0.01		0.0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5).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p.91-92)

이외에도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장애인 거주자에 의한 성희롱 경험도 보면, 육체적 행위는 24.7%, 언어적 행위는 4.8%, 시각적 행위는 8.5%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종사자 동료 및 상사에 의한 경험도 물론 있지만, 장애인 거주자에 의한 경험률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

〈부표 17〉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성희롱 경험

(단위: %)

성희롱 유형	장애인 거주자		동료		상사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육체적 행위	75.3	24.7	97.6	2.4	98.2	1.8
언어적 행위	95.2	4.8	97.2	2.8	96.3	3.7
시각적 행위	91.5	8.5	99.0	1.0	99.7	0.3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5).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연구 (p.102)

수원시 내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12개소 및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종사자를 대상(총 57개소, 232명)으로 최근 1년 동안 장애인 이용자에 의한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 괴롭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언어적)폭언'이 23.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신체적)폭행', '성희롱'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표 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의한 폭언·폭력·성희롱 경험률

(단위: 명, %)

항목	있다	없다	무응답	합계
폭언(언어적)	55 (23.7)	123 (53.0)	54 (23.3)	232 (100.0)
폭행(신체적)	14 (6.0)	165 (71.1)	53 (22.8)	232 (100.0)
성희롱(성추행 포함)	12 (5.2)	166 (71.6)	54 (23.3)	232 (100.0)

출처: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2015). 수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보고서(p.50)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연구에서는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855명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과 성적 괴롭힘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 이용자에 의한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244명(29.2%), 그리고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도 66명(7.9%)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 동료 및 상사에 의한 폭력에 비해 월등히 높다.

〈부표 1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과 행위자

(단위: 명, %)

폭력 대상자 유형		있음	없음	계
장애인 이용자 폭력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	244 (29.2)	593 (70.8)	837 (100.0)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66 (7.9)	765 (92.1)	831 (100.0)
보호자 폭력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	3 (0.4)	813 (99.6)	816 (100.0)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3 (0.4)	813 (99.6)	816 (100.0)
동료 폭력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	2 (0.2)	815 (99.8)	817 (100.0)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6 (0.7)	811 (99.3)	817 (100.0)
상사 폭력	상해 등의 신체적 폭력	2 (0.2)	816 (99.8)	818 (100.0)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7 (0.9)	810 (99.1)	817 (100.0)

출처: 신재은·김미옥·박미경·유진희(2017).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실태조사 연구.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p.61)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22] 종사자의 장애인에 의한 신체폭력 경험은 다양한데, 특히 '신체적 폭력' 경험이 55.4%로 가장 많이 경험한 폭력 형태이다. 이외에도 '공격시도' 경험이 39.8%, '밀기' 경험 32.7% 등이 있다.

22) 조사에 참여한 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며, 총 1,976명이 조사에 참여함(김성훈 외, 2020:31).

〈부표 2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경험 유형

(단위: 명, %)

폭력 유형		남성	여성	계
던지기 경험	있다	174 (22.0)	265 (27.6)	439 (25.1)
멱살잡기 경험	있다	160 (20.2)	138 (14.4)	298 (17.0)
밀기 경험	있다	234 (29.6)	339 (35.3)	573 (32.7)
깨물기 경험	있다	244 (30.8)	262 (27.3)	506 (28.9)
공격시도 경험	있다	316 (39.9)	382 (39.8)	698 (39.8)
신체적 폭력 경험	있다	436 (55.1)	534 (55.6)	970 (55.4)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42-43)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경험(가끔+자주+매우)의 유형은 '신체적 폭력'이 56.6%로 가장 많다. 이어서 '언어·정서적 폭력'이 48.0%로 많으며, 이외 '경제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각각 23.8%와 22.2%이다.

〈부표 2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경험 정도

(단위: 명, %)

내용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매우 많다
신체적 폭력	859 (43.5)	973 (49.2)	100 (5.2)	43 (2.2)
언어, 정서적 폭력	1029 (52.1)	735 (37.2)	156 (8.0)	55 (2.8)
성적 폭력	1537 (77.8)	390 (19.7)	36 (1.9)	12 (0.6)
경제적 폭력	1507 (76.2)	429 (21.7)	29 (1.6)	10 (0.5)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1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감수성은 대체로 높다. 특히, '이용자의

폭력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중요한 이슈이다'에 대해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 응답이 94.6%로 가장 높다. '이용자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가끔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다'의 경우도 79.2%가 응답했다.

〈부표 2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 감수성

(단위: 명, %)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용자의 폭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30 (1.5)	78 (3.9)	917 (46.5)	949 (48.1)
이용자와 업무 수행과정에서 가끔 나의 안전에 대해 걱정한 적이 있다	95 (4.8)	316 (16.0)	1160 (58.8)	403 (20.4)
나는 폭력적이거나 폭력적일 수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	193 (9.8)	863 (43.7)	698 (35.4)	220 (11.1)
나는 폭력 상황이 수행과정의 일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누구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20 (26.3)	855 (43.3)	516 (26.2)	83 (4.2)
이용자에게 폭력을 경험했을 경우 비장애인이 행하는 폭력과 동일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24 (11.3)	969 (49.0)	604 (30.7)	177 (9.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98)

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폭력 가해자의 장애 특성

앞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폭력 피해를 가한 장애인을 폭력 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모든 폭력 유형에서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한다.

〈부표 2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신체적 폭력 가해자의 장애 유형

(단위: 명, %)

	던지기	멱살잡기	밀기	깨물기	공격시도
지체 장애	29 (7.0)	26 (9.3)	47 (8.8)	37 (7.7)	58 (8.6)
지적, 자폐성 장애	343 (82.9)	226 (80.4)	445 (82.5)	408 (84.5)	555 (82.3)
시각장애	6 (1.4)	1 (0.4)	4 (0.7)	9 (1.9)	6 (0.9)
청각장애	7 (1.7)	5 (1.8)	9 (1.7)	1 (1.2)	16 (2.4)
뇌병변장애	18 (4.3)	14 (5.0)	22 (4.1)	16 (3.3)	25 (3.7)
정신장애	11 (2.7)	9 (3.2)	12 (2.2)	12 (2.5)	14 (2.1)
합계	414 (100.0)	281 (100.0)	537 (100.0)	483 (100.0)	674 (100.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4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로부터 경험한 피해에는 성적폭력이 22.8%로 가장 많다. 이어서 신체접촉 경험이 15.4%, 성기노출 경험이 10.4%, 수치심 유발 경험 6.8%, 음란물 경험 2.7%, 스토킹 경험 2.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중에서도 이처럼 장애인 이용자에 의한 성 관련 폭력 가해는 여성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다. 이를테면, 남성종사자의 성적폭력 경험은 16.1%인데 반해, 여성종사자는 28.4%로 약 1.8배 더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

〈부표 2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성폭력 경험

(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계
신체접촉 경험	있다	76 (9.6)	193 (20.1)	269 (15.4)
음란물 경험	있다	10 (1.3)	38 (4.0)	48 (2.7)
수치심 유발 경험	있다	23 (2.9)	96 (10.0)	119 (6.8)
성기 노출 경험	있다	79 (8.8)	113 (11.8)	183 (10.4)
강간 또는 강간시도 경험	있다	1 (0.1)	3 (0.3)	4 (0.2)
스토킹 경험	있다	11 (1.4)	30 (3.1)	41 (2.3)
성적폭력 경험	있다	127 (16.1)	273 (28.4)	400 (22.8)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55-56)

이처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이용자(장애인)의 장애 유형을 보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적·자폐성 장애가 성폭력의 유형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를테면,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성기노출의 경우, 이용자의 장애유형이 지적·자폐성 장애가 82.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어서 지체장애가 6.2%, 정신장애 2.5%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부표 25〉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장애 유형

(단위: 명, %)

	신체접촉	음란물	수치심 유발	성기노출	강간, 강간시도	스토킹
지체 장애	29 (11.3)	12 (23.5)	21 (18.8)	10 (6.2)	-	3 (7.1)
지적, 자폐성 장애	194 (75.5)	20 (39.2)	64 (57.1)	148 (82.2)	4 (80.0)	31 (73.8)
시각장애	7 (2.7)	2 (3.9)	2 (1.8)	1 (0.6)	-	1 (2.4)
청각장애	7 (2.7)	10 (19.6)	9 (8.0)	2 (1.2)	1 (20.0)	1 (2.4)
뇌병변장애	10 (3.9)	4 (7.8)	22 (8.9)	2 (1.2)	-	3 (7.1)
정신장애	10 (3.9)	3 (5.9)	6 (5.4)	4 (2.5)	-	3 (7.1)
합계	257 (100.0)	51 (100.0)	112 (100.0)	161 (100.0)	5 (100.0)	42 (100.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60)

다) 장애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영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이용자의 폭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감정 변화도 경험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과민해짐'이 43.0%로 가장 많은 경험률을 보였다. 이 다음으로 '우울감' 28.8%, '체념' 26.9%, '두려움' 24.6%, '무능감' 22.0% 등의 순이며, 어떠한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단 11.1%였다.

〈부표 26〉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피해에 띠른 경험(다중응답)

(단위: 명, %)

내용	남성	여성	계
변화 없음	90 (17.2)	41 (6.2)	131 (11.1)
체념	149 (28.5)	169 (25.6)	318 (26.9)
과민해짐	227 (43.5)	281 (42.6)	508 (43.0)
두려움	66 (12.6)	225 (34.1)	291 (24.6)
우울감	107 (20.5)	234 (35.5)	341 (28.8)
동정적인	41 (7.9)	33 (5.0)	74 (6.3)
죄책감	3 (0.6)	10 (1.5)	13 (1.1)
무능감	96 (18.4)	164 (24.8)	260 (22.0)
기타	28 (5.4)	41 (6.2)	69 (5.8)
합계	522 (44.2)	660 (55.8)	1182 (100.0)
합계	414 (100.0)	483 (100.0)	674 (100.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7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 이용자(장애인)에 의한 폭력피해로 감정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 변화도 경험한다. 가장 많은 경험율을 보인 것이 45.3%가 응답한 '피로감'이다. 이어서 '무기력' 22.7%, '편두통' 19.8%, '불면증' 10.7% 등이 있다. 어떠한 신체적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24.8%로 1/4 정도만 해당되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 경험은 종사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모든 유형의 신체적 변화에서 경험률은 여성종사자가 남성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부표 27〉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피해에 따른 신체 변화 경험(다중응답)

(단위: 명, %)

내용	남성	여성	계
변화 없음	173 (33.5)	116 (17.9)	289 (24.8)
불면증	48 (9.3)	77 (11.9)	125 (10.7)
편두통	77 (14.9)	154 (23.8)	231 (19.8)
소화불량	35 (6.8)	59 (9.1)	94 (8.1)
피로감	205 (39.7)	322 (49.8)	527 (45.3)
속쓰림	14 (2.7)	3.2 (4.9)	46 (4.0)
무기력	103 (19.9)	161 (24.9)	264 (22.7)
기타	27 (5.2)	60 (9.3)	87 (7.5)
합계	517 (44.4)	647 (55.6)	1164 (100.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7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로 이직을 했거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경우는 26.7%였다. 여기서 '장애인복지 외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타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7.4%, 그리고 '이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2.6%가 있었다. 이처럼 이직을 고려한 경우는 성별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표 2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폭력피해에 따른 이직 고려 경험

(단위: 명, %)

내용	남성	여성	계
이직을 고려한 적이 없다	383 (73.7)	478 (73.0)	861 (73.3)
타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	43 (8.3)	44 (6.7)	87 (7.4)
장애인복지 외 다른 유형의 복지시설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	78 (15.0)	118 (18.0)	196 (16.7)
이직을 한 적이 있다	16 (3.1)	15 (2.3)	31 (2.6)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75)

라)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대처 및 수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장애인)에 의한 폭력피해 시 대처방안을 보면,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는 응답이 73.3%로 거의 3/4을 차지한다. 이 다음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대처방안은 '직장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로 27.5%가 이에 해당된다. '가족에게만 말하고 넘겼다'는 응답도 16.7%를 차지한다. 이처럼 대처방안에 대해서 종사자의 성별 간 차이도 존재하는데, 앞서 살펴본 응답률이 높았던 3가지 대처방안 모두 여성에게서 월등히 높았다.

〈부표 29〉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시 대처방안(다중응답)

(단위: 명, %)

내용	남성	여성	계
대부분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	217 (40.9)	478 (73.0)	861 (73.3)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06 (20.0)	44 (6.7)	87 (7.4)
가족에게만 말하고 넘겼다	19 (3.6)	118 (18.0)	196 (16.7)
주변동료에게 푸념하거나 하소연하고 넘겼다	151 (28.5)	15 (2.3)	31 (2.6)
직장상사나 동료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	116 (21.9)	214 (32.0)	330 (27.5)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	17 (3.2)	15 (2.2)	32 (2.7)
외부 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	2 (0.4)	-	2 (0.2)
법적 대응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3 (0.6)	1 (0.1)	4 (0.3)
행정기관(시군구청)에게 민원제기	1 (0.2)	-	1 (0.1)
기타	14 (2.6)	16 (1.3)	30 (2.5)
합계	530 (44.2)	668 (55.8)	1198 (100.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77)

앞서 약 3/4은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시에 개인적으로 참고 넘겼다고 했는데, 그 이유로는 '대응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가 60.2%로 가장 응답이 많았다. 이외에는 응답률이 10% 미만으로 낮지만, '참고 넘기라는 주위의 조언 때문에(7.9%)',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서(3.9%)',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 우려(7.9%)' 등도 있었다.

〈부표 3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용자에 의한 폭력피해 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넘긴 이유(다중응답)

(단위: 명, %)

내용	남성	여성	계
개인적 수치심	13 (2.7)	22 (3.8)	35 (3.3)
대응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269 (55.3)	376 (64.2)	645 (60.2)
기관으로부터 불이익 우려	20 (4.1)	22 (3.8)	42 (3.9)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3 (0.6)	3 (0.5)	6 (0.6)
사회의 부정적 인식	62 (12.8)	31 (5.3)	93 (8.7)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 우려	39 (8.0)	46 (7.8)	85 (7.9)
대응해야 되는지 몰라서	16 (3.3)	26 (4.4)	42 (3.9)
참고 넘기라는 주위의 조언 때문에	47 (9.7)	38 (6.5)	85 (7.9)
기타	83 (17.1)	102 (17.4)	185 (17.3)
합계	486 (45.3)	586 (54.7)	1072 (100.0)

출처: 김성훈·김자영·박승도(2020).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실태조사. (사)경북행복재단(p.80)

3. 판례를 통해 본 장애인 인권침해[23)]

가. 종사자에 의한 학대

1) 요양보호사가 지적장애인의 피해자를 돌보던 중 상해한 사건

- 죄명: 장애인복지법위반
- 적용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판결의 의의
  - 요양보호사 등과 같이 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의한 장애인학대 행위라는 점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2016년 5월경부터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해 오던 중 2017년 1월경 피해자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태블릿PC만 보자 이를 빼앗았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달려들자 화가 나 청소기 흡입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려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3-14).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2)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뇌병변장애인에게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사건

- 죄명: 장애인복지법위반
- 적용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장애인 폭행, 정서적 학대)
-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항소하였으나 2019년 4월 24일 항소를 취하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됨
- 판결의 의의
  - 장애인의 생활 반경 내에서 장애인과 함께 머무르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라는 점
  - 일주일에 걸쳐 11회의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할 정도로 학대행위가 일상적이었다는 점

---

23) 여기서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의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장애인 인권침해 주요 판례를 제시하였음.

• 이 사건 피해자는 뇌병변장애 1급의 장애인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이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을 꺾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세게 밟은 것을 비롯하여 일주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9-20).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3) 생활재활교사가 입소인의 행동에 화가 나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

- 죄명: 장애인복지법위반
- 적용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장애인 폭행, 정서적 학대의 점)
-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함
- 판결의 의의
  • 피해자가 다른 입소인을 깨물고, 선반을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기는 했으나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점
  • 화를 내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액자를 집어던지며 사진을 찢은 행위는 부적절한 대응이자 학대행위라는 점

• 사회복지법인 생활재활교사인 피고인은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난폭한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액자를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액자 사진을 두 손으로 찢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82-183).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4)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과 종사자가 거주인들을 폭행한 사건

- 죄명: 장애인복지법위반
- 적용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 제6호(장애인 폭행)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장애인학대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판결의 의의(불리한 정상)

•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피해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운 점

• 피고인 A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해당 시설의 생활지도교사이며,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4명은 해당 시설의 거주인이다.

• 피고인 A는 피해자 중 1명이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며 병원에 보내 달라고 하자 격분하여 같은 시설 거주인 2명을 원장실로 불러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게 하였다.

• 피고인 B는 피해자 중 1명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발로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피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 또한 다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자 A4 복사용지 뭉치를 말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때렸다.

• 그리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1~2회 걷어찼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79-181).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5) 장애인거주시설 생활교사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수십차례 자행한 사건

- 죄명: 장애인복지법위반
- 적용법조: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 제6호(장애인 폭행, 정서적 학대)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장애인학대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판결의 의의(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약 1년간의 22회의 학대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을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중하다고 설시한 점
  • 피고인이 장기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종사한 사람이라는 점과 시설 내에서 피고인의 학대행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훨씬 지속된 점

•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기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인들이다.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2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시킨다거나, 기침하여 취침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거나, 거실 복도 벽에 앉아 있도록 시키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욕을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을 내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자행하였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195-196).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6) 장애인복지관 언어치료사 성추행 사건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제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 법원의 판단: 1심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2심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됨. 대법원은 2019.1.23. 상고기각결정을 함
- 판결의 의의(불리한 정상)
  - 언어치료실이라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언어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현실에서 체험한 사실과 꿈속에서 겪은 내용을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
  -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 이유와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도 낮으며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한 점

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 피고인은 언어치료사로 2015년 9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언어치료를 받았던 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실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4차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3회 추행하였다.

②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피고인은 언어치료실에서 피해자를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부른 후 아동인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219-221).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7)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

-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 판결의 의의(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고 하여도 장애인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점
  -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들이 밀집하여 살아가는 공간이므로 장애를 고려한 적절한 성교육의 제공 등 예방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 이 사건 피해자 A와 피해자 B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 여성들이고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 남성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 피고인은 식당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A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마주 보고 앉아,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허리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 및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식사 후 식당에서 나가는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고,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출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222-224).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부록 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표준교재 수정·보완 내용[24)]

1) 제1장 활동지원 개론 - I. 장애의 이해

장애 개념의 변천 과정의 앞부분의 내용과 장애유형 설명에 있어 관점을 다르게 설명한다. 활동지원제도의 이론적 배경은 자립생활 패러다임, 실천방향은 장애 관점의 변화인데 장애 특성을 설명하는 방식은 의료모델과 손상에 집중하여 설명한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손상으로 인해 억압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장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원하는 환경(물리적 관계적)을 구조화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며 일상적인 보통의 삶을 영위하고자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장애 유형별 특성을 설명할 때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면 사실과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없거나 힘들다, 부족하다, 뒤떨어진다"는 표현은 판단, 생각, 평가방식으로 기술된 문구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본 교육교재에서는 장애유형별로 문체 기술 방식이 다르다. 지체, 뇌병변, 시각 등은 할 수 있음으로 청각, 안면, 정신, 지적, 자폐 등은 할 수 없음으로 주관적인 문체를 수정하여 장애를 능력과 무능력 혹은 판단이나 평가가 개입된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인 형태로 기술해야 한다.

〈부표 31〉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1장 활동지원 개론 - Ⅰ. 장애의 이해〉 개선(안)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22쪽	(5) 안면장애 그러나 장애 특성상 예민한 얼굴의 손상으로 인해 사회생활, 연애, 결혼 등에 심한 장애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안면장애인들 가운데 심리적 문제로 인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 특성상 얼굴의 외형이 달라 사회생활에 참여 혹은 활동하는데 차별을 당하여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안면장애인이 정신장애가 동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특정 사례를 과잉일반화하여 설명함
23쪽	(7) 정신장애 정신장애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대인관계, 직업활동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이다.	정신장애는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 정의 적용
23쪽	인간이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런저런 정신적 장애를 겪게 되지만, 사람들은 정신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인간은 살아가며 누구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다. 그런데 '이	이상한 사람~~ 으로 간주하여 기피하는 것은 보통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임

24) 〈부록 2〉는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 중에 발달장애여성연구원 성명진 원장과 논의하여 성인지 감수성과 장애감수성 측면에서 수정·보완 의견을 받은 것을 제시한 것임.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장애인을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기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 등록을 기피하기도 하고 자신의 병력이 노출될까봐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상함, 미침, 위험'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우리사회와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쳐 장애등록에 혹은 노출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용어 선정에 있어서도 기피는 꺼리거나 싫어서 피한다는 부정적 판단이 포함된 용어로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사료됨
23쪽	(8)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IQ가 현저히 떨어져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IQ 70 이하)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이다. 지적장애는 염색체 이상, 약물 오남용, 뇌손상, 조산, 납중독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는 지능검사점수(IQ)가 70이하로,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생활 등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개념이해, 사회적 관계, 행동 실행에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지적장애 설명은 DSM-5 내용을 따르고 부정적 어휘표현 바꿈 현저히, 지장, 초래와 같은 부정적 어휘표현 수정 위험 및 예후 인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특정 일부 원인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함 활동보조 업무시 부모에게 그런 연유인지 질문하는 경우가 있음
23쪽	지적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리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갖고 있지만 지적 능력의 한계 때문에 집중력과 사회적응력이 부족한 편이다. 하지만 적절한 교육과 사회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충분하게 우리사회에서 통합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피플퍼스트(People First)'로 불리는 지적장애인 자기권리주장 및 자립생활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피플퍼스트가 결성되는 등 발달장애인의 자조운동이 시작되고 있다.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자 하지만 기억, 주의 등 인지적인 제한을 오해하여 연령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지적장애는 지적인 기능이 달라 사회적인 활동과 참여에 배제 혹은 차별을 받을 수 있어 사회구성원에게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시적 혹은 간헐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피플퍼스트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여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기옹호 단체임 장애유형 범주화 초기에 정신박약-정신지체-지적장애로 변화되면서 발달장애-자폐성장애가 별도로 분리되어 나오게 되면서 문헌에는 정신지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23쪽	(9)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언어적, 행동적 의사소통 문제, 상동 행동,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증상이다. 대개는 만3세 이전에 상호작용 (눈 맞추기, 얼굴 돌리기, 지시 따르기 등)과 의사소통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이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려움, 반복적인 행동, 고정된 흥미로 인해 제한된 행동, 감각 정보에 대한 과소/과잉 반응으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폐성장애인은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거나 의사소통	자폐성장애는 DSM-5(2013) 기준으로 설명 장애는 증상이 아님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이지 뒤떨어지는 것도 아님 지적장애와 같이 불분명한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확인된다. 자폐증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다. 다만, 출생 과정의 뇌손상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할 때 반응의 역치가 높거나 낮아 비장애인과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고, 정해진 순서나 일과에 대한 강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23쪽	자폐성장애인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이 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화할 때 같은 말만 되풀이하거나 다른 사람의 질문을 그대로 따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예 말을 하지 않는(또는 하지 못하는) 자폐인들도 있다.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지도 않고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 심할 경우 괴성을 지르거나 자해를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자폐증의 고유한 특성이라기보다 자폐인의 의사소통(가령, 불만의 표시)의 한 수단일 수 있다. 자폐성장애는 자폐스펙트럼성장애로 불릴만큼 그 편차가 심하다. 글자를 전혀 모르고 자기 집조차 찾지 못하는 자폐인이 있는가 하면 달력이나 10자리 소수를 외우는 자폐성 천재인 '서번트'도 있다. 예를 들면, 영화 〈레인맨〉의 실제 모형이었던 미국 자폐인 킴 픽(Kim Pick)은 많은 책을 머릿속에 저장해 두고 숫자에 밝아 생전에 시립도서관에서 일했다.	즉, 자폐성장애인은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하고, 가능한 일상적인 일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어려움을 관찰하여 보조한다. 최근 들어 자폐성장애인이 다양한 매체에서 노출되고 있으나 정형화된 방식으로 표현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아주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특정 영역에 있어 뛰어난 역량을 보이는 서번트라 불리는 사람도 있다. 즉, 자폐성장애는 유형이 다양하여 스펙트럼 장애라 칭한다.	자폐성 장애인은 전형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스펙트럼화 되어 있어 구체적인 행동 특성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넘어 편견을 심어줄 수 있음

2) 제1장 활동지원 개론 - Ⅲ. 장애와 인권

소주제가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된 장이다. 그런데,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성차별적 내용을 차별로 명시하여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기술하지 않고, 그러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편견을 생성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 혹여 활동지원사가 필요에 의해 교재를 읽어볼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4) 젠더

감수성,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 인식 체크리스트에서도 매우 그렇다는 답변이 나왔다면 평소 발달장애인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혹은 문제행동으로 여긴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체크리스트 자체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만날 때 감수성이 필요하듯, 장애 유형별로도 감수성이 다를 수 있다.

〈부표 32〉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1장 활동지원 개론 - Ⅲ. 장애와 인권〉 개선(안)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51쪽	5. 편견, 차별, 학대 - 사례를 중심으로	발달장애 아동이 통합유치원에 입학하였다. 교사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장애인 친구"로 소개하였다. 단어나 용어에 대한 개념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 성이 "장"이고, 이름을 "애인"으로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동을 "애인아!"라고 불렀다. → 장애는 집단화, 대상화, 무성화하는 편견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름으로 소개해야 한다.	사례 추가
58~59쪽	1번 문항 또한, 성별 고정관점에 따른 성 역할 기대가 폭력 및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심야 귀갓길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은 여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남성에게 파랑색 이미지, 강함과 감정통제를, 여성에게 분홍색 이미지,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강요하는 말이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성별 고정관념이 형성되면 폭력이나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의 신체적인 데이트 폭력을 사랑이라고 범죄를 포장하면 2차 폭력이 되고, 성희롱 당한 여성에게 조심하지 못해서 라는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다.	여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문장이 끝나면 이러한 행동이 폭력이고 차별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내용 설명을 좀 더 추가하고, 표현을 명백하게 기술함
59쪽	2번 문항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은 정숙함과 순결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써 충분한 성적 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또 다른 사회적 요구가 존재한다. 때문에 여성의 의상과 신체 노출은 언제나 성 규범과 요구 사이에서 사회적 이슈가 된다.	의상은 개개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반영하는 자기표현 방식으로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것과 성관계의 개방성을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성 규범과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충분한 성적 매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외모꾸미기가 여성의 도덕성 판단의 잣대라는 표현 자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위배되는 표현임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또한 외모꾸미기는 여성들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잣대이다.		
59쪽	3번 문항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이혼·사별·비혼부모로 인한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재혼가족, 동거가족, 공동생활가족, 그룹홈, 위탁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는 비정상적이고 불완전한 가족으로 여겨진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부합하는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의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며, 1인가구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복지 정책이 요구되는 추세에서 '정상가족'이란 하나의 이데올로기이며 다양한 삶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가족의 개념은 문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변화된 사회제도로서 생물학적·제도적 규범에 의해 연결되어 구성원이 함께 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집단이다. 과거와 달리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구성원의 역할도 달라지고 유연해지는 사회에서 비(미)혼모 가정, 이혼 가정이 불완전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상가족이라는 표현은 비정상가족=불완전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부적절한 표현임.
59쪽	5번 문항 따라서 성적 농담 등 성적 함의를 담은 말을 할 때는 타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친한 친구에게 약속장소에서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듣는 것과 직장 상사에게 직장에서 '몸매 좋은데'라는 말을 듣는 것은 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	따라서 몸매를 평가하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몸매를 기준으로 두고 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마른 몸매가 뚱뚱한 몸매보다 좋거나 나쁘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상대방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적 농담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하면 안 되는 행동임
60쪽	① 장애와 무성(無性)적 존재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비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차이점을 나타낸다. 흔히 장애인은 성적 존재로 인정되지 못하는 무성적 존재로 인식된다. 이때 남성과 여성은 모두 무성적 존재로 취급되지만,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여성은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에 편견이 발생할 경우 차별로 연결된다.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로 잘못 인식할 경우 결혼과 출산 등을 할 수 없다는 편견으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들어 ~~~	차이점이 아니라 무성적 존재로 오해하여 차별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표현이 무성적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통념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아름다운 여성의 신체'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며, 신체적 결함을 유전적 결함으로 연결하여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없다고 평가하는 통념이 존재한다.		
61쪽	② 장애와 성적 존재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은 성적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때도 남성과 여성은 모두 성적 존재로 취급되지만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장애여성이 성적 존재로 드러나는 경우는 성폭력 피해자로서이다. 실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미디어에서 장애여성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지 못한 채,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모습만이 강조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상만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쉽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 결함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표현되면서, 장애여성의 성적 취약성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쉽다. 장애남성의 경우 과잉된 성적 욕구를 가진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발달장애남성의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호기심에 당황스러워하며, 성적 충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긴다.	장애유무와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성적 존재이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신체적·정신적으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성적 존재로 살아간다. 그런데 장애인의 성은 성별과 장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와 교차적인 편견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폭력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성폭력과 장애가 상호작용하여 성폭력을 당했다고 편견을 만들어낸다. 또한,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 과잉 또는 과소된 성적 욕구를 가진 것처럼 오해하여 성적활동에 무시 혹은 억압을 당한다. 장애인의 성과 관련된 편견과 오해가 장애인이 차별 혹은 학대의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사람에게 취급 혹은 양상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장애로 인한 손상도 아니고 결함이라는 표현도 부적절하다.
62쪽	1번 문항 발달장애인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믿는다. 흔히 발달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 발달장애인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충동적이라고 여기는 경향도 있다. 발달장애인은 성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고 관계를 통해 경험할 기회도 부족하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들은 이성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그 관계를	발달장애인도 일상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성행동과 성적 욕구를 표현한다. 다만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방법이 달라 감정을 표현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비장애인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일상 속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과잉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기술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지속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맥락을 놓친 채 발달장애인이 표현하는 방식을 비장애인 기준에서 비정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3번 문항	결혼은 성인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는 과정이다. 발달장애인이어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다.	삽입
	4번 문항	발달장애의 원인은 의학적, 사회적으로 몇 가지 제시되지만, 정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극소수이며, 발달장애인은 어떤 원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유전에 관한 논란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기인한다. 유전여부를 넘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타인의 통제는 발달장애인을 성적 존재로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다.	삽입
	6번 문항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적절한 의사소통훈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성에 관심을 갖는 것 보다는 모르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과정에서 특정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발달장애인 존재에 기인한 문제로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은 일시적인 정보전달 중심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사고와 행동,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체화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일회적인 교육형태로 명칭이나 성관계에 대한 정보이해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성교육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체화교육이 다른 학습과정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방법의 다양화와 변화가 필요하다.

3)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Ⅰ.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은 이동, 가사, 신체활동으로 나누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전 장애 유형별로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척수장애나 뇌병변장애는 이동과 신체적인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삽화가 더 필요하다.

활동보조서비스가 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었을 때에 “지원”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활동보조와 활동지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활동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한다. 그리고 비문이나 표현에 있어 조금 거친 부분, 수동적인 표현을 능동적으로 다듬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신체장애인 영역에서 감수성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항경련제가 빠질 경우’는 ‘항경련제를 복용하지 못할 경우’, ‘간식이나 식이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임의로 추가 식이를 주지 않도록 한다’는 ‘음식 섭취량이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하여 다른 음식을 더 먹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부표 33〉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Ⅰ.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개선(안)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101쪽	2. 뇌병변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1) 장애의 원인과 특성 (1) 뇌성마비 뇌성마비장애인의 약 1/2에서 3/4은 지적장애를, 약 30%는 뇌전증을, 약 20%는 시각장애를, 약 20%는 ADHD를, 약 10%는 자폐성장애를 수반하고 있으며, 지적능력과 운동성능력과 뇌전증 등은 정적 상관이 높다. 또한, 뇌성마비장애인은 지적장애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이나 사회적 참여에서 많은 제한이 있다. 뇌성마비장애 학생은 동일한 지능의 장애학생과 비교했을 때 또래와의 관계 맺기, 또래와의 의사소통기능이 낮고, 정서장애 학생에 비해 자기결정능력이 낮은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뇌성마비장애인은 다른 유형의 장애와 중복장애 비율이 높아 교육이나 활동참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뇌성마비장애인은 신경 근육계를 조절하거나 좌우 비대칭, 상하지의 근육 긴장의 변화로 떨림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의사소통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의 원인과 특성, 뇌성마비 설명에서 중복장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했는데 굳이 반복해서 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뇌성마비 장애인도 성격에 따라 관계맺는 방식이 다르고, 의사소통기능이나 자기결정능력은 높고 낮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활동지원사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제공이 우선이지 뇌성마비장애인을 평가할 필요는 없다.
116쪽	4. 청각장애의 이해와 지원방법 청각장애는 사회활동에서 결정적 장벽이 되어 청각장애인은 소외되고 차별을 경험하며 생활하지만, 신체적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현재는 청각장애만으로는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고 주로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들이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다.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사회활동에 주요한 장벽으로 소외 혹은 차별을 당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으로 아주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활동지원 급여가 낮은 경우가 많다.	청각장애만으로 활동지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4)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Ⅱ.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 지원

앞서 수정 이유나 근거 곳곳에서 제시하였지만 장애유형 정의, 설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활동지원사 교육교재를 검토하였을 때,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와 지원 방법과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 다른 장애 유형을 위한 정보와 지원 방법에 대한 내용이 좀 다르게 기술되었다고 판단된다. 장애운동과 그 역사는 옹호에 기반하는데 양적으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모든 장애유형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거나 지원의 방향성이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부표 34〉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Ⅱ.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 지원〉 개선(안)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128쪽	1. 발달장애의 이해와 활동지원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등록 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라는 각각의 명칭으로 등록되고 있지만, 실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도 많다. 이 점에 유의하여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한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4년에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면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발달장애인이라 정의하였다. 두 장애가 중복으로 등록은 불가하지만 지적장애 특성과 자폐성장애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두 장애 유형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이후 장애등록을 재판정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복지카드에 정신지체와 발달장애로 표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다른 장애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 설명을 덧붙임.
128쪽	가. 지적장애의 정의와 특성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으로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을 유발한다.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함께 적응행동수준인 환경이나 상황과의 상호작용, 사회성기술, 직업기술 등을 살펴서 판단한다. 지적장애는 개인의 능력의 부족만이 아니라 사회의 환경과 사람들의 태도의 영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를테면 적합한 교육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있어 자신의 일을 처리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적장애도 사회·환경적 장벽이나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장애를 정의하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일상의 활동에 참여할 경험이나 기회가 있는지, 평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소통이 가능한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기존의 장애는 신체장애인 중심으로 기술되었기에 장애는 신체적인 의학적인 손상과 기능적 제약으로 설명하였다. 손상을 능력이나 역량과 연결짓지 않는다. 신체적 손상을 떠나 비장애와 같은 정신적 과정을 기준으로 신체장애인의 자립을 설명한다. 그런데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의 뇌기능 손상은 손상이 아니라 능력/역량의 부족 혹은 제한으로 연결짓는 오류를 범한다.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없는지에 따라,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대하는지, 동등하게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지 등에 따라 지적장애의 정도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128쪽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인 정의처럼 사람들은 지적장애인의 능력부족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적 지원과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그 곤란함의 정도는 매우 다르다. 지적장애인의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의력이 부족하여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데, 장기기억보다는 단기기억에서 한계를 가진다. 언어 발달 속도가 느리거나 제한적이어서 어휘가 제한되거나 부정확한 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일반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러한 지적장애인에 대한 특성은 이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기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며 지적장애인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적장애인 모두가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장애인은 ' ~~ '으로 정의하고 있다. 불충분, 불완전, 곤란한 사람으로 표현한 법률적 정의는 부정적인 어휘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장애등록 혹은 진단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의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실천의 지원 근거를 만들기 위함에 있는 것인지 낙인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장애 특성은 인지적, 언어적, 일상적인 영역에서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 인지적으로는 주의집중과 기억 및 동기부여를 위해 개인의 선호도를 존중하여 반복적인 형태의 경험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적으로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정도가 다르다. 일상적으로도 이동, 식사, 목욕, 화장실 사용에 있어 지원 정도가 다르다. 즉, 지적장애는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여 발달장애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129쪽	①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장애는 대부분 지능지수(IQ)가 낮다. 그러나 IQ라고 하는 것은 지적능력, 쉽게 말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데는 이용될 수는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상관이 없다. IQ가	①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적장애는 대부분 지능지수(IQ)가 낮다. 그러나 IQ를 측정하는 지능검사는 언어 이해, 지각적 추론, 산술 등을 측정하는 도구로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상관이 없다. IQ가 낮다고 해서 일상적인 생활영역	IQ가 공부 정도를 측정하지 않음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낮다고 해서 전반적인 영역의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무능력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전반에 걸쳐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무능력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129쪽	② 지적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지적장애의 90%가 원인불명이다. 생물학적 원인으로 염색체 이상과 같은 문제나 임신 중의 영향을 언급할 수 있고, 출생 시 난산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산모의 고령출산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심리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방임이나 불안정한 환경이 자녀의 지적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 출산 전의 주의 부족이나 가정폭력, 낮은 경제 수준 등 복잡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지적장애인으로 양육될 수도 있다.	② 지적장애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지적장애의 90%는 원인을 알 수 없다. 다만, 소수의 경우 선천적인 염색체 이상, 후천적으로 학대경험을 원인으로 논의한다.	원인을 알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수많은 원인을 제시하여 이해에 혼란을 줄 수 있음
129쪽	(2) 자폐성장애의 이해 가. 자폐성장애의 정의와 특성 자폐성장애는 언어와 인지, 행동면에서 연령에 맞는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통상범주에서 벗어난 왜곡된 발달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대체로 출생 이후부터 사람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관계형성이 어렵고 부적절한 행동을 보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다. 타인과 눈맞춤을 기피하거나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타인과 전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경우 자폐성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다.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제한되거나 반복한된 행동 특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연령과 발달연령으로 구분하게 될 경우 유아화 할 수 있음 정신병리학, 발달심리학에서 비장애인 기준으로 발달과정이 다르거나 일탈하였다고 표현은 할 수 있으나 왜곡된 발달이라는 표현 자체가 부정적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을 어렵고 부적절하고 힘들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의심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활동지원제도는 이미 자폐성장애로 등록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불필요한 설명임
129쪽	① 의사소통능력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낸다.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상대의 말소리에서 그 의도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워도 말뜻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① 의사소통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자극을 받아들이거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비장애인과 달라서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반응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청각적 정보보다는 시각적 정보에 민감하다. 장애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지원 정도도 달라진다.	의사소통은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전반적인 문체가 대상화 되어 있어 불편함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언어 습득에서도 지연이 나타나며, 상대의 말을 되풀이하는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30쪽	② 주변 사람들과의 응답적인 감정교류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	② 사람들과의 정서적인 상호작용 및 관계유지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자폐성장애인은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폐성장애인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자주 만나면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동일한 행동의 다른 표현
130쪽	③ 심리적으로 열등감, 불안증세, 과민반응,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주의집중 시간이 짧아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충동적인 돌발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공격적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며, 감정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상황에 부적합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③ 감각적으로 정보에 대한 과잉/과소 반응을 보인다. 오감의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 과잉된 행동 혹은 무관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반응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공격적이라고 혹은 부적합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행동의 다른 표현
130쪽	④ 환경의 동일성에 대한 강박적 요구로 변화를 싫어하며 행동이나 관심의 폭이 극도로 제한적이다. 틀에 박힌 놀이나 행동을 반복하거나 똑같은 길로만 가려고 고집하기도 한다. 특정 사물이나 생물에 집착하는 경우도 많고, 사소한 변화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반복을 통해 안정감을 갖는다. 변화되는 일상에 불안이 높아 규칙적인 일상을 선호한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다.	동일한 행동의 다른 표현
131쪽	④ 눈높이 맞추기 :인내심과 관심 갖기 이용자를 바라볼 때 그 장애의 특징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로 인한 공통적인 특성과 더불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한 파악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지원이 가능하다. 이해란 그 사람의 특징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며	④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별화된 방식으로 지원하기	인내심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으로 발달장애인이 괴롭거나 어려운 존재는 아님 내용설명은 관심을 가지고 개별화된 지원 고민이기에 제목만 수정함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로서 이용자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적용해야 한다.		
133쪽	(1)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시 고려할 점 (표의 내용 중 자폐성장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충분히 기다린다.	저자의 의도는 기다림이라 사료됨

5) 기타

장애유형별 보조기기를 소개한다고 범주화하고 p.155까지는 품목, 지원기준액, 기능, 사진 및 예시가 잘 기술되어 있으나, p.156부터는 별도의 안내나 설명없이 장애유형을 오표기하고, p.159 갑자기 사용 용도별 보조기기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인 품목은 장애유형이나 목적에 따라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부표 35〉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 〈제2장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 Ⅲ. 보조기기의 이해, Ⅴ.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및 제3장 활동지원의 실제 - Ⅰ. 활동지원의 실제: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 실제 사례〉 개선(안)

영역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제2장 활동지원 서비스기초 Ⅲ. 보조기기의 이해	156쪽	표 장애유형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	광학문자판독기까지는 시각장애	오타
	158쪽	청각언어	청각언어(지적·자폐성)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에 장애유형별 범주는 시각/청각·언어/지체·뇌병변으로 범주화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지적·자폐성이 품목에 따라 포함되어 있음 청각 언어영역에 보완대체의사소통 품목이 많음
제2장 활동지원 서비스기초 Ⅴ.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175쪽	1.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욕창은 응급상황이라기보다 평소의 생활지원으로 장애유형별 생활안전에 포함	좌동

영역	페이지 번호	본문 내용	수정 의견	수정 이유/근거
	182쪽	3) 지적·자폐성장애인 (1)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 주의할점	(1)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 주의할점 (삭제)	이동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 유형만 명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제3장 활동지원의 실제 Ⅰ. 활동지원의 실제: 이용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 실제 사례	192쪽	1.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입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의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A씨는 맞벌이 가족의 외동이다.	발달장애인 A씨는 맞벌이 가족의 외동으로 태어났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중복장애 등록이 불가함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라 수정
	194쪽	3. 선생님의 개인 이야기를 저도 다른사람에게 공유할까요? 손톱관리를 비롯해 외향적으로 꾸밀 때 자신감이 생긴다며 짙은 화장도 곧잘 하는 여성이었다.	삭제	개인 일정을 공유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굳이 그 여성의 외모 가꾸는 성향을 기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됨

장애인 복지서비스 종사자 교육
성인지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2022년 11월 30일 인쇄
2022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 **조 규 홍**
발행처 : **보건복지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전화 / 129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52000-003409-01